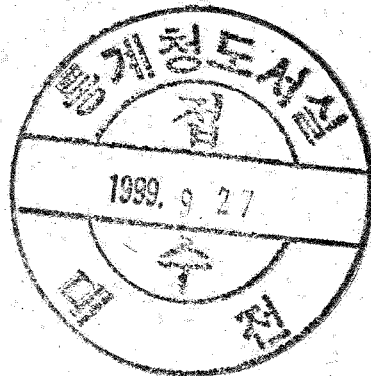


통계 88-03
(강의자료)

商 品 學 總 論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目 次

第 1 部 商品知識의 基礎	7	
第 1 章 商品·商品學·商品分類	9	
1. 商品의 定義	9	
2. 商品學의 定義	12	
3. 商品分類의 定義	21	
4. 商品分類表의 類型	24	
5. 商品의 二元分類·分類基準·分類原則	28	
第 2 章 國際共通(統一)商品分類	38	
1. 共通品目表의 歷史	38	
2. 關稅協力理事會	39	
3. CCCN 과 SITC	40	
第 2 部 SITC와 CCCN의 相關關係	49	
第 1 章 國際標準 貿易分類의 概要	51	
第 2 章 SITC品目表의 發展沿革	53	
1. 國際統計品目表의 必要	1930 年代	53
2. SITC 原典의 作成	1950 年代	53
3. SITC 原典의 改正	1960 年代	54
4. SITC Rev.2 의 制定	1970 年代	56

5. SITC Rev.3의 制定	1980年代	57
第3章 SITC의 構造 및 特徵		59
1. SITC의 定義		59
2. SITC의 構造		59
3. SITC의 特色		63
第4章 SITC·CCCN·HS의 相關關係		66
1. SITC·CCCN·HS의 區分		66
2. CCCN·HS와의 連繫必要		67
3. 用語統一		69
4. SITC와 CCCN의 連繫		70
5. CCCN 해석기준의 採用		80
第5章 關稅의 觀點에서 본 SKTC		82
1. SKTC의 概要		82
2. SKTC의 沿革 및 編成原則		90
第3部 HS制度의 概要		95
第1章 HS의 概觀		97
1. HS의 定義		97
2. 統一品目表의 必要		101
3. HS品目表의 特色		106

第 2 章 HS 品目表의 構想	108
1. HS 의 開發過程	108
2. HS 의 基本 코드	115
3. 品目의 配列	118
第 3 章 HS 制定의 基本原則과 分類基準	119
1. 基本原則	119
2. 分類基準의 例	120
3. 「第 2710 號」와 「第 77 類」	121
第 4 章 CCCN 의 改編과 HS	122
1. 概 觀	122
2. 多目的品目表 定立觀點에서의 改編	127
3. 分類의 簡便化·單純化 觀點에서의 改編	130
4. HS 의 主要變更部分	133
第 5 章 HS 의 協約	137
1. 協約의 構成	137
2. 締約國의 義務	139
3. HS 委員會와 잠정 HS 委員會	139
4. HS 의 發効	139
第 4 部 HS 의 品目分類	141
第 1 章 HS 의 3 大構成要素	143
1. 3 大構成要素	143
2. 通則 (GRI)	143

3. 註 (Note)	144
4. 號 (Heading)	144
第2章 HS상 通則	146
1. 通則의 骨格	146
2. 通則의 適用要領	147
第3章 註 (Note)	167
1. 註의 形態	167
2. 定義 規定의 類型 例	168
3. 競合品目의 附屬明示	171
4. 品目分類原則	174
第5部 品目分類의 演習	183
第1章 HS의 分類要領	185
1. 問題點	185
2. 分類要領	186
第2章 HS상 紛爭解決	191
1. 概 要	191
2. HS委員會	191
3. 行政救濟制度	199
第3章 演 習	200
1. CCCN分類상 紛爭例	200

2 . HS 分類상 紛爭例	204
3 . 機械部品の 分類例	214
4 . 實行關稅率表와 HS 補助資料	219

第 1 部

商品知識의 基礎

第 1 章 商品 · 商品學 · 商品分類

1. 商品의 定義
2. 商品學의 定義
3. 商 類의 定義
4. 商 類表의 類型
5. 二元分類 · 分類基準 · 分類原則

第 2 章 國際共通 (統一) 商品分類

1. 共通品目表의 歷史
2. 關稅協力理事會
3. CCCN 과 SITC

第1章 商品・商品學・商品分類

1. 商品의 定義

— 定義의 多樣：研究者의 立場・研究對象・研究目的

- 經濟學者의 交換理論
- 商學者의 商去來理論
- 法學者의 債權上 契約理論
- 保險研究者의 保險商品論

— 類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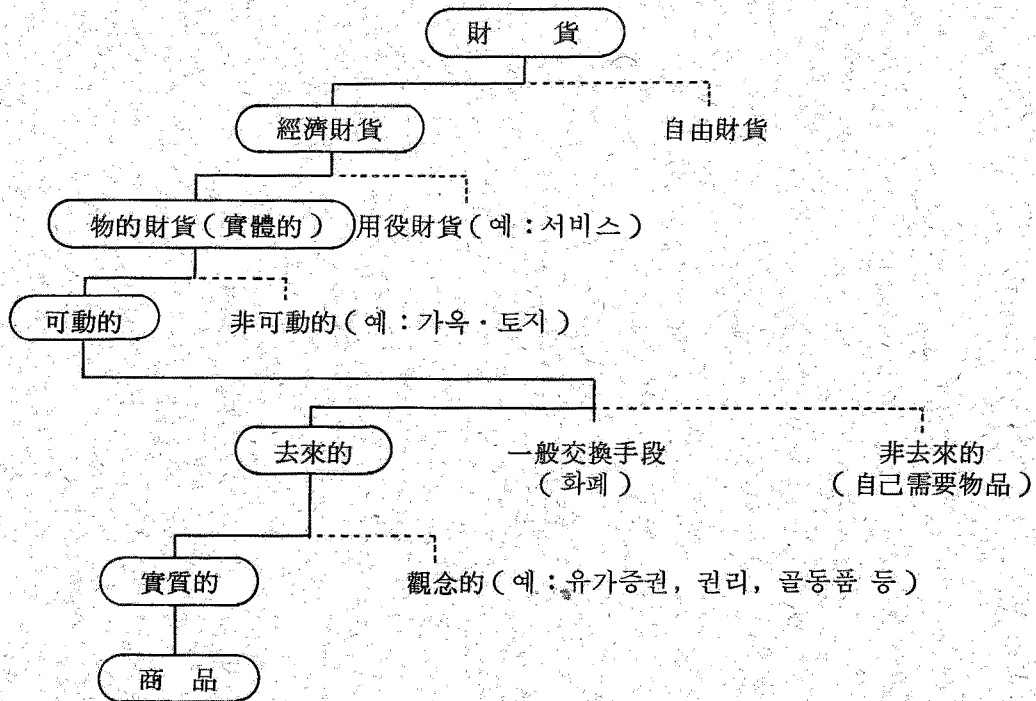
- 商品의 概念에 대하여 「현대 經濟社會에 있어서 市場의 교환을 목표로 하여 生産하고 그 生産된 財貨가 供給기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過程에 있는 財貨 (goods)를 商品이라 한다」 …… 兪봉노 敎수
- 「商品이란 적어도 商人 손에 들어와서 취급되는 모든 貨物을 말한다」또는 「商品이란 轉賣의 목적으로 生産되어 買入되는 모든 動産을 말한다」 …… 상무달 敎수
- 「商品(Waren, Commodity, Merchandise)이란 交換 특히 貨幣 와의 교환용으로 규정된 財貨(Güter, Goods)이다. 재화는 主 로 使用價値로서 관계가 부여된것만이 財貨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商品은 이 財貨가 交換 특히 화폐와의 交換용으로 규정된것만이 재화로부터 變하여 商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財貨와 商品間은 同一 범주는 아니다. 재화의 一部分만이

商品이 되는것이다. 그리고 世界經濟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商品이며 財貨는 아니다」……本間幸作 교수

一 通 說

그러나 現代商品學(사회과학적, 특히 經營學的) 입장에서는「商品이란 自然生産物과 技術生産品을 총괄한 상업의 客體로서, 그것은 實體的·可動的·去來的·實質的 經濟財貨이다」라고 定立된 商品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通用되고 있다. …… 韓희명 교수

商品의 範圍概念



※ 資料 : 韓희명 「商品學總論」

참 고

一 商品의 研究對象

- 一般商品學의 研究對象 商品
- HS·SITC의 研究對象 商品
- HS와 SITC의 研究對象 商品
 - 1/ 實物資源의 영향
 - 2/ 通貨量의 영향

HS體系에서는 金(Gold), 金貨(Gold Coin) 및 硬貨(Current Coin)를 品目表上 포함시키고 있으나 SITC체계에서는 對象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SITC에서는 이들 物品을 제외물품으로 統計上에 整合할 수 있도록 별도 편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SITC」는 화폐용 金이나 流通中에 있는 通貨나 所有權 등 品目들의 輸出入은 實物資源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通貨量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 品目表(SITC)에 의한 統計에서 제외한 것이다(단 流通中인 銀貨를 제외한 모든 銀製品을 포함한다).

한편, 金이나 硬貨 등의 去來와 實物資源의 交易을 단일화하여 統計를 작성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慣例상 편의를 위해서 이들 貨幣類는 例外的으로 다음과 같이 符號(I, II)를 각각 부여하여 HS와의 연계를 표시하고 있다.

SITC 例外코드와 HS 코드의 연계

SITC	品 目	HS
I	貨 幣 用 金	7108.20
II	金貨 및 流通硬貨	7118.90

2. 商品學의 定義

一 定義의 類型

- 商品學의 定義의 대하여는 「商品進化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여기서 일반성과 특수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分析·評價하는 應用學이다」, 「商品으로서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天然物과 工産物을 대상으로하여 一方에서 自然科學的 基礎와 다른 편에서 경제적 견지 특히 消費의 견지에서 研究하는 學問이다 - Kutzelnigg」,
- 「商品學은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消費까지의 關聯運動法則을 自然科學的 또는 社會科學的 측면에서 연구하는 學問이다 - 小西교수」,
- 「商品學은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의 商品進化過程을 自然科學的·社會科學的으로 그 生産·流通·消費構造를 實證적으로 연구한다. 그리하여 未來의 商品像을 정확히 예측하는 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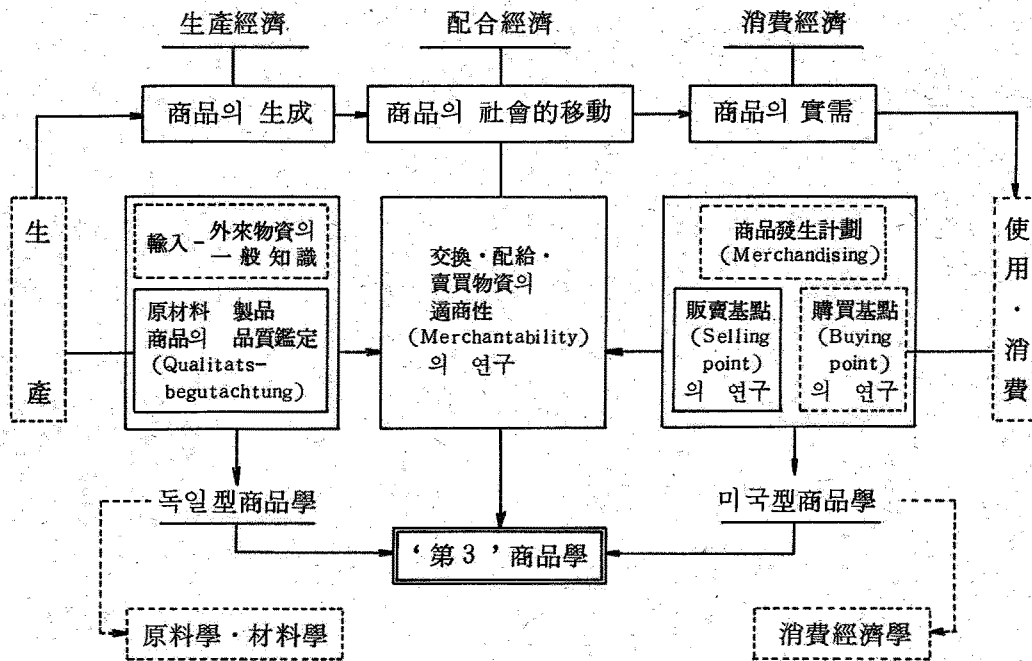
— 通 說

이들 諸說을 바탕으로 「商品學은 商品을 主體로 하여 自然·社會科學的 方法으로 研究하는 學문이다」라고 요약하여 定義를 설정할 수 있다. …… 池上隆雄 교수

— 商品學의 科學性과 研究傾向

- 工的商品學 …………… 獨逸型
- 商的商品學 …………… 美國型
- 第3商品學(兩者 融合) …………… 上坡西三 교수

第3 商品의 構想



※ 資料：上坡西三，「商品學概論」，同文館，東京，1957. p.22.

참 고

一 商品學과 HS

• 商品學

- 1/ 總論 : ① 商品學本質論, ② 商品學史, ③ 商品學 體系論, ④ 商品概念論, ⑤ 商品分類論, ⑥ 品質論, ⑦ 商品屬性論 (포장·디자인), ⑧ 마케팅研究, ⑨ 商品鑑定등
- 2/ 各論 : 個別商品 (例 : 主要商品, 基礎商品)에 대한 組成·構造·機能 및 特性

• HS·SITC

- 1/ 總論 : ① 商品概念論, ② 商品分類論, ③ 상품鑑定
- 2/ 各論 : 個別商品 解説

一 商品學文獻과 HS 解説書

• 商品學

商品學이란 학술적인 면에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學理的인 科學理論書

• HS 解説書

- 1/ HS 解説書는 該當 號에 分類되는 物품의 製造機能, 構造, 成分 및 용도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기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商品學에서의 상품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점이 있다. HS 解説書의 설명은 어떤 특정 상품이 어느 號에 분류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商品學에서와 같이 商品의 지식을 주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 (2) 青銅器時代
- (3) 鐵鋼時代 · 알미늄時代 · 플라스틱時代 · 오토메이션時代
- (4) 産業革命時代 …… 紡績機械와 蒸氣機關 → 金屬의 大量生産과 利用 → 木製機械에서 金屬機械로 → 工作機械의 發展 (機械工業의 成立)
- (5) 20世紀以降 …… 흐르는 作業方式에 따른 機械制大工業化

◎ 機械商品의 分類法

(1) 統計上의 分類

一般機械 · 電氣機器 · 運送 · 運搬機械 · 精密機械 · 其他

(2) 用途別 産業用 · 家庭用 · 製造用 · 事務用

◎ 機械의 一般的性質

(1) 機械의 構成

① 作業部門 { 動力 또는 原動機部門 (動力의 發生 및 受入 部門)
 動力傳達部門 · 作業部門 (直接製作하는 部門)

② 支體部門 (各部를 持하는 部門)

(2) 機械의 構成要素 - 部品과 構造

(3) 機械의 自然科學的性質 (材料 · 構造 · 性能의 諸性質)

(4) 機械商品의 評價

◎ 機械의 製作 (自動車)

(1) 市場調查 (調查部) · 製品計劃 (企劃部)

(2) 研究 · 試作 · 테스트 · 設計 · 仕様書 (設計部)

(3) 製造 …… 素材加工 (鑄造 · 鍛造 · 프레스加工 · 機械加工 · 車體塗裝) 總組立 (製造部)

- (4) 完成試驗(檢査部)
- (5) 入倉・販賣(販賣部)

◎ 機械의 經濟的特質

- (1) 産業水準의 尺度—大資本・大設備・高度技術
- (2) 附加價值額이 크다. (知識集約型製品), 雇用勞動率이 높다.
- (3) 耐久性大→陳腐化의 問題
- (4) 生産財로서의 使用—設備投資—製造用機械・事務機械
- (5) 消費財로서의 使用量增大 …… 生活의 向上

解 說

機械(machine)의 定義—器械・器具・裝置・道具와의 區別

(1) 狹義의 機械, 嚴密한 意味로 機械라함은 다음의 3個의 條件을 具備하고 있을 必要가 있다는 것이 通說이다.

① 第一의 條件은 機械란, 外力을 加해도 比較的變形하기 어려운 物體의 組立으로 構成되어서, 一定의 運動이 되도록 한 것이다. 물과 공기는 크게 變形하나, 壓縮機나 펌프와 같이 作動하면 훌륭한 機械의 一部로 된다. 또한 벨트・체인 등은 押 하면 쉽게 變形하지만, 잡아당기는데는 抵抗力을 가지므로 훌륭하게 機械의 一部를 構成한다. 따라서, 材料가 무엇이든 關係가 없다.

一般的으로 더욱 變形하기 어려운것은 金屬인것이고, 더욱이 鐵은 價格도 싸고 鐵을 材料로 한것이 많다.

② 機械란, 各部分의 物體間에 限定된 相互運動이 連續的으로 行해질것을 條件으로 한다. 限定된 連續的인 運動이란 例를 들면 머신의 針의 上下運動과 같은 運動이다. 蒸氣보일러는 機械의 一部分은 되나 그 自體로는 機械가 될 수 없다.

③ 機械, 外部에서 加한 에너지를 더욱 有用한 形으로 變更해서 어느 一定의 연속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人力·畜力과 같은 生物的 에너지, 風力과 같은 自然力, 水力과 같은 位置 에너지, 水蒸氣·石炭·石油等과 같은 熱에너지, 電力·原子力과 같은 에너지의 어느 것이든 좋다. 그러나 人力과 畜力과 같은 生物的動力以外的 動力이 더욱 代表的인 動力으로 工學에서는 機械라고 말할때 生物的動力以外的 動力으로 움직이는 機械를 지칭할때가 많다.

狹義의 機械는 또한 原動機構·動力 전달機構·作業機構의 3 條件을 具備하고 있다.

(2) 器械·器具·裝置와의 區別 (1)의 條件中 一條件을 만족해도 嚴密하게 機械라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 通說이다. 例를들면 計器類 등은 構造的으로는 機械에 類似하나 ③을 하고있어 單純한 人間勞動의 補助를 하는데 지나지 않음으로 本質的으로는 道具와 아무 다를바가 없다. 寫眞機·測量機 等과 慣習上「機」라는 말을 使用하고 있으나 嚴密하게 機械라고는 말할수 없다. 特히 이것을 器械 惑은 器具라고 부르고 機械와 區別하고 있다. 이것의 ③을 하고 있는것中 裝置와 一般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構造的·機能的으로는 機械와 같이 複雜해서

高度한 機能을 하고 있다. 常識的으로 機能의 一種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機械와 器械(器具)·裝置의 區別은 具體的으로는 확실치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器械·器具·裝置도 機械中에 包含해서 機械라고 부를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것을 合해서 廣義의 機械라고도 할 수 있다.

(3) 道具·用具와의 區別 針·끝·톱과 같이 簡單한 構造를 갖고 人間勞動의 補助手段으로 使用되는 것을 道具 또는 用具라고 부른다.

이와같이 機械의 定義는 廣狹의 여러가지가 있다. 더욱 統計等에서 말하는 機械는 普通 廣義의 機械를 意味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資料：商品(一橋出版)北原三郎 pp.361-364

第 16 部

機械類와 電氣機器 및 이들의 部分品, 錄音器와 音聲 再生機·텔레비전의 映像 및 音響의 記錄機와 이들의 部分品과 附屬品

[部註]

5. 이 部の 註에서 “機械”라 함은 제 84류에 屬거된 各種의 機械·機械類·設備·裝備·裝置 또는 기기를 말한다.

總 說

(I) 第 16 部の 一般的인 內容

(A) 이 部에는 第 16 部 註 또는 제 84류와 제 85류의 註의 規定에 의하여 제

의되는 것과 다른 部에 보다 구체적으로 揭記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機械類와 電氣機器 및 이들의 部分品과 機械式 또는 電氣式이 아닌 特定の 裝置와 施設(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慮過用機器등) 그 部分品이 포함된다. 이 部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a) 스푼·코프·보빈·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材料여하를 불문하며 構成材料에 따라 分類된다).
- (b) 第15部 註2에 規定한 汎用性 部分品으로서 鐵鋼製와의 와이어·체인·볼트·스크류 및 스프링과 같은 것(제 7312호, 제 7315호, 제 7318호 또는 제 7320호)과 其他 卑金屬製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 74류 내지 제 76류 및 제 78류 내지 제 81류), 제 8301호의 자물쇠·제 8302호의 門·窓門 등에 사용하는 裝飾 및 附着具類, 플라스틱製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部에서 제외되며 제 39류에 分類한다.
- (c) 제 8207호의 互換性工具, 기타 이와 유사한 互換性工具는 作用部分의 構成材料에 따라 分類된다.(예: 40류<고무>·제 42류<가죽>·제 43류<모피>·제 45류<코르크>·제 59류<紡織用 纖維>·第 6804호<研磨材料등> 또는 제 6909호<陶磁器>등).
- (d) 제 82류의 기타의 물품(예: 工具·투울·팁·칼·갈날·非電氣式의 理髮器 및 特定の 機械式 家庭用 器具) 및 제 83류의 물품.
- (e) 제 17부의 물품
- (f) 제 18부의 물품
- (g) 武器와 銃砲彈(제 93류).
- (h) 玩具·遊戯用具·運動用具의 特性을 갖는 機械類와 機器 및 이들 물품에 專用 또는 주로 使用하는 것이 明白한 部分品과 附屬品(非電氣式의 모터와 엔진을 包含하지만 電氣式 變壓器 및 無線 원격조정기기는 除外하며, 이들은 第 8501號·第 8504號 또는 第 8526號에 各各 分類한다)(第 95類).

(i) 機械의 部分品으로 使用되는 부러쉬(第 9603호).

(B) 일반적으로 이 部の 물품은 그 材質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大部分의 機器는 卑金屬製이지만 이 部에는 卑金屬이 아닌 材料製의 機器(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貴金屬 등으로 된 部分品도 포함한다.

다만, 이 部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플라스틱제의 傳動用 또는 컨베이어용과 벨트나 벨팅(제 39류), 非硬化 加黃고무제의 물품(예: 傳動用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 4010호)·고무타이어·튜브등(제 4011호 내지 제 4013호)과 워셔 등(제 4016호).

- (b) 가죽제품 또는 컴포지션 레더제품(예: 織機용의 피커)(제 4204 호) 또는 모피제품(제 4303 호).
- (c) 紡織用 纖維製의 物品(예: 傳動用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 5910 호) 펠트패드 및 研磨用디스크(제 5911 호).
- (d) 제 69류의 陶磁製品(제 84류 및 제 85류의 總說 參照).
- (e) 제 70류의 特定の 유리製品(제 84류 및 제 85류의 總說 參照).
- (f) 전부가 貴石 또는 半貴石으로 된 製品(天然·合成 또는 再生의 것)(제 7102호·제 7103호·제 7104호 또는 第 7116호) 다만 畜音機 바늘용의 加工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 8522호에 분류한다.
- (g) 金屬의 線 또는 帶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 15부).

※ 資料 : HS 해설서 p-1130

3. 商品分類의 定義

一 定義의 類型

- 「商品이라는 포괄적 특성을 형성하는 共通的 集群中에서 상품의 使用目的 내지 용도에 대응하여 同一的 屬性을 가지는 個別商品群을 確定하는 과정이다」
- 「一商品群과 他商品群과의 구별을 밝히고 그 ‘그룹’마다 일정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商品을 체계적으로 類型化하는 것」
- 隣接科學인 生物學에서는 분류를 「모든 生物을 제각기 지니는 構造上 또는 自然의 關係상 公同의 因子에 의해 ‘그룹화’하는 ‘시스템」이라 함.
- 稅表分類, 關稅率表分類를 일반적으로 「稅關에서 輸入物品에 대하여 關稅를 부과하는 경우에 當該 物品의 關稅율표상 배열

된 位置를 찾고, 정확히 그 물품이 同表上의 품목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一種의 作業」이라 定義한다. 따라서 HS 상 부분품의 分類란 어떤 商品(예: 1차부분품, 2차부분품, 조립 부분품, 전용, 범용부분품 등)을 관세율표상 10單位 부호 10205 個中 어느하나에 적용시키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 Nomenclature

- 靜態的 名詞
-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 Classification

- 動態的 名詞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商品分類의 必要性

- 地球村의 무수한 商品을 하나도 남김없이 捕捉·研究한다는 것은 能力的으로나 時間的으로도 限界가 있다.
- 결국 이러한 商品種類的 鴻수적인 환경 속에서는 단순한 단편적인 상품연구를 위해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른바 ‘知見과 認識의 體系化’를 도모해야 옳을 것이다.
- 分類必要性

商品分類의 必要性 要約

① 研究上 必要

商品分類는 잡다한 상품그룹을 體系的으로 정리함으로써 商品

의 本體를, 즉 他商品과의 類似性和 相違點을 파악하는데 學問研究上 필요하다. 이는 一商品群과 他商品群과의 區別을 밝히기 위해서는 公同의 商品 特性을 지닌 同系·同種商品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기준되는 商品分類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實務·管理上 必要

生産·販賣 등 유통과정에서의 제품差別·多様化는 商品의 實務上 또는 管理上 商品분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特定的 商品의 分類가 없으면 生産管理나 販賣를 위한 진열을 하는 때 혼란과 불편을 겪는다.

③ 行政·制度上의 必要

한나라 또는 國際間的 輸出入規制, 關稅賦課, 貿易·關稅交涉, 運賃·保管料率 등의 결정에 있어서 商品分類나 品目表는 필수도구가 된다. 실제로 經濟圈域別로 필요에 따라 일정한 分類基準에 따라 商品名을 배열한 品目表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一 商品分類學

- 하나의 學問으로 一般化 되었는가
- 1個의 科學

실제, 商品分類는 商品요소들의 比較研究에 의하여 商品의 下位概念에서 순차적으로 上位概念을 찾아서 [例: HS 6單位의 경우, 5·6單位 小號(商品屬)→4單位 號(商品目)→類(商品

門)→部(商品群)] 각 계층(次元)내에서 상품에 공통한 屬性 및 基準과 상품·상품群간의 여러 관계에 따라 배열하는 작업이다. 또한 商品分類學의 주요 목표가 ① 商品의 계층별 概念[例:號(目),小號(屬),7·8單位(種)]의 기준을 연구하고 ②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또한 과학적으로 기초화된 商品體系를 창조하는 것, ③ 科學的 商品命名을 촉진하며 ④ 무수히 다양한 상품을 概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품간의 諸관계·方法·合法則을 탐구하고 理論化하려는 商品分類는 하나의 과학으로서 ‘商品分類學’이라 일컬을 수 있다.

4. 商品分類表의 類型

一 品目表의 多樣

- 商品研究者의 目的·用途
- 經濟行政活動主體(국제기구·정부·공공단체·기업·개인)의 目的·用途
- 17種 品目表(CCC가 HS制定過程에 조사된 A國→B國으로 去來되는 貿易상품에 적용되는 品目表)

一 主要品目表

主要品目表의 類型

가. 關稅用 品目表

☆① CCCN(관세협력이사회품목표: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② NABALALC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관세율표 ; Tariff Nomenclature for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 ☆③ TSUSA (美 관세율표 ; Tariff Schedules of the United States)
- ☆④ CTC (캐나다관세율표 ; Customs Taiff of Canada)
- ☆⑤ CTJ (일본實行관세율표 ; Customs Tariff of Japan)
- ☆⑥ TSK (한국관세율표 ; Tariff Schedules of Korea)

나. 統計用 品目表

- ☆① SITC (국제표준무역분류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② NIMEX (歐洲공동체 무역통계표 ; Nomenclature of Goods for the External Trade Statistics of the community and Statistics of Trade between member states)
- ☆③ ICC (캐나다수입통계표 ; Im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Canada))
- ☆④ ECC (캐나다수출통계표 ;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Canada))
- ⑤ CCIO (産業源泉에 의한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by Industrial Origin)
- ⑥ NIPRO (공산품품목표 ; Common Nomenclature of Industrial Products)
- ⑦ CPC (주요상품분류 ;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 ⑧ SKTC (한국표준무역분류 ;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
- ⑨ CCCNK (한국관세행정통계분류표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of Korea)
- ⑩ HSK (한국통일상품분류 ; Harmonized Systems of Korea)
- ⑪ Schedule B (Export) (United States) (미국수출통계표)

다. 運送料率用 品目表

- ☆① WACCC (세계항공화물분류표 ; World wide Air Cargo Commodity Classification)
- ☆② WIFT (서인도, 대서양횡단항로협회운임율표 ; Freight Tariff of the Association of West India, Trans-Atlantic Steamship Lines)
- ☆③ STCC (표준수송상품부호 ; Standard Transportation Commodity Code)
- ④ CSTE (歐洲수송통계용품목부호표 ; Commodity code for European Transport Statistics)
- ⑤ NST (수송통계용표준품목표 ; Standard Commodity Nomenclature for Transport Statistic)
- ⑥ FEFCFT (극동해운동맹운임요율표 ;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Freight Tariff)
- ⑦ UICNUM (국제철도연합 표준상품분류표 ; Standard Commodity Nomenclature of International Union of Rail ways)

라. 保險料率用 品目表

- ① MIKA Tariff (日本 보험요율용 품목표)
- ② MITA (한국 보험요율용 품목표)

마. 其 他

- ☆① SFTC (경제상호원조이사회의 무역표준분류표; Standard Foreign Trade classification of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② ISIC (國際標準産業分類;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③ ICGS (국제표준상품 用役分類;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all Goods and Services)
- ④ NACE (歐洲공동체 경제활동용 일반산업분류; General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
- ⑤ SINAP (경제활동상품통합분류체계; System of Intergrated Nomenclature for Activities and Products)
- ⑥ BEC (廣경제범주분류;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 ☆부호가 있는 15個 品目表는 HS 제정에 참고자료로 活用되었음.

5. 商品의 二元分類 · 分類基準 · 分類原則

一 本質的分類와 應用分類

- 品目的 分類는 그 목적 · 입장 ·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本質的 分類」와 「應用的 分類」의 2種으로 大別된다.

- 本質的 分類란

「前者는 一定한 分類기준에 따라 分類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체계적 · 합리적으로 행하는 商品의 分類形態를 말한다」 이는 個別商品의 특성분석 · 구조 · 사용가치 규명과 기타 商品研究의 체계화와 이론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본질적 분류는 ① 總論的分類, ② 理論的分類, ③ 基本的分類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응용분류는 ① 各論的分類, ② 人爲的分類, ③ 便宜的分類, ④ 實踐的分類, ⑤ 社會學的分類, ⑥ 水平分類 (慣用的分類), ⑦ 約定的分類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 應用的 分類란

「經濟 · 經營政策 및 기타 특정 목적과 관련하여 實用的 見知 (生産 · 流通 · 消費 등 실태 파악)에서 한정된 범위의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상품의 분류형태를 일컫는다. 統計, 課稅 · 立法 · 行政 · 마케팅 · 運輸 · 倉庫保管 · 荷役 · 金融 · 保險 등 산업 분야별 필요로부터 商品을 배열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종 品目表나 料率表 등이 이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貿易商品의 分類의 경우도, 응용분류를 채택하고 있는데 예컨

데 CCCN의 分類體系를 보면 機械類·電氣機器(제 16 부), 車輛(제 17 부), 武器類(제 19 부)는 15 部の 卑金屬(鐵鋼) 보다 下位概念의 상품임에도 同一次元(階層)의 「部」로 편성하고 있다.

一 商品의 分類基準

- 分類基準의 水平·垂直的 組合

1/ 商品의 分類基準이란

상품의 구분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행하여 商品 또는 商品에 대한 共通性과 그 認識을 正當하여 商品의 配列體系를 正립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基準의 形態에 따라 商品의 分類가 달라진다.

2/ 體系의 品目表 作成의 不可能

1 개의 分類基準으로 다양한 商品을 品目表上에 統合·整理하여 體系化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商品의 配列

<例 - 1> 1次元(面)…… 一列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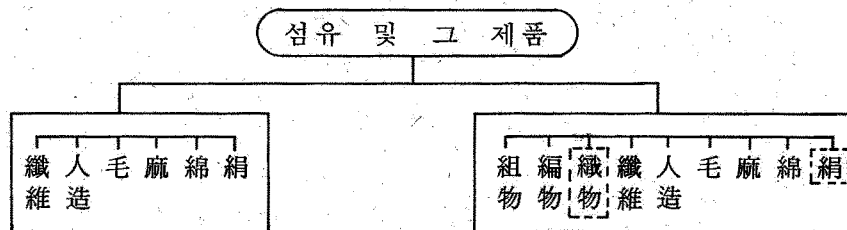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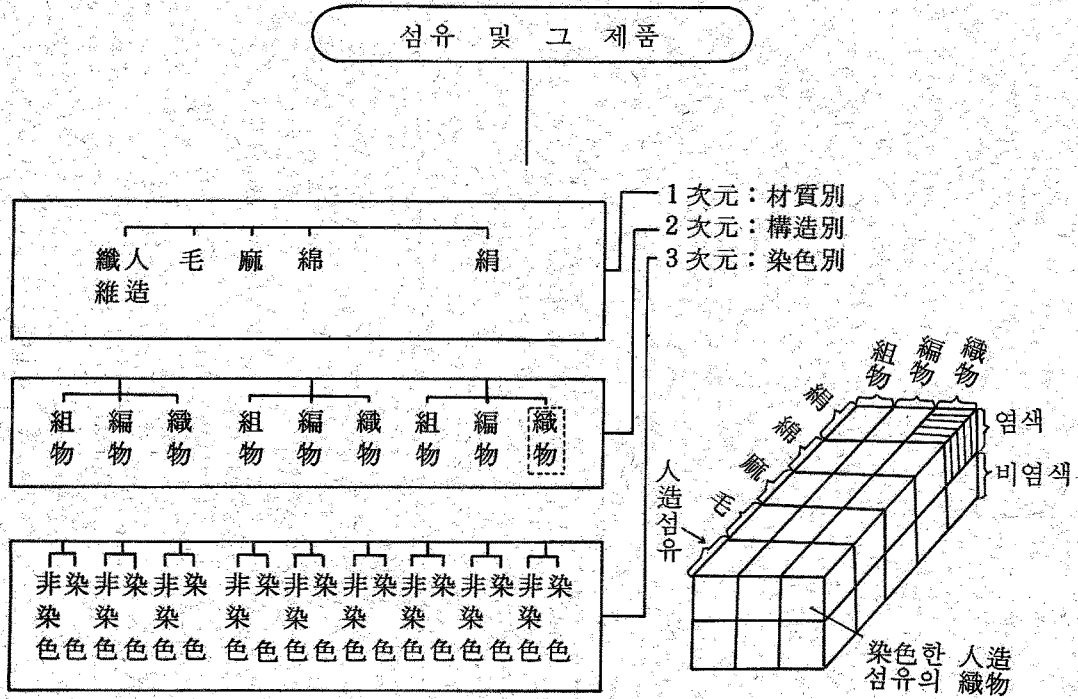


圖 (A)

圖 (B)

〈例 - 2〉 2次元(面)…… 複列展開



圖(C)

圖(D)

3/ 分類基準의 要素

分類基準의 要素

學 問 的 立 場	商 業 的 立 場	貿 易 立 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屬性 (1) 품명, 브랜드名 (2) 구성 (성분, 함유물 조성 등) (3) 감각 (색깔, 향, 맛 촉감 등) (4) 형상 (형태, 크기, 두께, 길이 등) (5) 物性 (밀도, 비중, 점도, 酸價 등) (6) 구조 ● 간접적 屬性 (1) 主로 생산에 관련된 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 (천연, 인공여부) ○생산방법 ○생산지 ○생산산업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業必要性 (1) 용도 (사용목적) ... 소비용품, 산업용품 (2) 생산원천 (Origin of Production) ... 제 1 차산업 생산품, 제 2 차산업 생산품 (3) 화학적 성분 (실질 구성분) ... 무기질 상품, 유기질 상품 (4) 실제 구성원질의 속성 (발생근원) ... 동물성 상품, 식물성 상품, 광물성 상품 (5) 단위별 존재 형태 ... 고체, 입상, 분상, 粘體, 액체, 기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CCCN (원칙 : 산업별 분류) (1) 商品의 素因 (屬·成分·순도·합량·형태) } : 商品의 素因 (1+2) (2) 商品의 原料 [생산(산업)원천] } (3) 가공단계 (例 : 11부) (4) 商品의 機能 (例 : 9405) (5) 商品의 用途 (例 : HS 64,65,84,95 류 등) (6) 용도·기능·혼합 (例 : 84 류, 85 류 등)

學 問 的 立 場	商 業 的 立 場	貿 易 立 場
<p>○가공처리정도</p> <p>○생산시기, 생산소요 기간</p> <p>○생산차</p> <p>○생산에 要하는 원 료, 재료</p> <p>(2) 주로 유통에 관련 된 물품</p> <p>○거래시기</p> <p>○저장기간</p> <p>○포장상태</p> <p>○운송방법</p> <p>○거래수량</p> <p>○단 가</p> <p>○판매의 레벨 (도매 소매 등)</p> <p>○판매자</p> <p>(3) 주로 소비에 관련 된 물품</p> <p>○사용하는 기간</p> <p>○기능·성능·효과· 능률</p>	<p>膠狀商品</p> <p>(6) 加工度…원료품(미 가공품, 미제품, 조 제품), 제조품(반 제품, 완제품)</p> <p>(7) 생산지명…예:미 Cotton, 인도綿, 이집트綿</p> <p>(8) 사용기간</p> <p>(9) 재생산가능성</p> <p>(10) 필요성(긴요성)</p> <p>(11) 거래지역…국내상품 국제상품</p> <p>(12) 생산지…국산품, 외 래품</p> <p>(13) 유통기업의 업종등</p>	<p>(7) 용도·재질·혼합 (例: HS 9401 등)</p> <p>(8) 화학구조(例: HS 29류, 39류)</p> <p>(9) 제조방법(例: 펄프 류)</p> <p>● SITC(원칙: 물품별 분류)</p> <p>(1) 상품의 성질(The nature of the merchandise)</p> <p>(2) 상품의 용도(例: 식료품과 비식료품)</p> <p>(3) 상품의 재료(例: 展皮類, 채유用씨, 생 고무)</p> <p>(4) 상품의 가공단계</p> <p>(5) 시장관례(Market Practice)</p> <p>(6) 세계무역상 상품의 중요성(The impo-</p>

學 問 的 立 場	商 業 的 立 場	貿 易 立 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구성·내용년수 ○내용자·소비자 		<p>rtance of commodity in terms of world trade)</p>

一 次元別 配列標識

• HS 의 配列

상품의 분류체계 가운데 上位次元(段階)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은 통상 材質·用途와 産業形態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 例컨데, HS(CCCN 도 마찬가지로)의 경우 상위개념의 商品群 21 개 부(Section) 가운데 앞쪽(1~6部)은 農畜産物, 중간쪽(7~15部)은 工産品, 끝쪽(16~21部)은 高度産業生産品 순으로 편성하고 있다.

• 配列次元<段階>標識

한편, 商品分類體系에 사용되고 있는 配列次元(단계) 標識에는 여러 가지 用語가 있으나 上位概念의 상품에서 순차별로 8段階의 分類方式, 즉 「群: Warengruppen」→「門: Warenklassen」→「目: Warenordnungen」→「屬: Warengattungen」→「族: Warenarten」→「亞族: Warenunterarten」→「種: Warenaorten」→「等級: Qualitätsklasse」이라는 用語로 구분 사용되도록 1962年9월의「第1回 國際理論會議」에서 권고(추천)되었다.

〈分類例〉

商 品 群	食 料 品	家 庭 用 品
商 品 門	飲食物	家庭用化學・化學製品
商 品 目	乳・乳製品	비누洗劑
商 品 屬	乳	비누
商 品 族	牛乳	身體洗滌用 비누
商 品 亞 族	飲用乳	精製비누
商 品 種	2.5%脂肪 含有飲用乳	藥用添加物・精製비누
等 級	—	藥用添加物・精製비누・特等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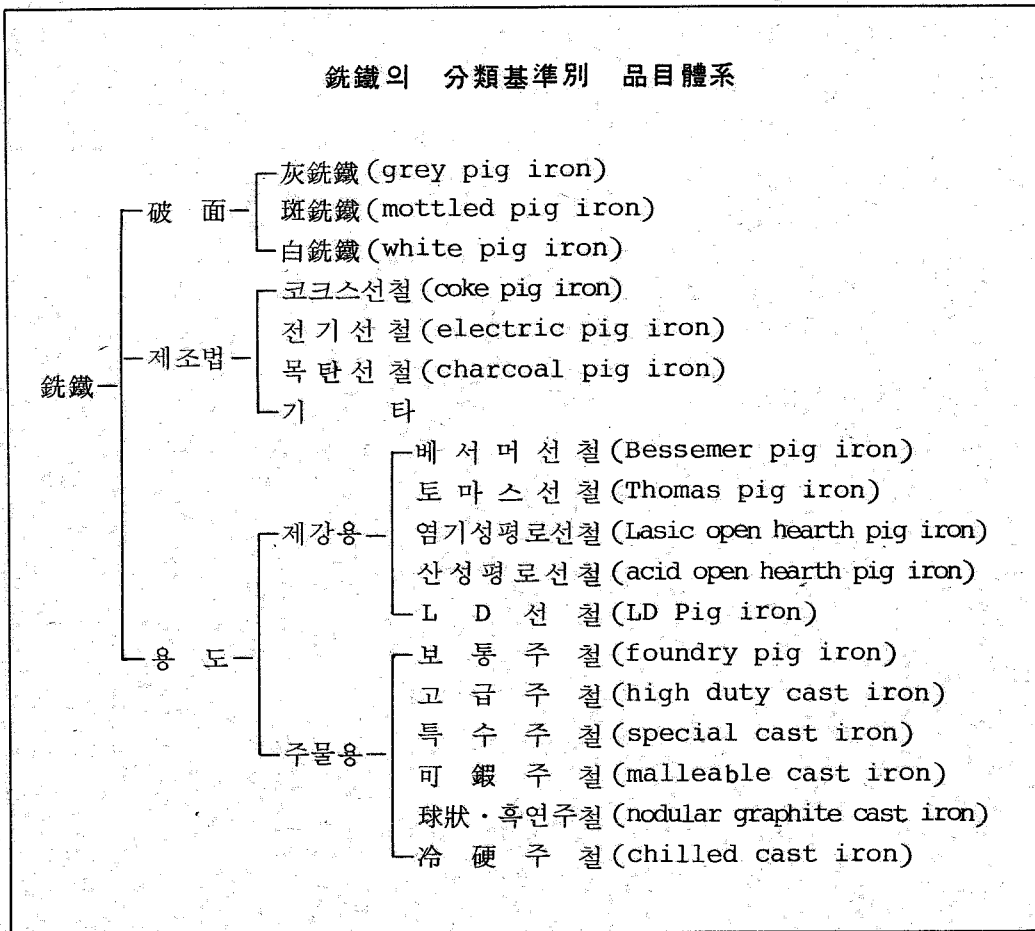
一 分類基準別 品目配例

• 配列과 商品의 命名

同種・類似商品群이라도 품목분류체계상 配列位置와 商品의 命名은 그 分類基準(例: 素材, 製造法, 加工, 機能, 用途 등)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그 分類基準의 設定이 科學的・合理的 바탕에서 이루어진 경우라야 품목표상 同種・類似商品群의 概觀이 가능하고 商品의 命名도 간결하고 論理的일 수 있다.

• 銑鐵의 分類基準別 品目體系

銑鐵의 分類基準別 品目體系



一 商品의 分類原則

• 分類原則이란

예컨대 狹義商品名 (또는 Name) 과 廣義商品名 (또는 Class) 이
 共存하는 경우, 狹義品名이 우선한다 (= 협의품명 우선분류원칙),
 또는 用途商品名과 機能商品名이 併存하는 경우 機能商品名이
 우선한다 (= 用途, 機能品名間 機能品名의 우선분류원칙) 는 등 어
 떤 1 個商品이 2 個 이상의 號 (또는 稅番) 에 競合하여 공존
 하는 때 어느 號가 우선한다는 분류에 관한 原則을 지칭한다.

- 一意性(一物一處)分類原則

2個 이상의 材料 또는 單位機械로 混合·構成된 組成品을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 예컨대 50% 天然絲(綿絲)와 50% 人造絲(나일론絲)로 된 혼방직물, 本體와 部分品·附屬品·豫備品, 2個 이상의 기능을 가진 機械로 구성된 複合機器가 同時 수입 신고된 경우 部分品·부속품·예비품과 複合機器는 품목표(관세율표)상 어느 위치(號 또는 稅番)에 해당시켜야 하느냐 등 어려움이 있다. 이에 稅表(商品分類·品目表)는 「하나의 상품을 단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一意性分類原則(또는 一物一處 分類原則)에 접근하기 위하여 通則(GIR:General Interpretation Rule)과 註(Note)등 分類方針이나 原則을 설정하고 있다.

- HS 상 品目分類原則의 규정例

HS 상 품目分類原則의 規定 例

	通 則 (GRI)	註 (Note)
제 1 義的 最優先適 用原則	GRI . 1 號 · 註의 최우선 適用原則	① 一體에의 분류 원칙
제 2 義的 從屬適用 原則	GRI . 2 (가) 不完全 · 分解物品 등의 분류원칙 (나) 混合 · 結合 · 組成品의 분류원칙 GRI . 3 (가) 狹義品名 우선분류원칙 (나) 主要特性 우선분류원칙 (다) 最終號 우선분류원칙 GRI . 4 類似品에의 분류원칙	② 個別分類원칙 ③ 主用途 · 主機能 에 의한 분류 원칙 ④ 歸屬度關數에 의한 분류원칙 ⑤ 定型規格에 의 한 분류원칙 ⑥ 通則的 규정에 의한 분류원칙 ⑦ 包裝品 · 세트에 관한 분류원칙
補助的 適用原則	GRI . 5 (가) 케이스 등 容器類 분류원칙 (나) 包裝用材料和 포장容器類 분류원칙 GRI . 6 小號의 분류원칙	⑧ 最終號 · 類似品 의 분류원칙 ⑨ 先類 · 後號의 분류원칙 ⑩ 部分品 · 附屬品 의 분류원칙등
備 考		

第 2 章 國際共通 (統一) 商品分類

1. 共通品目表의 歷史

年 代 表

SITC	年 度	BTN (CCCN → HS)	
○ 국제統一統計品目表 필요인식	1853	○ 統一關稅品目表 필요인식	
	1913	○ 국제공통분류표 (Brussel classification) 작성. (5部 186品目)	
	1923	○ 세관절차간소화 협약	
	1927	○ 통일관세品目表 骨格提示권고 (L.G)	
	1931	○ 잠정 제네바 品目表 (21部, 86部, 991號)	
	1937	○ 1차 개정 제네바 品目別제정	
	○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商品最少目錄 제정	1938	OECD(61.10)
		1947	OEEC(48.4)
		1948	CEEC(47.7)
	○ SITC Original 제정	1950	○ 브뤼셀品目表(案) (B.N- Nomenclature) 작성 연구단(47.9) Nom
1955		○ BTN 協約 성립	
1959		○ 기본 3협약	
1959		○ BTN 개정 의정서 채택	
1959		○ BTN 發効	
○ SITC Rev.1 제정	1960	CCC (50.12)	
	1965	○ 1차 BTN 개정	
	1972	○ 2차 BTN 개정	
○ SITC Rev.2 제정	1975	○ BTN → CCCN 改稱	
	1976	○ 3차 BTN 개정	
	1978	○ HS 協約 성립	
	1983	○ HS 發効	
○ SITC Rev.3 제정	1985		
○ SITC Rev.3 시행	1988		

※ 現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 Organiz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모체인 CEEC는 美國務長官의 이름을 딴 마샬계획 (戰後 유럽부흥계획 ; Marshall Plane, ERP:European Recovery Program) 을 기초로 1947년 12월 파리에서 벨기에·스웨덴 등 16個國이 유럽경제부흥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부흥개혁안의 작성을 위하여 창설한 國際機構로 그 후인 1948년 4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 Organizaf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로 개칭되고, 이어 오늘날의 OECD로 承繼되었다.

2. 關稅協力理事會

- CCC 관

「관세협력 이사회」의 略語로 英文名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의 頭文字로 따라서 結性한것이다. 本部는 벨기에 브뤼셀에 位置해 있다」

- CCC의 設立目的

CCC 관 1950년 12월 15일 署名된 「CCC 設立을위한 協約」에 따라 創設된 國際機構이다. 同協約에는 「CCC를 설립하는 目的은 物品分類와 評價에 관한 協約을 적용·해석하는데 필요한 執行機構를 창설함으로써 關稅制度에 있어서 고도의 협조와 定型化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關稅法規의 개선내지 발전에 필요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이 機構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3. CCCN(前 BTN)과 SITC

— CCCN

- 定義 : BTN 協約의 附屬書
- 用語 : CCC Nomenclature, Brussel Tariff Nomenclature
- 채택國

< 1987 현재 >

- 1 / 世界 153개國 (가맹國 52개國, 非가맹國 101개國)
- 2 / 我國 (1962. 관세율표반영, 1971. 기별공고반영, 1968 協約加入)

< 1988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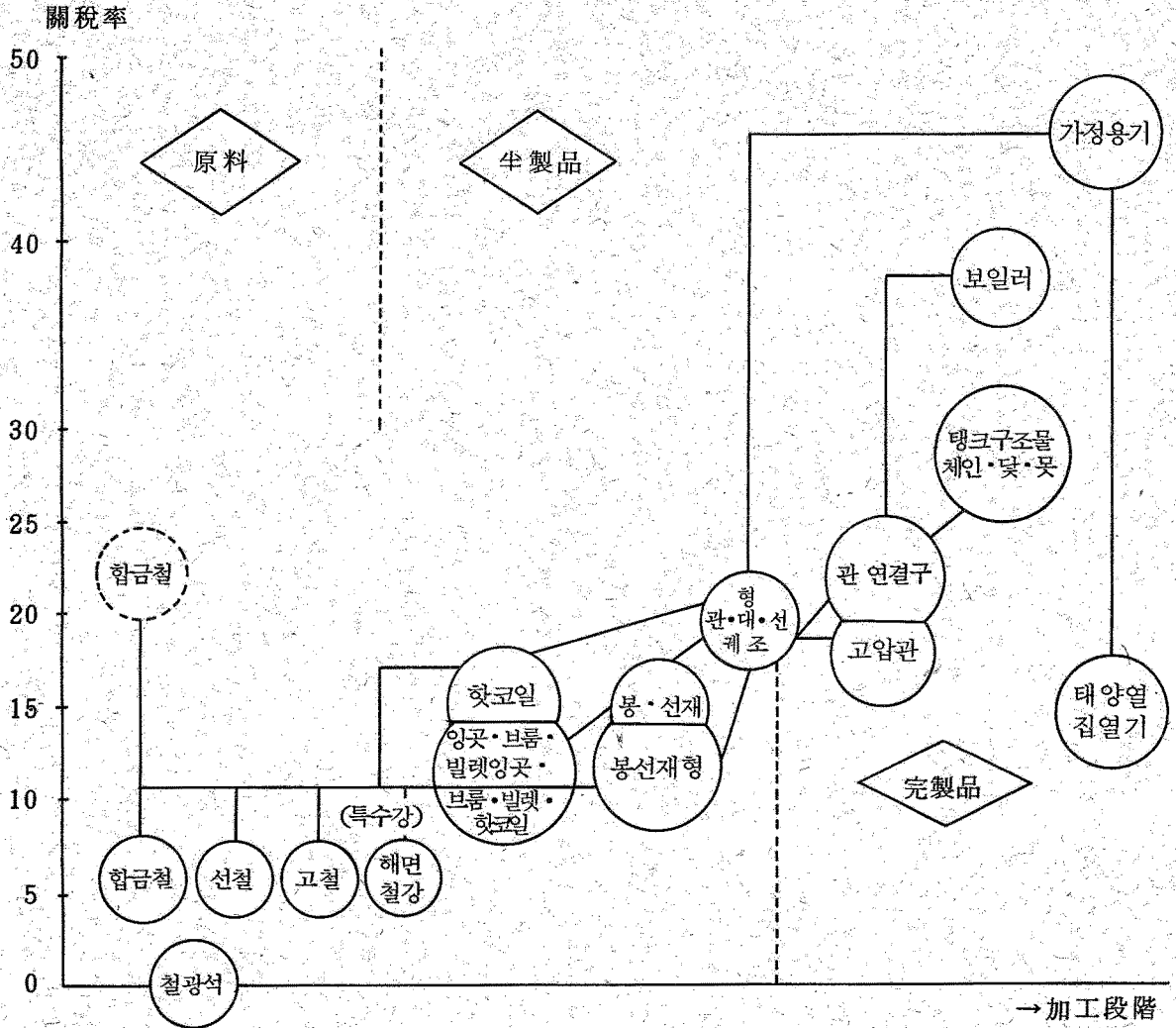
- 1 / CCCN 가맹國 49개國
- 2 / HS 가맹國 43개國 (※ CCC Doc. 34.832 E, 1988.7.25)

○ 分類構造

먼저 一般原則에 있어서 關稅專門家들은 關稅政策運營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을 主眼으로 關稅品目表를 만든 것이므로 同品目表는 同種의 産業部分에 관련되는 모든 物품을 함께 分類 (同一한 原料에서 얻어지는 物品은 同一“類”에 分類하고 原料부터 完製品의 順序로 配列해 나가고 있음) 함으로써 ① 輸出入業者로 하여금 이 品目分類 System內에서 物品의 位置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② 物品의 製造工程에 따르는 相對的인 産業保護程度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見解를 제시하고 있다.

鐵鋼의 加工段階別 差等稅率

○ 1987 關稅率表 (TSK) 構造



※주 : 이 類는 我國 TSK의 전형적인 가공단계별 산업보호 (차등세율) 체계임.

철광석 (0%) → 선철 (5%) → 잉곳·브룸·빌렛·핫코일 (10~15%) → 관·대·선

형 (20%) → 관연결구류 (25%) → 일반제품 (30%) → 가정용제품 (50%)

－ SITC

○ 定 義

CCCN이 關稅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통일품목 분류표 라면 SITC는 통계目的을 위하여 제정된 특정용도의 통계용 통일 품목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ITC는 對外貿易의 대상이 되는 商品의 통계분류표로서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商品統計基準을 제시한다.

○ 分類構造

이에 반하여 統計專門家들은 統計品目表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을 비교하는데 장점을 얻기 위하여 ① 食料品・原料加工品・機械類와 같이 物品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② 食材料, 中間製品, 完製品과 같이 加工段階別 및 産業構造別(食品・纖維・化學・鐵鋼・機械産業 등)로 분류하고 있다.

一 CCCN 과 SITC 의 比較

• 分類體系比較

CCCN과 SITC 分類體系 比較

表別 區分	CCCN			SITC Rev. 2				
全體構造	21 Section (大分類) Section 1 動物 및 動物性 生産品 Section 2 植物 및 植物性 生産品 Section 3 動·植物 性의 油脂 Section 4 調製 食料 品, 飲料 Section 21 美術品 蒐集品 및 骨董品	99 Chapter (中分類) Chapter 1 (類) Chapter 6 ... Chapter 14 ... Chapter 15 ... Chapter 16 ... Chapter 24 ... Chapter 99 ...	1101 Heading (小分類) Heading 號 01.01 산 말(馬) 01.02 산 소(牛) 01.03 산 돼지 01.04 산 양 및山羊 01.05 산 加禽類 01.06 기타 산動物 Heading 9906..	10 Section (大分類) 0 食料品部 및 산動物 01 鳥獸肉 類 및 그 調製品 기타 食 09 料調製品 特殊 9 取扱品	63 Division (中分類) 00 산動物類 01 鳥獸肉 類 및 그 調製品 기타 食 09 料調製品 89 雜品	233 Group (小分類) 001 ... 群 011 鳥獸肉 類 기타 鳥 013 獸肉類 기타	786 Sub-Group (細分類) 001.1 牛 001.2 羊 및 山羊 001.3 豚 001.4 家 001.5 馬 001.6 기타 動物 011.1 牛肉 011.2 羊 및 山羊의 肉 011.3 豚肉 011.4 食禽 및 그 肉 011.5 馬肉 011.6 屠肉 및 內藏 011.8 기타 011.81 家禽의 內藏 011.82 기타 971 金 등 971.03 라기 등	
	部分構造 (例)	CCCN NO 絹 { -원료 (누에고치) : 5001 -사 (생사) : 5002 -직물 (견직물) : 5009 } 毛 { -원료 : 5301 -사 : 5306 -직물 : 5311 } 綿 { -원료 : 5501 등 -사 : 5505 -직물 : 5507 등 } CCCN (재료별 → 가공단계별)			SITC NO 纖維原料 { -견 : 261 -모 : 262 -면 : 263 } 纖維絲 { -견 : 651.1 -모 : 652.2 -면 : 652.3 } 纖維織物 { -견 : 653.1 -모 : 653.2 -면 : 653.3 } SITC (가공단계별 → 재료별)			

* 資料 : 한희영, 「商品學總論」, p.84, 89, 232, 235 參照

SITC의 類構成表 (2)

Y \ X	0	1	2	3	4	5	6	7	8	9
0	산 動物	고기 및 고기 제품	낙 농 품 및 알	어 개 류	곡 식 및 품	채 소 및 실	설 별 · 꿀	커피 · 향신 료 등 제품	동 물 사 료	기 타 식 용 품 및 조 제 품
10	/	음 료	연 초 및 제품	/	/	/	/	/	/	/
20	/	원 피 및 피	채 유 용 매	생 고 무	코 르 크 재	펠 프 및 지	섬 유 및 웨 이스 트	미 가 공 의 광 물 비 료	금 속 성 광 석 성 및 기	기 타 동 식 물 성 물 질
30	/	/	석 탄 · 코 크 및 연 탄	석 유 및 제품 및 질	천 연 및 제 조 가 스	전 력	/	/	/	/
40	/	동 물 성 지	불 휘 발 성 및 기 름 성 등	기 타	/	/	/	/	/	/
50	/	유 화 학 기 물	무 화 학 기 물	염 연 제 료 및 색 제	의 약 제 품 및 제품	정 향 유 및 등	비 료	플 라 스 틱	원 료 형 태 의 가 스 트 아 보 틱	기 타
60	/	가 죽 및 피	고 무 제 품	크 르 크 및 제품	중 판 이 치 및 등	직 물 및 직 물 제 품 등	비 금 속 물	철 및 강	비 철 금 속	금 속 제 품
70	/	원 동 기 및 설 비	특 산 기 업 수 용 계	금 공 기 작 속 용 계	일 기 장 계 반 및 비	사 기 무 계 용 등	통 녹 제 신 음 기 및 과 기	기 타	도 로 차 주 행 량	기 수 송 장 비 타
80	/	조 립 식 물	가 부 구 분 및 품	여 행 용 품 및 등	의 제 품 부 등	신 발	/	통 계 기 구 및 장 치	휴 대 시 계 및 큰 시 계	잡 제 품
90	/	우 소 포 편 물	/	특 취 급 수 물	/	/	/	주 화	금	/

※ 독해 : 생고무 (Y (20) + X(3) = 23) → 23 류

HS 類의 構成表

X Y	0	1	2	3	4	5	6	7	8	9
0	///	산 동물	육	어(무취추수류생)	나 농 품	돈 녹 모 용	수 목	야 체	과 실	차
10	곡 류	전 밀 가 분 루	중공식자업인삼용물	식 액 물 성 즙	식 편 조 물 물	동 유 식 물 지	육 조 어 제 품 의 품	당 류	코 코 아	곡 분
20	채통과 조즙 소림등	조제식품	음 료 수	(사 조제) 료	연 (대용물) 초	토 시 멘 석 트	금 (빛광재) (금속광) 속 광	석 유	무 화 합 물 기	유 화 합 기 물
30	의 약 품	비 료	유 색 연 제 소	향 화 장 료 품	비 누	단 물 백 질 계 질	화 (화공품) 약	사 진 용 품	화 생 산 품 공 업	플 라 스틱
40	고 무	피 혁	피 혁 제 품	모 피	목 재	코 르 크	갈 짚 포 벽 지	필 고 지	지	(서 적) 책
50	견 직 물	양 모 직 물	면	기 타 직 물	인 섬 조 장 유	인 단 섬 조 유	부 필 직 포 프	카 페 트	특 수 직 물	도 용 제 품 포 방 직
60	메 리 아 스 물	의 류	기 타 방 직	섬 유 제 품	보 마 고 의	신 발 류	모 자	우 모 인 발	석 스틱 등 플라	도 내 자 화 제 품
70	유 리	진 귀 금 등 속	철 강 소 재	철 강 제 품	동	니 켈	알 미 늄	///	납	아 연
80	(주 석) 석	기 비 금 의 속	공 구	비 제 금 속 품	기 원 자 계 료	전 가 기 기	철 기 관 도 차	자 부 부 동 분 차 속 품	항 우 주 공 선	선 박
90	광 등 학 기 부 속 품	시 계	악 부 부 분 기 속 품	가 침 조 구 명 구 류 품	원 부 부 구 분 등 속 품	잠	골 등 품	///	///	///

※ 독해 : 고무 (Y(40) + X(0) = 40) → 40 류 품

• 特色比較

CCCN 과 SITC 特徵別 比較

	CCCN	SITC
目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稅目的 品目表 — 生産段階別의 稅率差等 — 機能・用途類似品의 均衡稅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計目的 品目表 — 貿易統計資料 수집 — 經濟分析比較 容易
分類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一類에 同一原料로부터의 製品을 一括分類 • 多數의 分類基準組合 — 組合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分類: 材質別 - 小分類: 生産段階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品種類別 — 食料品, 加工品, 原料品 等 • 左 同 — 組合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分類: 用途, 生産段階別 - 小分類: 材質別
特揭對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의 다소에 불구하고 다음 조건의 것이 特揭됨 — 産業保護・關稅徵收必要品 — 높은 附加價置品 — 貴重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이 많은 것 中心特揭 — 稅率의 高低 不拘 — 主要交易品
細分類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이 많아도 다음 物품은 細分하지 아니함. — 低稅率品 — 無稅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이 적은 것은 高關稅의 物품도 細分類하지 아니함.
品目表 解設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體解設書 있음. — 分類意見 差異 解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體解設書 없음 — CCCN 解設書 援用

◆ 해석 기준 ◆

< 1 >

[FOREWORD]

The Correlation Table enables data based on the SITC, Revised, to be transposed into the framework of the BTN.

Accordingly, these SITC, Revised, titles cannot be regarded as finally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corresponding BTN heading. This scope is governed solely by the provisions of the Brussels Nomenclature itself (Interpretative Rules, Section conjunction, where appropriate, with the Brussels Explanatory Notes.

(CCC Brussels Nomenclature 1970) p.-184

< 2 >

[INTRODUCTION]

20 The titles of the headings of the SITC Rev.3 have been aligned with the Text of the HS or CCCN heading wherever feasible but the full text of HS is not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The content of each heading in turn is determined by the documentation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¹⁹⁾

< SISC Rev. 3 P. XI >

주; 19) Alphabetical Commodity Indexes for the SITC Rev.3 and HS Will be prepared jointly by the Statistical offic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cretariat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第2部

SITC와 CCCN의 相關關係

第1章 國際標準 貿易分類의 概要

第2章 SITC品目表의 發展沿革

第3章 SITC의 構造 및 特徵

第4章 SITC·CCCN·HS의 相關關係

第5章 關稅의 觀點에서 본 SKTC

第 1 章 國際標準貿易分類의 概要

현재 UN 통계국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國際貿易統計年鑑」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商品別貿易統計」 Commodity Trade Statistics, 「統計年鑑」 Statistical Yearbook, 「統計月報」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 의 집계시에 사용하고 있는 品目表와 我國이 경제·流通분석, 商品別貿易資料의 國內外的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品目表는 「SITC」로서, 정확히 말한다면 「SITC Rev.3」이다.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는 1950 年 「SITC 원전」의 채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즉,

1950 年의 「SITC original」

1960 年의 「SITC Revised」

1975 年의 「SITC Rev. 2」

1985 年의 「SITC Rev. 3」 등이 그 예이다. 「SITC」는 “국제표준무역분류”라 번역되고 있다.

「SITC Rev. 3」은 「HS」 Harmonized System라는 多目的品目表의 제정에 즈음하여 UN 統計委員會가 「SITC」와 「HS」체계와의 연계·전환을 위한 「SITC Rev. 2」의 개정의 必要를 느껴, 이의 실현을 위하여 UN 통계국이 작성한 것으로, 이 統計品目表는 1985 年 5 월에 개최된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사용에 관한 결의안으로 승인·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UN은 1988년부터 각 나라가 「SITC Rev.3」에 의거,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각 나라는 SITC를 기초로 品目別의 貿易統計를 집계하여 UN에 報告하고 UN은 이 보고자료에 의해 UN가맹국의 무역(수출입) 통계를 品目別로 比較對査할 수 있도록 編成하고 있으므로 SITC는 국제적 통계분류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당국은 HS의 국내도입에 대처하여 HS 체계에 의한 「한국통일상품분류: HSK」, 「新관세율표」와 「HS 관세율표 해설서」를 완성하였으며, (MOF:재무부, 주관), HS 체계와 상호 조화된 SITC Rev. 3 체계의 새로운 제 8차개정 SKTC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를 제정하였다. (EPB:경제기획원, 주관)

第 2 章 SITC 品目表의 發展沿革

1. 國際統計品目表의 必要 … 1930 年代

통일된 國際標準貿易品目表는 오래전부터 關稅分野에서 뿐만아니라 統計分野에서도 실로 심각하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분석과 상품별무역자료의 국제비교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1930 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교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말하면, UN은 1937년에 작성한 「세관품목분류초안」=「UN 품목표」=「잠정제네바 품목표」Draft Customs Nomenclature의 개정案을 기초로 1938년에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商品最小目錄」Minimum List of Commod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을 발간하여 경제·流通 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한 것이다.

2. SITC原典의 作成… 1950 年代

UN 통계위원회 제 3 차 총회에서 그간의 국제무역구조의 큰 변화에 따른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비교·분석이 보다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 나라, 정부간 단체 및 국제기관의 증가된 요구에 맞도록 동「상품 최소목록」의 개정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고, 1950년 7월 12일에 개최된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 통계위원회 제 5 차 총회의 권고에 따라 UN 통계국이 작성한(이때

각국 정부와 전문고문단 Expert Consultant 의 협력을 거침) SITC Original 이 정식으로 승인된 것이다. 이 品目表는 10部 Section, 52類 Division, 150群 Group, 570項目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品目表는 1948~50년간에 통계분야뿐 아니라 관세분야에도 통일된 국제적 표준분류의 필요가 요구되어 「구주관세동맹연구단」 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 이 1937년의 제네바품목표(제1차개정)를 기초로 1948년에 브랏셀品目表(BTN) 草案을 작성하고 1950년에 關稅協力理社會(CCC)가 BTN을 완성할즈음 제정된 것이다.

당초의 BTN과 SITC의 兩品目表는 상이한 목적을 위해 전연 별개로 작성된 품목표이기 때문에 전체 혹은 세부계획의 일치나 조화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1951년에 兩品目表間을 연계한 「TWO-Way Coding Key」가 제정 되었다.

3. SITC原典의 改正… 1960年代

세관에서 작성된 BTN에 의한 각종 상품지료를 SITC체계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BTN체계상 품목을 SITC 체계상 품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단한 불편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다시 전환 분류하는 데에는 상당한 통계자원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951년부터 1956년 사이에 兩品目表間의 대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品目的 연계작업이 있었다. 그 결과 「SITC-BTN연계표」 New Table가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계표는 一方의 品目表의 각 項目의 他方의

品目表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가를 表示한 것이나 1對1의 對應은 아니다.

그후 SITC와 BTN을 어느 것이나 完全하게 對應케 하고 一方의 表에서 작성된 통계를 他方表의 통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연계표의 필요욕구가 높아져 이의 실현을 위해 UN과 CCC가 1958년부터 60년까지 共同作業을 진행하였다.

〈表-1〉 BTN과 SITC연계

'51 ~ '56년형연계표			'58 ~ '60년형연계표		
BTN		SITC	BTN		SITC
Heading	품명	Division	Heading	품명	Division
0701	야채	054.1	0701	야채	
		054.4	A	감자	
		054.5	B	토마토	
			C	기타	
2710	석유, 석유제품	331.02	2710	석유, 석유제품	
		332.1	A	조유	
		332.2	B	휘발유	
		332.3	C	등유	
		332.4	D	경유	
		332.5	E	중유	
		332.91	F	윤활유및윤활제품	
			G	기타	
8459	기타의 자재	771.7	8459	기타기계	
		719.8	A	원자로및그부분품	
			B	기타	

(註 : AB...는 補助單位를 나타내는 符號이다.)

이결과, BTN 1098 호 Heading 중 119 號가 총 333 품목으로 細分되고 當該細分品目を 포함한 BTN 각 항목의 품목범위와 일치하도록 SITC의 각 항목의 크기를 다시 정하고, 이 항목을 SITC의 배열로 나열한 「SITC Rev.」를 제정하였다.

다시말하면, SITC Rev.의 각 항목은 무역상품의 급속한 증가와 상품 패턴의 변화, SITC와의 연계필요에 따라 개정된 1955년의 BTN의 각 항목과 1對1로 거의 對應하게 되었다.

위의 [표-1]은 1951~1956年型의 BTN-SITC 연계표와 1958~1960年型의 BTN-SITC 연계표간의 차이를 例示한 것이다.

4. SITC Rev. 2의 制定... 1970年代

통계위원회 제 15 차 총회 (1968年 11月)에서는 SITC Rev. 제정 동기와 같은 사유로 대외무역통계의 편성 및 분석에 적절하도록 SITC Rev.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UN통계국은 2회의 전문가會合 Expert Group을 개최하였고(1차: '69년 11월, 2차: '70년 6월), UN경제·사회이사회는 1차회합의 결과 및 UN통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豫備草案을 작성→2차 회합에서의 예비초안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의견 검토반영→1972년 1월에 SITC Rev. 2 원안제정→기본골격승인→통계위원회 18차회의('74년 10월)에서의 전문가회합등의 意見書(例: 전문가 회합, 각국 및 국제기구가 제시한 견해)와 SITC/BTN 작업단의 작업결과에 관한 권고

를 받아들여 UN경제사회이사회(1975)이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SITC Rev. 2」이다.

여기 SITC/BTN 작업단은 CCC가 BTN과 SITC간의 관계를 품목對 품목으로 연계하도록 설립한 작업 그룹이다.

5. SITC Rev. 3의 制定... '80年代

세계무역패턴, 과학기술의 변화는 현행 CCCN의 Sub-Division(細分)만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주요 무역국과 국제기구들은 1970년에 통일된 경제관계 品目表(통일 코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CCC에 統一코드의 제정 가능성을 검토 의뢰하기에 이르러, 統一코드의 제정작업을 맡을 HSC(Harmonized System Committee)가 1973년에 CCC內에 구성되고 同委員會에 의하여 1,011개의 4단위 체계의 CCCN을 베이스로 5,019개의 6단위 체계의 HS가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UN통계위원회 21차총회(1981년 1월)에서 「HS」 및 「New CCCN」의 시행에 맞추어 3차개정 SITC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1982년에 UN통계국이 SITC Rev. 2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자문과 전문가단의 도움을 받아 최종안인 「SITC Rev. 3」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SITC Rev.3」안이 통계위원회 23차 총회(1985년 2월)에서의 수정·승인과 권고에 따라 22차 경제사회이사회(1985년

년 5월 28일)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UN 회원국들은 SITC Rev.3에 의한 무역통계자료들을 가능한 국제적으로 널리 또는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도록 권고받고, UN기구가 진행하는 SITC '데이터'는 가능한 SITC Rev.3에 기준하도록 권장하였다.

第3章 SITC의 構造 및 特徵

1. SITC의 定義

CCCN이 關稅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통일품목분류표라면 SITC는 統計目的을 위하여 제정된 특정용도의 통계용 통일품목분류표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SITC는 對外貿易의 대상이 되는 商品의 통계분류표로서, 경제분석과 상품별무역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商品統計基準을 제시한다.

무역관련통계를 위하여 1950년대에 SITC와 EC의 NIMEX(구 주공동체무역통계표)가 考案되었고, 운송통계를 위하여 ECE의 CSTE(Commodity Code for European Transport Statistics) 품목표 등이 작성, 사용되어 왔다.

SITC의 形態는 ① 1950년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무역통계를 위하여 작성된 SITC原典 ② 1960년의 BTN과 SITC간의 1對1 對應을 위한 SITC 원전의 개정판인 SITC Rev. ③ 1974년, 그 시점의 최신 BTN과 SITC간의 대응을 위한 SITC Rev.의 개정판인 SITC Rev. 2 ④ 1985년의 多目的品目表인 HS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SITC Rev.3 등 4개 類型으로 구분된다.

2. 「SITC」의 構造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

tem 가

- GRI : 解釋에 관한 통칙
- Note : 註 (部, 類 및 小號의 註)
- Section : 部
- Chapter : 類
- Sub-Chapter : 節
- Heading : 號 (4 단위)
- Sub-Heading : 小號 (6 단위)
- Numerical Codes : 관련 코드번호

등으로 구성되고 코드번호 (부, 류, 절, 호)는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10진법으로 편성되고 있는 반면에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는

- Section : 部
- Division : 類
- Group : 群 (細目)
- Sub-Groups : 小群 (細目)
- Item : 項目
- Title Description : 部, 類, 號의 표제, 品名
- Numerical Codes : 관련 코드번호

— 아라비아숫자

— 로마숫자 (예외물품 집계)

로 구성되어 있다. SITC는 HS와 같은 분류지침을 규정한 분류 표의 「해석에 관한 通則」 「註」 등이 없다. 따라서 특정한 號의 범위나 정의의 결정은 편의상 CCCN (HS도 마찬가지)의 해

석기준(예: 해설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HS의 코드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10진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SITC의 경우, 금·통화등 통계표에 포함되지 않는 例外的인 物品에 대한 HS와의 대응을 위하여 아라비아숫자에 의한 코드번호외에 로마숫자의 코드번호가 부여된 임의의 호(例: 1 화폐용 金등)가 있다.

〈表-2〉 SITC Rev. 3 상 로마숫자의 別途分類號 발췌

REV. 3	HS or CCCN	SITC REV. 2
I GOLD, MONETARY	7108.20	I
II GOLD COIN AND CURRENT COIN	7118.90	II

SITC의 각 상품별 코드번호는 CCCN·H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DP(自動資料處理機)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자료를 얻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졌는데, 즉 최초의 1자리 숫자는 「Section」, 2자리 숫자는 「Division」, 3자리 숫자는 「Group」, 4자리 숫자는 「Sub-Group」, 더 細分되는 경우에는 5자리 숫자로 표기하는데 이는 「Item」을 나타낸다.

SITC Rev.2의 경우, 5자리 숫자를 묶거나 5자리 숫자에 괄호로 묶은 알파벳 문자를 추가하여 (例: 65 1.99(a) : yarn true hemp, 65 1.99(b) : paper yarn), 補助號로 잠정 Heading을 사용하였다. 잠정 Heading은 BTN Heading 중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Heading 을 통합 삭제하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남아 있도록 설계된 Heading 을 가리킨다.

그리고 각 나라는 自國의 必要에 따라서 1 자리를 追加하여 6 자리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세분하여 code 化 할 수 있다.

SITC Rev. 3 과 SITC 원전, Rev. Rev. 2 간의 구조별 항목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비 교

구 분		별 표	SITC 원 전	SITC Rev.	SITC Rev. 2	SITC Rev. 3	비 고
구	부 Section(대분류)		10	10	10	10	1 자리수
	류 Division(중분류)		52	56	63	67	2 "
	군 Group (소분류)		150	177	233	261	3 "
	소군 Sub-Group (항목분류)			625	786	1,034	4 "
성	○ 4 단위 未細分			368	351	314	4자리밖에 "0" 표기(예:XXXX0)
	○ 5 단위 細 分			(257)	(435)	(720)	
	항 목 Item		570	944	1,573	2,805	5 자리수
최 종 항 목 수			570	1,312	1,924	3,119	

(최종 항목수에는 별도 例外物品集計항목 I, II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SITC의 최종항목수(4-5 자리수 항목)는 위 표에 의하여 SITC가 發展・改編되면서 증가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다.

3. SITC의 特色

가. 分類對象面의 特徵

SITC Rev. 3은 SITC 原典, SITC Rev. 1,2의 경우와 같이 무역거래에 관계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제정되었다.

통계위원회는 SITC Rev. 3가 관세區域에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는등 이동의 결과로 同상품의 원재료가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포함한다고 권고하였다.

貿易商品의 거래는 ① 보통의 상품거래외에 ② 정부무역거래 (예: 외국 원조물자, 전쟁배상금, 군수품거래) ③ 외국특허권소유거래, Foreign Concessionaire 및 ④ 우편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⑤ 外國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어류수입과 ⑥ 國內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어류수출도 여기에 포함한다. ⑦ 이들이 국가의 대외무역통계에 포함되는 한 창고, 보세창고, 재수입품, 재수출품, 병커거래 (Trade in bunker) 및 外國船機 (선박과 항공기)에 저장하는 비품 등도 SITC Rev.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수송을 목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나는 通過貨物은 제외된다.

金 및 발행되어 유통중에 있는 通貨나 소유권 권리증서 (증빙)에 대하여는 그의 이동이 물적 자산보다는 어느 면에서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SITC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銀은 대하여는 발행이 끝난 은화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상품무역과 금 및 통화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단일 보고서에 집계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편의를 위

해서 SITC는 이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示唆되어 있는데 그와 HS의 대응관계는 앞의 <표-2>와 같다. 이와같이 취급은 HS·CCCN의 급과 통화들을 포함 분류하는 것과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나. CCCN·HS와의 比較

SITC는 巨視的 경제분석을 위한 통계 품목분류표라 말할 수 있다. SITC는 우선 모든 물품을 「식료품 및 동물」의 그룹과 「광공업품」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SITC와 CCCN·HS兩者間의 조화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두 분류체제간을 완전히 조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SITC와 CCCN간의 상이한 분류기준에 의한 구조상 차이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例가 섬유분야인데, SITC는 1차 가공단계(상이개념)별로 섬유원료→絲→직물순으로 크게 분류하고 2차로 원료(하위개념)별의 견→모→면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CCCN의 경우는 1차원료별로 즉, 견→모→면 순으로 大別하고, 2차로 가공단계별의 섬유원료→糸→직물로 각 배열하고 있다.

SITC의 경우, 국제무역량이 많은 물품은 主要交易品으로 인정하여, 관세율의 高低를 불문하고 特擧細分하고 있으나 반면에 CCCN이 경우, 산업보호, 관세징수의 필요가 있는 물품, 높은 부가가치품, 귀중품 등이 무역량의 多小에 불구하고 특개세분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관세취급자들에게 관심있는 품목이 통계취급자들에게는 관심밖의 품목으로, 무역통계 취급자의 관심품목이 관세취급자들에게는 관심밖의 품목으로 각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CCCN·HS는 분류의 통일을 위하여 분류에 관한 규칙 (Rule)이 설정되고, 용어도 간명하면서도 아주 엄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는 법상의 품목표로 세금의 징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SITC는 권고적 품목표로 통계자료도 CCCN (HS도 마찬가지)의 경우보다 부정확하다.

第 4 章 SITC·CCCN·HS 의 相關關係

1. SITC·CCCN·HS 의 區分

국제기구·정부·공공단체·기업이나 개인등 산업·經濟圈域別 활동주체들은 각자의 상품분류의 필요·용도에 따라 나름대로의 편리한 상품 품목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각 나라의 관세당국은 관세의 목적으로 「관세 협력 이사회 품목표」 CCCN·「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관세율표」 TSK 등, 통계취급자들은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SITC·NIMEX·「캐나다 수입통계표」 ICC·「한국 관세 행정 통계분류표」 CCCNK 등, 운송·보험업자들은 운송·보험료율의 적정한 부과를 목적으로 「세계 항공화물 분류표」 WACC·「해상 보험료율표」 MITK·「극동 해운운임동맹 운임요율표」 FEFC Freight Tariff 등을 각각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者들은 각 나라 권역마다 서로 다른 품目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目·商品名·商品의 定義·분류체계나 코드번호 등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연유에서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해 세계적으로 統一된 품目表를 制定하여야 한다는 要望이 높아짐에 따라 統一된 관세목적의 국제품目表인 CCCN과 아울러 세계무역의 통계(무역비교, 경제분석)를 목적으로한 국제품目表인 SITC가 제정된 것이다.

물론 CCCN은 당초 관세목적뿐 아니라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정·권고된 것으로 관세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In Brief, CCC발간 81.7 참조)

실제로 CCCN은 관세징수를 위한 관세율표나 관세행정에 필요한 자료집계를 위한 통계품목표로 각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 CCCNK, 「일본수출통계품목표」 ESSJ 등). 반면에 SITC의 경우도 국제무역의 통계(예: 수출, 수입, 운송통계)뿐 아니라 관세목적으로도 일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남미의 일부 국가나 영연방국가들에 의하여는 SITC가 관세 목적이 品目表로도 사용되어 왔다. (ST/ESA/STAT/SER,M/34 Rev. 2, UN 통계국 발간 참조).

물론, CCCN과 SITC는 관세·통계에 兩用되어 왔으나, CCCN의 경우 主用途는 관세목적, SITC의 경우 主用途는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품목표임으로 양자간은 구분되고, 뿐만 아니라, SITC는 운송·보험·창고·기타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多目的 공통품목표인 HS와도 구별된다.

2. CCCN·HS와의 連繫 必要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경제분석이나 무역상품별 통계자료를 「SITC」에 의하거나 「SITC·CCCN상관표」에 의거 整合해 오고 있으며, 주요 국제기구들도 SITC를 세계무역통계자료의 집계를 위한 기본품목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관세목적에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품목표에는 CCCN (BTN의 後身, 1976. 6월에 CCCN으로 개칭)으로 현재 동 품목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150여 국가에 달한다.

SITC는 UN이 권고(Recommendation)하는 「勸告型 品目表」이나, CCCN은 국제협약상 채택된 「協約型 品目表」이다.

CCCN은 여러 국가,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세관에서 품목분류를 해 오던 체계를 따른 것인데, 관세행정의 필요에 맞추어 품목의 분류기준은 제품원료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취급자(예: 국제기구, 정부, 단체등) 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CCCN에서 얻기 위하여는 이를 SITC체제로 품목분류를 다시 하지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SITC는 巨視的 경제분석을 위한 품목표로서 분류체계가 그 목적상 식품·원료·화학약품·기계류 및 산업원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무역통계의 작성시 사용되는 자료는 그 자료자체가 CCCN의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세관 통관창구에서 처리된 수입신고서로부터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양품목표간에는 기본구조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양 분류체계 사이에 긴밀한 상호연계를 설정할 필요를 오래전부터 느껴왔다. 이러한 연유로 CCCN체제로 집계된 세관의 자료를 SITC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계표를 제정하는 작업이「관세협력이사회」 CCC 와 「국제연합통계위원회」 UNSC에 의하여

공동으로 1951년부터 착수되어 그 작업의 결과 처음으로 「Two-way Coding Key」가 개발되고,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쳐 마침내 1985년 2월 SITC Rev. 3와 HS·CCCN간 상관표의 制定에 까지 이르렀다.

SITC와 HS간의 관계도 HS가 비록 다목적품목표의 분류체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主幹格은 CCCN을 母體로 하고 있으므로 SITC와 CCCN간의 관계와 거의 同一하다.

3. 用語統一

兩品目表간에 표기된 품목명의 相異는 실제 동일한 품목이라도 분류체계상 배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SKTC는 통계필요상 통용되는 상품명을, CCCNK는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일반화된 상품명을 각각 선별했기 때문에, 용어간에 상이가 있을 수 있으나, SITC Rev. 3의 품명의 구성은 HS 품목표상의 품명을 거의 copy한 정도이다.

따라서 HS와 SITC간의 자료전환과 비교가 더욱 쉽게 되었다.

(※ ISI Report, 1984. p-983)

품명 통일 의 例示

SITC	CCCN (과 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61.31 ... Rev. 1 「Paving and Flagstones of nature stone」 ○ Code No. 661.31 ... Rev. 2 「Road and paving setts, curbs and flagstones, of natural stone (except slate)」 <p>〈註: CCCN 품명에 일치시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801 ... CCCN 「Road and paving setts, curbs and Flagstones of nature stone (Except slate)」 ○ Code No. 6801 ... CCCN 「上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61.31 ... Rev. 3 「右同」 <p>〈註: HS 품명과 일치시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801.00 ... HS 「Setts, cubstones and Flagstones, of natural stone (except slate)」

4. SITC와 CCCN의 연계

가. 相關表의 定義

「SITC와 CCCN간 상관표」 (a Correlation table, SITC and CCCN)는 CCCN形 관세율표에서 집계된 통계자료를 간편·신속·정확하게 SITC를 베이스로 집계한 통계자료를 CCCN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SITC와 CCCN의 同一 품목간을 연계한 表 Table이다.

상품분류란 ① 하나의 상품群과 다른 상품群과의 구별을 밝히고 그 「그룹」마다 일정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상품을 체계적

으로 類型化하는 것, 또는 ② 상품이라는 포괄적 특성을 형성하는 공통적 集群가운데서 상품의 사용목적, 용도에 대응하여 동질적 속성을 가지는 個別商品群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종 품목표 Nomenclature는 분야별 사용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상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品目마다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품목표상에 계기하고 있는 상품(품목)들의 명칭은 ① 「集합상품명」 ② 「合成·復合상품명」 ③ 「並列상품명」 ④ 「混合型상품명」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품목표간의 상품을 분류·연계시키는 작업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품명칭들은 각 품목표마다 다르게 표시되고 있어 그 배열편속되고 있는 商品에 관한 定義나 범위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한편의 품목표상 집합상품명과 다른 쪽의 합성·병렬·혼합형 상품명과 분류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나. 相關表의 변모

① SITC Original 과 BTN간 연계 (Two-way coding Key 제정)

UN이나 CCC의 상품분류 전문가들은 SITC와 BTN은 국제 무역분야에서 불가분의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가지므로 양자간 자료의 신속·정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여, 1951년에 UNSO와 CCC가 SITC 원전과 '50 BTN (1950년의 BTN) 초안의 동일 품목간 연계를 위한 「Two-way coding key」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양품목간에는 분류체계, 품목명 Title, Description, Texts 및 품목범

위가 相異하여 1 품목 對 1 품목으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대응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채소의 경우 BTN에서는 하나의 호 Heading 「0701」에 포괄 분류하고 있으나, SITC에서는 감자는 「054.1」 토마토는 「054.4」 기타 채소는 「054.5」로 3분 배열하고 있어, 채소 1 품목은 감자등 3 품목과 연계되는데 이런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② SITC 원전과 '55의 BTN간 연계 (New Table 제정)

UN, GATT, ECE 및 CCC는 1955년에 '50의 BTN 초안에 대한 전면 改正에 맞추어 현행 상관표도 「개정 BTN」을 기초로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리하여 관계 전문가들이 1956년 4월에 '55의 BTN과 조화되는 「新상관표」 New Table를 제정하게 되고, 이어 유럽경제회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同表가 각국에 통고된 것이다.

1958년 8월에 UN기구가 주최한 관련 기술회의에서는 SITC 번호가 병기된 하나의 관세율표형 코드 「Tariff Codes」의 구성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CCC발간, Bulletin No. 5 참조) 그러나, 新相關表도 양자간의 연계를 위한 항목세분을 하였음에도 무역통계취급자들에게 만족을 줄만한 것이 못되었다.

③ SITC Rev와 '59의 BTN간 연계 (1차 상관표작성)

그리하여 만족할만한 신상관표 작성의 노력이 계속되어 1959년 5월에는 CCC 본부에 UNSO, EEC, GATT, OEEC 등의 대표가 모여 SITC·BTN간 품목의 일치를 위한 SITC의 개정을 진행할 것을 합의하고 동년 10월에는 뉴욕의 UN 본부와 파리의 OEEC

본부에서 修正相關表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동년 12월에는 위 회합에서 검토된 案이 다시 손질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SITC Rev로 알려진 SITC/BTN III, 상관표안 Draft Correlation Code, New Code가 최종 작성되었으며, 이 案은 비로소 1960년 4월에 UN통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일반적으로 「1次相關表」라 부르고 있는것은 이 案을 말한다. 그런데 이 案은 종전의 상관표보다 SITC와 BTN간의 상관관계를 거의 완전하게 표출하고 있다.

BTN 품목표에서는 SITC 품목표의 Sub-Group(4단위), Item(5단위)의 품목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BTN總 1098號(4단위 Heading)중 113號를 334개의 「統計小號」 Statistical Subheading로 세분하였다. BTN상 통계소호는 아라비아숫자로 된 4자리 밖에 영문 A, B, C……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補助號라 호칭한다. (예: BTN 1701(A):설탕)

다만, 「통계소호」는 권고적 사항으로 「호」의 경우와 같이 협약상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SITC Rev와 '60의 BTN의 최종 항목수를 대비해 보면 1332항목대(별도분류-7개호 포함) 1319항목으로 전체적으로는 1품목대 1품목간의 대응을 이루고 있다.

상관표는 다음과 같이 ① BTN의 號와 보조호 순서별로 주로 SITC「소그룹」(4단위)·「항목」(5단위)를 연계한 형과(例 1) ② SITC의 코드번호별로 BTN의 호·보조호를 연계한 형(例 2)으로 설계되어 있다.

< 예 1 : BTN 순서별 >

BTN No	SITC No	품 명
17,01		Beet Sugar and Cane Sugar Solid
	061,1	A.Raw Sugar
	061,2	B.Other

< 예 2 : SITC 순서별 >

SITC NO	품 명	BTN NO
061		
061,1	Sugar,beet and cane, Raw, solid	1701 (A)
061,2	Refined sugars and other products of Refining Beet, and cane Sugar, solid	1701 (B)

④ SITC Rev. 2 와 '74 의 BTN 간 연계 (2 차 상관표 제정)

사실상 1960 년 이후 무역규모의 급속한 증대와 상품패턴의 변화로 무역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로 UN 통계위원회, 15 차 총회 (1968.11) 에서 무역통계의 집계와 분석에 적합하도록 하는 SITC Rev 의 개정이 권고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개정안의 검토를 맡은 전문가단이 1969 年 初에 창설되었다. 등 전문가단은 1969 年 말부터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972 年 1 월 에 SITC Rev. 2 개정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BTN 과의 상관관

제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9월에 CCC는 SITC/BTN 작업단(새로운 CCCN/SITC의 상관표 작성을 목적으로 관세·통계전문가와 유관 국제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을 설치하고 9차례의 회의를 개최 1974년 9월에 상관표 작성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통계위원회 18차 총회('74.10)에서 각국 및 국제기구의 의견서, 전문가단의 견해와 CCC 임시위원회의 상관표 작성안을 토대로한 최종안의 승인을 거쳐, UN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75.5)에서 마침내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물론 동 SITC Rev. 2는 BTN의 號·小號를 연계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이 표는 1차 相關表와 구분하여 「2차 상관표」라 호칭한다.) 이즈음, CCC에서 SITC Rev. 2와의 연결을 위해 '65의 BTN(1차개정) 및 '72의 BTN(2차개정)의 1098개 號에 대한 號의 削除, 통합, 신설 등 수정작업을한 개정안이 작성되었는데(3차 BTN개정안), 同案은 1976년에 승인되고 1978년에 발효되었다. 동 CCCN품목표(BTN의 後身)의 號의 구성은 2차 BTN 개정안의 1098개 호중에서 90개호의 삭제, 2개호의 신설, 260개호의 통합, 분할등 총 1011개호로 축소되고 이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In Brief, 그런데 이 BTN연계표의 SITC Rev. 2는 1976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권고되었다.

⑤ SITC Rev. 3와 HS간 연계(3차 상관표 제정)

1970년대에 품목표의 사용자들이 CCCN의 보조號만으로는 SITC와의 연계 등 그들의 필요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의 발견과

분류체계·용어·코드번호가 통일된 품목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표명에 따라 이런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HS 품목표의 개발이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3년 6월 61/62차 CCC 총회에서 「HS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CCCN은 협약상 4단위 號와 권고호인 5단위 보조용 統計號로 구성되고 있으나, HS는 협약상 4단위 號와 5·6단위 小號로 구성된 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1981년 1월 UN통계위원회 21차 회의에서 HS와 New CCCN이 발효될 때까지 SITC Rev. 3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다음 해에는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의 기본방향은 SITC Rev. 2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HS,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등 분류체계를 참작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어, UN통계위원회 23차 회의 (1985년 2월)에서 최종안이 수정·승인되고, 1985년 5월 UN경제사회이사회 23차 회의에서 SITC Rev. 3가 채택되고, 1988년부터 무역통계자료의 집계에 사용하도록 각 나라에 권고되었다.

동 품목표의 본문은 코드번호 순서별, 품목별로 3단위 (Group) 4단위 (Sub-Group), 5단위 (Item)에 대응되는 HS 4단위 (Heading), 5~6단위 (Sub-Heading)를 상호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록에는 HS 또는 SITC Rev. 2의 코드번호 순서별로 SITC Rev. 3의 대응항목을 연계하고 있다. 이 표는 위 2차상

관표에 이어 세번째 개정된 SITC Rev. 3 과 HS 간을 연계시킨 품목표라 하여 편의상 「3次 相關表」라 호칭하고 있다.

특히 SITC Rev. 3의 品目名은 HS의 품목명과 거의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어 1品目對 1品目の 연계가 아주 쉽다. 그러나 3차 상관표는 HS의 항목수가 SITC의 細分 項目數 보다 많기 때문에 SITC의 1개 항목에 HS 2개 항목 이상이 집합·연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차 상관표가 CCCN의 1개 항목에 다수의 SITC 항목이 연계된 것과 비교된다.

SITC Rev. 3의 제정작업시 당초 동품목표의 편성·항목수는 약 7,000개 項目으로 편성된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HS항목수 보다의 세분은 HS의 세계적 실시에 장애가 된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최종항목 3,119개 (별도분류 2개호와 3단위 미세분 8개號는 불포함)로 축소된 것이다. SITC와 CCCN간 연계 항목수를 상관표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SITC·CCCN·HS 의 단위별 항목 대비표

상관표별 단위 내용별		1 차 상관표		2 차 상관표		3 차 상관표	
		SITC.R	BTN(60)	SITC.R-2	CCCN(76)	SITC.R-3	HS
3 단 위	3 digit	(177)	-	(233)	-	(261)	-
	• 3단위 未細分	(13)	-	(15)	-	<7>	-
	• 3단위 細分	(164)	-	(218)	-	253	-
4 단 위	4 digit	(625)	(1,098)	(786)	(1011)	(1034) <1033>	(1241)
	• 4단위 미세분(A)	368	985	351	749	314 <313>	311
	• 4단위 세분	(257)	(119)	(435)	(262)	(720)	(930)
5 단 위	5 digit	(944)	(334)	(1573)	(1094)	(2805)	(3558)
	• 5단위 미세분(B)	944	334	1511	1094	2805	2453
	• 5단위 세분 (C)	-	-	(62)	-	-	(1105)
	5단위 최종항목 (D) (A+B+C)	1,312	1319	1924	1843	3119 <3118>	3869
6 단 위	6 digit (E)	-	-	-	-	-	-
	• 6단위 미세분(E)	-	-	146	-	-	2255
	• 6단위 세분	-	-	-	-	-	-
6단위 최종 항목(F) (A+B+E)	-	-	2008	-	-	5019	
Rome 숫자에 의한 별도 분류호 (G)		7	-	2	-	2	-
최종항목총계 I=D+G J=F+G		I:1319	I:1319	J:2010	I:1843	I:3121 J:5019	

資料 : ① BTN(60)은 CCC 사무국 발간 "The CCC Nomenclature"(1979.9) p-34 참조

② CCCN(76)은 CCC 발간 "CCC Nomenclature"(1976.5版) 참조별표 - 2

註 : 위표중 < > 부호는 SITC Rev.3 원전의 집계오류숫자를 표시한 것임

(예 : 33류 최종기본항목 8개를 7개로 착오집계)

⑥ 3次 相關表의 例外取扱品目

「SITC와 HS·CCCN간의 상관표」는 CCCN형 관세품목표를 사용하는 수많은 나라가 동관세품목표에 적합한 자료들을 SITC형 통계자료로 간단·신속·정확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기능의 발생은 양자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예 UN과 CCC는 각 나라에 관세 목적을 위하여는 HS·CCCN체계를, 생산·수출입 통계 등의 목적에는 SITC체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2개의 분류체계는 각 분야에서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양자를 보완 공용함으로써 관세요구, 통계, 경제 연구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말하면, 양자를 연계한 상관표를 만들어 세관에서 집계한 CCCN의 데이터를 經濟統計자료로 전환할 수 있다.(CCCN→SITC). 그러나 유일하게 HS에 1개의 基本號(2710)로 계기되어 있는 石油製品(SITC, Group 334)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료의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석유제품의 경우, 각 나라마다 各種石油商品別 정의와 규격이 相違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여 연계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대다수의 국가는 석유제품을 실제상 무역거래되고 있는 ① 輕質油, ② 中質油, ③ 重質油 등 3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나 我國, 日本 등은 ① 휘발유, ② 灯油, ③ 輕油, ④ 重油 등 4종으로 구분하고 있어, 아국 국내의 석유제품과 외국석유 제품과의 대응·연계는 실제상 어렵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의 「경질유」에 편속시킬 수 있는 아국의 석유제품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HS의 제정시에 석유제품의 세분에 대한 의견이 나라마다 엇갈려 基本「號」만 남겨 놓는 결과가 된 것이다.

따라서 HS의 시행후 당분간 석유제품은 HS의 基本號에서 집계된 자료를 手作業으로 분리하여 SITC체계의 자료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석유 및 석유제품에 관한 HS의 1개 기본호(2710,00)에 연관되는 SITC Rev. 3의 기본호는 334.1 등 8개(5단위 : 5개, 4단위 : 3개)이다.

5. CCCN 解釋基準의 援用

SITC상 각 항목의 題名 Title은 가능한 간단한 문구로 당해 항목의 내용이 되는 품명 Description을 충분히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제명은 CCCN·HS의 관련 「호」, 「보조호」, 「소호」의 원문 Texts와 꼭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SITC의 제명이 CCCN의 「호」와 「보조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범위는 「CCCN해설서」상 해당 해설내용과 관련시켜, CCCN 자신의 규정(해설규칙, 부, 류, 소호의 Note, 호 및 소호의 원문)에 따라 결정된다. SITC의 각 항목의 題名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범위는 사실상 CCCN의 해석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SITC의 경우, 분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CCCN의 명시 규정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들면 ① 「마늘」은 SITC 050.4의 「채소」에 분류되는가 또는 075.2의 「향신료」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SITC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CCCN 7류 해설에서 「마늘」은 채소에 분류한다는 요지가 명기되어 있다. ② 「대나무 組物材料」는 SITC 242.3의 목재에 포함되는가 또는 292.3의 조물재료에 포함되는가가 SITC에는 분류 지침이 나와있지 아니하나 CCCN에서는 14류 주에 「竹은 조물재료에 분류된다」는 요지가 명기되어 있다. ③ 「尿素」의 경우도 CCCN상 29류의 유기화합물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또는 31류의 비료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등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순수한 것, 화학용의 시약이라도 질소비료에 포함한다는 요지가 CCCN에 명시되고 있다.

SITC는 물품의 합리적인 분류를 위하여 SITC의 해석을 CCCN의 해석·적용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第 5 章 關稅의 觀點에서 본 SKTC

1. SKTC의 概要

가. SKTC (前KSCC)의 定義

多量形像의 형태를 가지거나 통계적 수치의 형태로 설명되어야 할 모든 經濟過程은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 그들의 규모가 表示되도록 요구된다. 이와같은 요구에 따라 국제경제나 一國內의 국민경제 實體를 구성하는 상품 (서비스) 의 생산→유통→소비實態와 동향과악을 통계적 수량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통일된 장치 (品目表) 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KSCC」, (Korean Standard Commodity Classification), 「JSCC」 (Japan S.C.C) 등 國內표준상품분류 (Domestic S.C.C)와 「SITC」 「NIMEX」 등 국제적인 표준상품 분류가 그 例의 品目表이다.

SITC는 序文에 「이 표는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상품통계를 제시하기 위한 품목표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SITC상품 인덱스, UNSO, 1963.10 발간). 이에 SITC는 국제경제와 무역상품의 분석 비교를 목적으로 통계작성에 편리하도록 一定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部→類→群→小群→項目, 표제, 품목명과 10진법에 의하여 부여된 관련 코드번호로 구성된 商品·流通動向을 통계적·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一種의 품목표라 定義할 수 있다.

KSCC(경제기획원 고시 제 14 호 1964.4.7)는 SITC가 國際的 무역상품과 경제동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國內外상품과 경제동향에 관한 여러가지 통계작성에 유용하도록, 국제용의 SITC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을 총망라 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므로, 이를 간추려 KSCC는 SITC의 기본항목(1~5단위)을 유지하면서 그 항목을 더 세분(6~7단위)하여 무역거래 대상품뿐 아니라 국내에 생산·유통되는 모든 상품을 통계·집계를 할 수 있도록 한 一種의 품목표이다.

나. SKIC, CCCNK의 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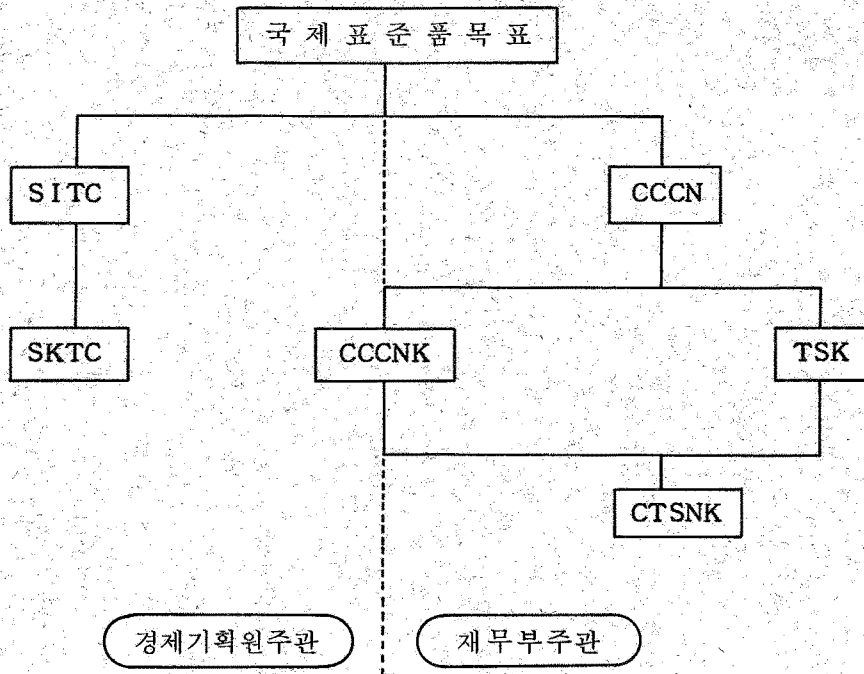
① 기본해당의 追加 細分

무역상품의 통계·집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SITC와 CCCN(주로 관세목적)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 채택되어 각 나라들은 협약이나 권고문에 표기된 등 품목표의 기본 골격에 각 나라의 경제와 商易의 필요에 따라 항목을 더 세분, 편성하여 DSCC로 사용하고 있다.

아국의 경우 경제기획원은 UN의 권고에 따라 SITC를 재편성 KSCC(=SKTC)와 CCCN을 더 세분한 CCCNK(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of Korea)를, 재무부는 관세징수와 관련하여 CCCN을 재편한 한국관세율표(TSK: Tariff Schedule of Korea)와 TSK 체계에 CCCNK를 組立·再編한 CTSNK(Combined Tariff and Statistic Nomenclature of Korea)를 각각 제정하여 주관 운용하고 있다.

이를 圖表化 해보면 다음 <表-7>과 같다.

[表 - 7] DSCC의 母體



“關稅行政統計品目表”(CCCNK)는 CCCN에 準據, ① SITC가 要請하는 項目과 ② 國內貿易政策·産業政策의 必要에 의한 項目을 新設·削除한 國內細分號: 8單位로 構成되어 있다. CCCNK (SKTC도 마찬가지)의 개정은 我國의 무역 政策과 産業政策上 經濟(貿易) 動向을 把握해야할 必要性이 높은 品目에 대해서는 統計細分을 分割 또는 新設을 하거나, 한편 貿易規模가 적어 貿易動向을 把握할 必要性이 없게 된것에 대하여는 商易行政上 見

地에서 (예를들면 동관절차의 간소화, 迅速化) 統合·削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②. SKIC (6 차개정)의 構成

SIKC Rev. 2의 Basic Heading 은 4 단위 (Sub-Group)에서 더이상 세분되지 아니한 항목 351개 (A), 5 단위 (Item) 항목 1573개 중 5 단위로 끝나는 항목 1511 (B), 6 단위 미세분 (5 단위 밖에 괄호로 묶은 알파벳문자)된 164개 (C) 및 별도 분류항목 2개 (D)를 합한 계 2010 (= A + B + C + D)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SITC Rev. 2는 크게 5 단계 형태의 수직하향식 분류체계로 1 단계 : Section (部, 넓은 경제범주에 의한 상품구분) → 2 단계 : Division (類, group을 넓게 특성에 따라 집단으로 요약, 상품부류간을 구분) → 3 단계 : Group (群, 국제무역통계에서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와 밀접한 상품명) → 4 단계 : Sub-Group (小群, 최소화된 포괄상품명... Class 수준의 상품명) → 5 단계 : Item (항목 개별적, 구체적 상품명... Name 수준의 상품명)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4 단위 이하를 세분한 CCCN과 기타 경제분류표와 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동 SITC를 국내에 채택함에 있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들의 무역패턴의 변화와 事情으로 특정 계층의 상품에 대하여는 SITC에 설계된 전체적인 명세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상품에 대하여 각국은 SITC의 上位水準의 데이터만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또는 SITC의 기본골격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 SITC를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SITC Rev.3에서는 이런점에

대비한 예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SITC Rev.3 서문, 18항 참조)

韓國標準貿易分類(SKTC)의 구성은 SITC의 기본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4단위와 5단위를 아국의 국내생산유통 상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상품의 분석 비교와 경제동향분석에 적합하게끔 6, 7단위까지 추가 세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6단위에서 7단위로 세분하는 경우, 코드의 부여는 6단위밖은 괄호로 영문 알파벳문자를 묶는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SKTC의 편성을 예시해 보면 다음〈표-8〉과 같다.

[表 - 8] SKTC 재편 예

SITC Rev. 2		SKTC	
Code No.	Description	Code No.	Description
66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면 시멘트, 섬유시멘트 및 비내화금속 광물의 건설자재	661.8	좌 동
661.81	아스팔트 또는 유사재료의 제품(석유역청, 콜탈핏치)	661.81	좌 동
		661.811	아스팔트제품
		(A)	블 록
		(B)	건축용 보오드
		(C)	용 기(주형)
		(D)	기 타
		661.819	기타 아스팔트 유제품

③ CCCNK의 편성

현행 CCCN은 크게 3단계의 수직 하향식 분류체계로 즉 1단계 : Section (部), 2단계 : Chapter (類 1, 2단위) 3단계 : Heading (號 3, 4단위)으로 구성된 관세 통계목적의 품목표이다. 최종항목은 1011개호중 4단위 未細分 749개호(A)와 262개호에서 세분된 5단위 (4단위 밖에 괄호로 묶은 알파벳으로 표시된 항목) 1094개호(B)를 합한 계 1843개 (= A + B)號로 識히 5단위로 세분한 것은 SITC Rev.2의 최종항목 2010개와 상호연계를 위한 것이다. 무역상품의 데이터는 세관의 CCCN을 기초한 통관자료에서 수집하고 있어 CCCN의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다. 아국에서도 관세징수와 관세행정 통계목적을 위하여 CCCN분류체계를 기준한 TSK, CCCNK 및 CTSNK를 제정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CCCN의 기본적인 분류체계에 따르면서 5, 6단위 이하에는 관세징수의 면에서 高關稅品, 고부가가치품, 산업보호의 면에서는 수출입 多頻度品, 무역량이 많은 물품, 통계적 면에서는 경제 분석, 관세율 책정시 자료확보의 필요와 국제무역상품의 국제비교성 제고등에 중점을 두고 항목을 세분 추가한 형태의 품목표들이다. 그런데 8단위 최종항목수는 현재 CCCNK가 7920개 CTSNK가 7915개로 발표되고 있다.

BTN협약상 세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Heading (4단위)까지는 각 나라가 세분시 一致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義務단위) 5단위 이하의 세분은 임의로 할 수 있다.

④ TSK의 편성

TSK(Tariff Schedule of Korea)의 한글명은 「한국 관세율표」로, 이는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동법 제 7 조)와 現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세율표(예: 한국 관세연구소 발간) 등 2種으로 구분된다.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는 CCCN의 4단위 체계의 기본항목을 관세장수 정책면에서 다시 이를 5~8단위까지 세분하고, 이 세분품목마다 관세율을 점선(…)으로 연결한 품목표로서 관세율이 연결된 품목을 세목(稅目)이라 하며, 현행 관세율표상 세목의 수는 總 2039개이다. (동숫자는 KTA 발간 월간무역 관세법규집수록 法律 제 3666호에서 집계) 별표 관세율표는 이런 점에서 「本來의 關稅率表」라 할 수 있다.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본래의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에 CCCNK 분류체계의 통계품목을 편입시킨 품목표이다. 따라서 등관세율표는 「관세법상의 관세율표」와 수출입 통계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정한 경제기획원 고시사항인 SKTC의 부록으로 등재된 「관세행정통계분류표」를 연관한 품목표라는 점에서 관세·통계 연관품목표(CTSНК: 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of Korea)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CCNK, TSK, CTSНК는 相異한 것이다.

[表 - 9] CTSNK 制定過程

〈TSK〉							〈CCCNK〉					
번호	품명	세율(%)					잠정	기분	세분	항목	항목명	SKTC
		기본										
		1984	1985	1986	1987	1988 이후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크립	5	5	5	5	5	2	7303	730301	7303100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304	철강의 쇼트, 그리트 (선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펠리트							7304	730302	73030201 73030299 73030300	선철과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합금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스테인레스강의 것 기타 (합금철) 의 것 기타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 쇼트	10	10	10	10	10			730401	73040101 73040102	철강의 쇼트, 그리트 (선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그릿트 철강쇼트 및 그리트 철강의 쇼트 철강의 그리트	671.3 671.3
	2. 그리트	10	10	10	10	10			730402	73040200	철강 와이어 펠리트	671.3
	3. 기타	10	10	10	10	10						



번호 Heading No.	품명	Description	세율Rate of Duty (%)							합정 Conces Sion	단위
			기본 General					잠정			
			1984	1985	1986	1987	1988 이후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Waste and scrap metal of iron or steel	2	5	5	5	5	2			
0100	* 선철과 주철의 것	* of pig or cart iron								Mt	
02	* 합금강의 것	* of alloy steel								Mt	
01	**스테인레스강의 것	** of stainless steel								Mt	
	**기타 * other	** other								Mt	
	* 기타의 것	* other								Mt	
7304	철강의 쇼트·그리트 (선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펠리트	shot and augular grit of iron or steel, wether or not graded wine pellets of iron or steel								Mt	
0101	1. 쇼트	1. shot	10	10	10	10	10			Mt	
02	2. 그리트	2. grit	10	10	10	10	10			Mt	
0200	3. 기타	3. other	10	10	10	10	10			Mt	

〈 CTSNK 〉

2. SKTC의沿革 및編成原則

가. SKTC의沿革

我國의 무역통계집계를 위하여 사용해온 통계품목표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1951년 이래 무역상품과 유통통계의 집계를 위해 1950년에 처음 제정 발간한 「SKTC」(SITC原型), 1962년과 1963년의 IBM기계 집계에 사용키 위하여 발간한 1960년의 「개정 SKTC」, 1962년 발간 「개정 SKTC」 및 1963년 발간 「개정 SKTC」 등이 있다. (이상 한국은행 발간) 그러다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주관하에 통계자료의 국내외 비교를 위한 「한국표준상품분류」(KSCC)를 1964년 4월 7일에 제정하였는데 이 品目表가 정부가 만든 첫 통계用品目表이다. 그후 등 KSCC는 여러차례 개정되어 1987년의 7차 SKTC에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HS 체계에 의한 SITC Rev. 3와의 대응을 위한 8차 SKTC에 이르렀다.

① 1차개정 KSCC (경제기획원 고시 제4호)

KSCC-Original은 Division (2단위)이하에서 국내상품의 생산과 거래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였기 때문에 SITC의 분류체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국제무역상품의 분류에는 이용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KSCC와 SITC의 一致로 국제상품의 분류에 활용하고자 1967. 12.23일 1차 개정하였던 것이다.

② 2차개정 KSCC (경제기획원 고시 제2호)

1차개정 KSCC는 Item (5단위) 이하에 6단위, 7단위로

세분한 최종항목의 상품명 (Description) 을 영문으로 병기하지 아니하고 國文만으로 표기한 형태를 가졌으므로 실제 이용상 불편이 많아 영문병기의 형태로 1971. 11. 8 일 2 차 개정하였다.

③ 3次改正 KSCC < 告示 제 11 호 >

UN 統計委員會 第 18 次總會에서, ① 그간 UN 이 推進한 SITC /CCCN 간 作業結果, ② 各國 및 국제기구의 意見書와 ③ “品目分類專問家會合”의 見解 등을 종합한 最終改正案의 採擇·勸告에 따라, UN 경제·이사회가 1975. 5 월에 이를 採擇·承認함으로써 「SITC Rev. 2」가 세계적으로 施行하게 됨으로 SITC Rev. 2 를 기초로 KSCC 의 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76 년 12 월 3 일에 制定한 것이 「제 3 차 개정 KSCC」이다. 이 品目表는 KSCC (SKTC) 와 CCCNK 의 最終항목간을 연계한 最初의 相關表이다.

④ 4次改正 SKTC (告示 第 24 號)

1972 年の 2次 BTN 改正案은 1978 년부터 「3次改正 CCCN」으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3차개정 CCCN 은 「2차개정 BTN」의 headings (號) 가운데, 세계무역실적량이 적은 90 個號의 削除, 260 個號의 統合·分割과 주요무역품과 관련되는 號의 3 個號 新設로 종전 BTN 체계의 1098 個號가 1011 個號로 조정縮小 개편된 品目表이다. 이와 같은 「3차개정 CCCN」의 시행에 즈음하여 SKTC 는 SITC Rev. 2 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CCCN 과 연계를 위한 改정의 需要가 있어, 「4차개정 SKTC」를 제정하고 1978 년 12. 23 일에 確定하게 된 것이다.

⑤ 제 5 차 개정 (1982.1.1, 경제기획원 고시 제 55 호)

제 5 차 개정은 제 4 차 개정과 유사한 형식의 보완적 개정으로 국내무역구조의 변동과 새로운 상품의 증가, 국내산업보호 등의 요청에 따라 137 개 항목의 신설, 20 개 항목의 내용수정과 5 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연관되는 CCCNK 를 상관적으로 보완하였다.

⑥ 제 6 차 개정 (1984.1.1, 경제기획원 고시 제 70 호)

제 6 차 개정은 4, 5 차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2 차 개정 국제표준무역 분류체계의 범위내에서 제 5 차 개정이후의 보완이 요구되는 신규 품목의 신설과 산업정책상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주요품목 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품목중에서 수출입의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세분신설 등 수출입 구조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468 개 항목을 세분 또는 신설하였으며, 수출입 실적이 없거나 세분의 실익이 없는 항목 등 31 개 항목을 삭제하고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는 53 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보완조정하였으며, 이들과 연관된 CCCNK 를 상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동 분류의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⑦ 제 7 차 개정 (1987.1.15, 경제기획원 고시 제 87 - 2 호)

제 7 차 개정은 제 2 차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 범위내에서 1984 년 이후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부 품목을 보완하고자 8 개 품목을 삭제하고 1 개 품목을 분류조정함으로써 무역통계를 좀 더 현실화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표준무역분류의 3 차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표준무역분류가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 최소한의 필수적 보완만을 추구하였던 결과이다.

⑧ 제 8 차 개정 (1988.1.1, 개정기획원 고시 제 87-18 호)

한국표준무역분류는 무역 관련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 2 차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를 기초로 작성되어 왔다.

그러나 CCC 및 UN에서 관세업무의 능률성과 통계업무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CCC 주관하에 관세목적분류인 CCCN 체계가 HS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HS 체계와 연계시켜 국제표준무역분류가 3 차 개정되고, 1988년부터 제 3 차 국제표준무역분류 체계에 의거 범세계적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HS 체계와 연계된 SITC Rev. 3 체계의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를 완성했으며, HSK 및 SKTC를 연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업무의 원활화를 기하였다.

나. SKTC의 편성原則

SKTC는 전술한 바와 같이 SITC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SITC의 기본항목을 다시 아국의 생산상품과 무역상품의 통계작성 및 산업무역정책상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세분한 통계 품목표로서 SKTC는 다음과 같은 原則에 의하여 편성되었다.

- ① SITC의 기본 분류체계와 항목 (5, 6 단위) 에 일치시키고 국내의 개발 및 예상되는 신규상품을 더 세분 (6, 7 단위) 하였다.
- ② 대외무역과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국제성이 높은 통계집

계뿐 아니라 아국의 생산상품의 자료를 집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SITC의 분류품목에 관한 해석은 UN의 권고에 따라 CCCN의 해설 즉, 해석기준에 따른다.

④ 코드(Cde)의 구성은 10진법에 의한 순서로 하되, SITC에 결번을 둔 경우(예: 013,0133 0131, 0132가 결번되었음) 이에 따랐으며,

⑤ 숫자부호 「9」는 기타 항목을 나타내는데 다만,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때는 부분품 항목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⑥ 부호의 끝자리가 「0」인 경우에는 더 세분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데 즉, 4,5단위 항목을 더 이상 세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단위까지 「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 742.1 → 742.100)그러나 SITC는 3단위에서 더 세분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표에 부호 「0」를 표기하고 있으나(예, 023 → 023.0) SKTC의 경우는 「0」을 표기하고 있지 않다.(예, 742.1 → 742.1, 742.100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⑦ SKTC와 CCCNK, BEC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의 항목간을 연계시켜 이용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즉, 수출입상품의 자료는 CCCNK에 의해 통합되므로 CCCNK의 항목들이 SKTC세분작업시 반영하였다.

第3部

HS 制度의 概要

第1章 HS의 概觀

第2章 HS 品目表의 構想

第3章 HS 制定의 基本原則과 分類基準

第4章 CC CN의 改編과 HS

第5章 HS의 協約

第 1 章 HS 의 概觀

1. HS 의 定義

- 用 語

HS는 Full Name이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HS協約과 그 附屬書」이고, 통칭은 「Harmonized System:調和制度」로 「HS」는 그의 略稱이다. 부속 서상 原名은 HS品目表(HS Nomenclature)라 표기하고 있다.

- 4개 型의 定義

(가) 目的·用途面에서의 定義

CCCN이 關稅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特定用途의 국제적 統一品目表라면 HS는 關稅·統計·運送 등 貿易節次上 개재하는 모든 分野에 共用하기 위하여 CCCN과 SITC를 母體로 만들어진 多目的·多用途 共通品目表라 할 수 있다.

(나) 業務節次面에서의 定義

HS란 貿易商品이 輸出國의 生産者로부터 輸入國의 消費者에 게 引渡되기까지의 各種의 流通段階에 있어서 각 단계의 圈域마다 品目表의 利用者가 이 品目表를 사용할 것을 요망하고 있는 多目的·總合的인 統一商品名 및 「코드」로 구성된 分類體系(品目表)이다.

(다) 構造上の 定義

HS·CCCN의 構成과 같이 品目表 全體와 分類方針에 관한 通則 (GRI)과 모든 國際貿易商品이 커버될 수 있도록 21部, 97類 (유보된 77類 포함), 1241號 (4單位號), 5019小號 (6單位號)의 體系와 各部, 類, 小號의 머리에 그 類의 分類方向, 他類와의 關係, 用語의 定義 등을 記載한 註(Note)로 構成되어 있다. 또한 일부 類에서는 節을 설정하여 商品分類의 理解를 돕도록 하고 있다.

HS-CCCN의 構造比較

H	S	分類構造	CCCN
6		通則 (項)	4
21		部	21
	38	(部註)	27
97 (77類는 留保)		類	99
	319	(類註)	269
33		節	30
124		號 (Heading)	1011
5019		小號	-
	33	(小號註)	-

(라) 協約上의 定義

HS 協約 第 1 條에 「本協約의 附屬書에 규정된 號(Heading) 小號(Sub-Heading) 및 그들과 관련된 「코드」番號(Numerical Codes), 部(Section), 類(Chapter), 小號의 註(Note)와 HS 해석에 관한 通則(GRI) 등으로 구성된 Nomenclature (品目表)」라고 그 構造와 定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HS와 New CCCN

「HS」는 「New CCCN」과 구분된다. 關稅協力理事會는 HS의 4단위 수준에서는 HS를 현행 CCCN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CCCN의 4單位까지는 HS와 동일 수준으로 改正되어야 한다는 合意를 보았으며, 이어 同 合意事項은 CCCN의 勸告改正案으로 HS협약 성립일자와 같은 날인 1983년 6월에 채택되었다. 이 勸告案이 「New CCCN」인 것이다. 따라서 New CCCN은 「HS 4단위 水準의 品目表」라 불리운다. 예컨대 New CCCN의 경우, 배합고무가 4단위인 「4005號」라는 1個號로 규정되고 있으나, HS의 경우는 4단위 「4005」와 同號의 所屬 6단위 「4005.10小號」, 「4005.20小號」, 「4005.99小號」등 4개 小號로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HS는 HS위원회 New CCCN은 NC가 각 제안한 것이다).

HS 와 New CCCN 코드 對比

< HS 코드 (6 單位) >

< New CCCN 코드 (4 單位) >

Heading No.	HS Code	品 名	Heading No.	品 名
40.05		加黃하지 아니한 配合고무 (一次製品 또는 판, 시트 또 는 스트립상의 것 에 한한다)	40.05	加黃하지 아니한 配合고무 (一次製品 또는 판·시트 또 는 스트립상의 것 에 한한다)
	4005.10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4005.20	· 용액과 분산액 (小號 第 4005. 10의 物品을 제 외한다),		
	4005.91	· 기타 · · 판·시트 및 스트립		
	4005.99	· 기타		

品目表間構成要素對比

구성요소별	품목표별	CCCN	HS	New CCCN
통	척	4개항(1-4)	6개항(1-6)	5개항(1-5)
註	部	27	38	38
	類	269	319	319
	小號	0	33	0
號	4단위	1,011	1,241	1,241
	5.6단위	0	5,019	0

2. 統一品目表의 必要

一 要 請

상품명의 統一과 통일된 상품명을 分類기준에 따라 배열하고 거기에 共通의 背番을 부여하여 각 經濟·産業分野에 公用될수 있는 分類體系와 品目表를 요청.

一 HS 制度에 대한 國際動向

主要國際·國家機構들의 1960년대말에 있어서 HS 制度와 關連한 動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UN 統計局

유엔統計局은 제 2 차 改正 SITC Rev. 2 商品分類가 시행된 이후 10 여년 이상이 경과하고 近年의 무역상품의 構造變化와 關連하여 현행 SITC의 機能과 役割의 한계로 다양한 통계상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어 根本的인 改正을 희망했다. 이리하여 1969년 11월에 주요 국가와 關連 國際기관으로부터 蒐集한 改正意見을 검토하는 「專門家會議」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SITC의 근본적으로 大폭 개정하자는 의견과 통계의 連續性 確保를 고려하여 특별히 중요한 부분만을 改正할 것을 주장하는 意見이 있었는데 後者가 채택되었다. 前者의 의견을 가졌던 者는 이 결정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여 빠른 期日 내에 SITC를 재검토하든가 SITC 이외의 解決裝置가 없는가 하고 실마리를 풀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 전문가들도 「HS」와 같은 國際적 이용이 가능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國際共通品目標를 요망했었다.

(나) 關稅協力理事會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國際共通品目標 가운데 CCCN이 가장 科學的인 品目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안고 있어 關稅協力理事會는 새로운 HS의 制定을 고려하였다.

첫째, CCCN은 關稅用으로 制定되었기 때문에 運送·保險 및 그의 商業用의 料率表나 品目標에서는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3회의 CCCN개정시 SITC와의 連繫作業에서 그 어려움이 실증되었다.

둘째, 美國·카나다 등 主要貿易國은 CCCN이 아닌 독자적인 品目標(例: TSUSA, CTC 등)를 사용하고 있어 CCCN은 國際的인 統一品目標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셋째, CCCN의 4單位號(Heading)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제로 國際間에 關稅引下協商時 많은 問題點이 노출되고 있다.

넷째, 貿易資料의 自動電送과 「컴퓨터」用的 國際的 統一品目標로서는 부적당하다.

(다) 유럽經濟委員會

유럽경제위원회(ECE)는 1969년 6월에 개최된 제 1회 전문가 회의에서 국제무역에 관한 절차의 簡素化와 標準化를 검토하면서 이를 촉진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국제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 코드번호를 부여한 정확하고 상세한 구

분이 가능한 商品分類體系를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라) 國際航空運送協會

國際航空運送協會 (IATA)는 1969년에 航空運賃料率表의 基準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운송절차에 있어 國內外的으로 同時資料處理가 가능한 새로운 品目表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런던空航에서의 航空貨物取扱總合電算處理「시스템」(LACES)의 경우, 貨物の 入出庫, 保管, 通關 등 一連의 事務處理를 機械化함에 있어 모든 關係자가 共同으로 사용할 統一된 用語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 英國貿易節次簡素化委員會

영국무역절차간소화위원회 (SITPRO)는 1968년에 貿易書式의 간소화를 위하여 설립된 官·民合同의 推進機關으로 그동안 活動實績이 많았는데, 이 機構 역시 商品코드의 標準化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무역서식 간소화 운동의 實效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새로운 商品分類體系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分類體系는 BTN(CCCN前身)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案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 統一商品名, 背番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A : 統一商品名

< 例 1 > 컵 (Cup)

{ Cup 또는 glass CCCN, SITC 등
 { Tumbler 운송, 보험요율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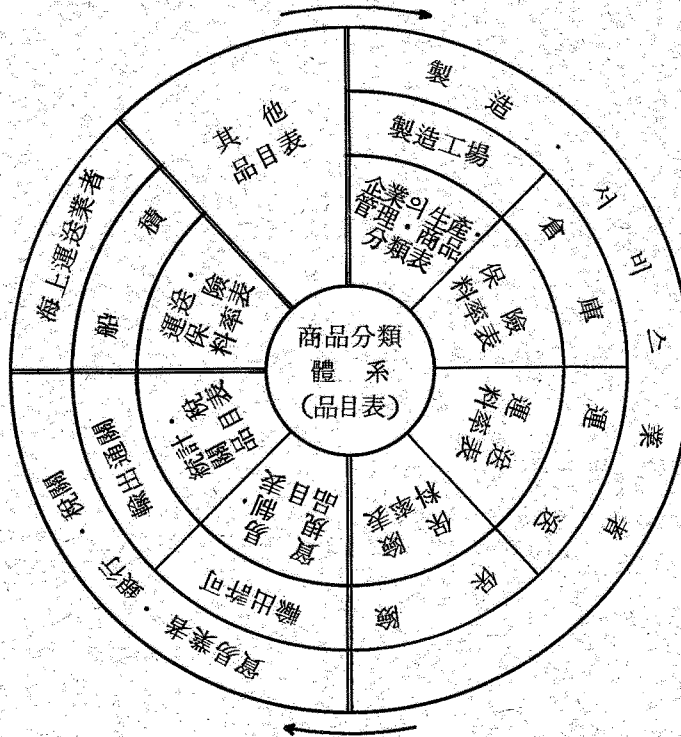
< 例 2 > 벤젠, 벤졸

{ 兩者區分 CCCN,
 { 兩者未區分 TSUSA

• B : 統一된 背番

貿易商品을 A국으로부터 B국으로 이동할 때 17종의 다른
 商品分類體系 때문에 分類轉換作業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
 력이 요구되었다.

貿易單位過程別 品目表 例



一 開發理由要約

첫째 : CCCN未採擇國(약 20개 國家)과 採擇國간에 무역교섭의 共通基盤이 없으므로 輸出入統計등의 비교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따라서 關稅率表의 국제적 통일효과를 半減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 무역국인 美國과 캐나다가 CCCN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問題가 되었다. 美國과 같은 貿易大國이 독자적 분류체계를 채택하여 관세율표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관계자(國家·貿易業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지금까지도 日本을 위시하여 많은 국가가 미국에 대하여 CCCN 채용을 요청하여 왔고 미국 자신의 行政府側에서는 그 도입을 시도한 일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美國議會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 대다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分類表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새로운 分類表開發의 큰 이유가 된다.

둘째 : 무역상품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 부응해서 CCCN체계의 補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新規商品인 로켓·人工衛星·光화이버등이 CCCN의 '바스켓' 品目(기타 품목)에 포함되어 統計資料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주요 무역상품들은 새로운 號를 設定할 필요가 있다.

셋째 : 민간의 保險·運送(陸·海·空) 등에 있어서 商品分類의 공통성이 없어서 貿易關係者에게 큰 부담과 노력이 소요되는바, 무역관계 모든 分野에 사용될 통일된 品目表의 制定 必要가 생겼다.

※ 資料 : CCCN 발간 HS 概要

3. HS 品目表의 特色

「HS」는 多目的・多用途의 국제적 共通品目表로서 통일된 용어와 코드로 구성되고, 貿易書式의 標準化・貿易資料電送시스템化를 고려하고 있어 業務를 簡素化하였을 뿐 아니라 分類가 합리적이고 명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용이 간편하다. 이는 이 品目表가 다음과 같은 一般的 特徵이 있기 때문이다.

(가) 貿易資料電送의 可能化 및 書式의 標準化

HS는 무역상품이 하나의 商品分類體系圈域에서 다른 分類體系圈域으로 이동할 때마다(예, 通關관계・육・해・공의 운송단계→보험→창고・항만의 보관단계 등) 別개 品目分類를 하는데 소요되는 時間과 勞力을 대폭 절감할 뿐 아니라(코드番號別 자료 便覽) 國際間의 데이터 전송의 可能과 貿易書式의 標準化를 쉽게 한다.

(나) 貿易・關稅交涉에 有用

공통의 品目表는 무역 등 統計分析・比較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세계 무역의 分析的 研究에 있어 重要할 뿐 아니라 各國의 貿易・關稅交涉에 크게 有用하다. 國際貿易・關稅交涉에 있어 아주 細分된 分類수준의 資料가 필요할 경우, 相異한 품목 표로부터는 資料를 수집한다 해도 商品의 定義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한 資料를 入手할 수 없다.

(다) 相對國 關稅資料와 貿易協定 遵守 檢索容易

自國 關稅율표의 索引으로 무역 상대국의 關稅率을 색인할 수

있어 상대국의 稅率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共通品目表를 사용하므로 關稅讓許 등 貿易協定이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가 쉽다.

(라) 分類의 正確과 明確性

HS는 가능한 간결한 形態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어 技術分野의 용어나 貿易·關稅用語를 選別·統一하여 모든 利用者가 쉽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HS는 CCCN과 마찬가지로 이 품목표 전체의 分類指針으로 머리쪽에 ‘通則’ (GIR)을 두고, 또한 이 표의 部·類에 관한 분류 지침으로 註(Notes)를 두어 用語의 正義 등을 규정하여 분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다.

(마) 自發的 追從

그간 CCC의 品目表委員會(NC)에서 찬성 또는 불찬성이라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 事案은 그 채택 여부가 協約的 義務事項은 아니지만, 그 결정내용은 CCCN 協約加入國뿐 아니라 協約 未加入國으로서 CCCN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제공통 품목표로서의 利點과 國際道義에 의하여 CCCN을 세계적 품목표로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 HS도 CCCN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범세계적 채택이 예상된다.

第 2 章 HS 品目表의 構想

1. HS 의 開發過程

— 沿革

HS 의 制定年度

年 度	主 要 業 務	備 考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코드 관심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무역국, 국제경제기구, EC • EEC 統一코드 制定必要 結論에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부담경감 — 데이터 자동電送시스템의 효율화 • 통일코드 제정 가능성 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E → 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6월 35/36次 CCC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사무총국: 統一코드의 作成主體는 CCC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提案을 총회에 제시 — 총회: 위 報告承認 — 結果: 통일코드 개발연구단 (SG: Study Group) 發足
7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에 통일코드 개발연구단 設置 1차 예비회의 (70.10) 2차 예비회의 (70.12) 	
7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코드의 개발 可能·必要 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6월 37/38次 CCC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단 報告: 統一코드의

年 度	主 要 業 務	備 考
7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단 보고 - CCC 총회 승인 • 구체적 작업 실시방법 정립 - 기술작업팀 (Technical Team): HS Text 작성 - 운영단 (Steering Group) : 기술작업팀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開發可能, 必要不可缺 • 총회: SG가 提案한 案 승인 • 第1期 작업 착수 • TT와 SG設立
71.12 72. 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의 구체적 방법론 종결 	
7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 S. C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5월 41/42차 CCC 총회
7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格 HS개발작업 착수 - 第1次 HSC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단報告: HSC設置
7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양케이트 실시 - 사용상품 분류표의 명칭 및 사용 목적 - 코드 (Code) 번호 단위와 총 품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위 설치안 승인
8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협약 채택 - 品目分類局 發足 - 잠정 H. S. C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6월 61/62차 CCC 총회 - HS협약 채택 - New CCCN 권고
8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 잠정 HSC개최 - H. S. C → Interim. H. S. C (대치) 	
8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작업팀 첫모임 - CCC내의 N. C (Nomencl- 	

年 度	主 要 業 務	備 考
85. 6	ature Committee)와 잠정H.S.C로 구성 • HS해설서 개정	
86. 3	• HS해설서 영문판 발간	
86. 6	• HS협약실시를 위한 회의 (65/66차 CCC총회) -협약가입국 : 45개국	
86. 7	• HS양허 재협상 개시	
87. 9	• HS協約, 正式締約國은 29 個國 • CCC사무총장의 HS 발효확정선언	• 無條件加入 : 7 個國 • 署名後此准 : 22 個國 (관세 · 경제 同盟 포함)
88. 1	• HS의 범세계적 시행	
88. 4	• 제 1 차 HSC 개최	

一 HS開發研究團의 報告

1970年 關稅協力理事會는 유럽經濟委員會로 부터 關稅·貿易當局, 統計學者, 運送人, 保險業者, 生産業者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國際共通品目表(HS型品目表)의 制定可能性을 연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받음에 따라 HS開發研究團을 設置하게 되었다. 同研究團은 그 동안 調查研究 結果를 정리하여 HS의 制定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불가결하다는 요지의 暫定報告書를 37/38次 關稅協力理事會 總會(1971年 6월)에 제출하

였고, 이어 41/42次 關稅協力理事會 總會(일명 교토總會, 1973년 5월)에서 다음과 같은 最終報告書를 上程하였다. 이 報告書는 實務作業을 맡은 同研究團 소속의 品目分類 專門家「팀」이 작성한 것이다.

- (1) HS 制度의 制定은 可能할 뿐 아니라 國際貿易의 促進이라는 長期的 利益을 고려할 때 그 制定은 필요불가결하다.
- (2) HS 制度는 CCCN과 SITC Rev.2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品目表는 최근의 貿易條件을 고려해서 다소의 修正이 필요할 뿐 아니라 HS의 制定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CCCN의 상당 부분이 修正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HS 制度가 성립된 후에도 필요하다면 HS 制度도 修正될 수 있어야 한다.
- (3) BTN(CCCN의 前身)이 HS 制度의 핵심부분을 구성하여야 하며, 4單位의 分類體系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HS는 正式 協力(Convention)보다는 勸告(Recommendation)形式으로 채택하여 BTN의 보완적 商品分類「코드」로 발전시킴이 바람직하다.
- (4) 새로운 制度를 制定하는 過程에는 關稅·統計 및 運送分野의 필요를 충족시키던 종전 各種 個別品目表를 충분히 참고하여야 한다.
- (5) 이 制度는 關稅協力理事會의 주관하에서 制定되어야 하지만 國際機構 및 關聯團體가 그 작업기간동안 충분히 이해관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協約의 施行計劃에도 참고하여

그 의사를 반영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HS開發專門家團 新設

1971년 9월의 研究團會合에서 유럽經濟委員會에 의하여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類似作業과의 경합문제, 「텍스터」의 作成을 담당할 專門家團(T.T:Technical Team)과 이를 지휘할 監督團(SG:Steering Group)의 編成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문제 등을 討議하는 과정에서 이들 機構를 신설하자는 合議에 따라 專門家團과 監督團이 設置되었다.

同專門家團은 1973년 5월 HS委員會(HSC)와 技術作業班(Technical Team:HSC 보좌 실무「팀」)이 재편되기까지 HS制度的 실제적인 준비작업을 해 왔다.

一 本格的 HS開發着手

(1) HS委員會 設置

關稅協力理事會는 연구단 소속의 專門家團報告書를 承認하는 過程에 專門家團이 提示한 指針에 따라 HS「코드」를 制定할 것과 그 施行을 관장할 HS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결정하는 동시에 關稅協力理事會事務局내에 技術作業班(Technical Team)을 設置하여 HS委員會의 作業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특히 HS制度的 理念과 主要 目的이, ‘多目的’이기 때문에 많은 國家·國際機構 및 國家機構 등이 참여하도록 개방하였는데, 새로운 制度的 重要性이 광범하게 認識된 탓인지 60여개국 20여개이상의 國際機構·國家機構가 실제로 HS委員會와 技術·事務作業班에 참석하여 많은 제안을 하였고 의사표

시를 하였다. (表 3 참조)

< 表 3 > HS 參與國家 및 機構

區 分		參 加 成 員
國 家	회원	인디아·오스트레일리아·日本·카나다·英國·美國
	회원	알제리·필리핀·아르헨티나·이란·포르투갈·아일랜드·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리아·이스라엘·세네갈·방글라데시·이태리·싱가포르·벨지움·아이보리코스트·남아프리카·브라질·스페인·카메룬·케냐·수단·韓國·스위스·中共·마다가스카르·탄자리아·콜롬비아·말라위·泰國·쿠바·말레이시아·트리니다드토바고·체코슬라바키아·모리태니아·튀니지아·덴마크·멕시코·터키·에치오피아·모로코·우간다·핀란드·나이지리아·자이레·그리스·노르웨이·그레나다·파키스탄
政 府 間 國 際 機 構 (14)	회 원	關稅協力理事會 (CCC : 品目分類委員會) 關稅協力理事會 (CCC : 事務局) 유럽經濟委員會 (ECE) 유럽共同體 (EC)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ATT)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 UN 統計局 (UNSO)
	비 회 원	카리브해沿岸國共同體 (CARICOM) 亞細亞太平洋經濟社會理事會 (ESCAP) UN 食量 및 農業機構 (FAO) 國際關稅同盟 (BITD)

區 分		參 加 機 構
	비회원	國際올리브油委員會 (IOOC)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UN 貿易 및 開發會議 (UNCTAD)
民間 國際機構 (9)	회 원	유럽貿易振興機構 (ETPO) 國際航空運送協會 (IATA) 國際船舶協會 (ICS) 國際標準機構 (ISO) 國際鐵道聯盟 (UIC)
	비회원	유럽 펄프·종이 및 版紙產業聯合會 (CEPAC) 國際商工會議所 (ICC) 國際貨物輸送聯合會 (FIATA) 國際合成고무生產者機構 (HSRP)
國家機構 (2)		國際商業節次簡素化委員會 (SIMPRO FRANCE, 프랑스) 國際貿易節次簡素化委員會 (SITPRO, 英國)
其 (1)	他	世界貿易 分類體系를 위한 UNSO/SOEC 共同實務委員會

(2) HS의 制定과 世界性

HS 品目表는 「關稅協力理事會事務局에서의 同表草案作成」→「關稅協力理事會會員國과 HSC 「옵서버」國에의 配布」→「各國의 意見收斂」→「反映草案修正」→「HSC에의 提出」→「草案承認」

→「NC에의 檢討의뢰」→「NC의 檢討」→「HSC의 最終承認」
 →「合同會議의 最終決定」→「關稅協力理事會總會에의 提出 및 採擇」등 順으로 制定하고 HS協約으로 成立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制定過程에 HS의 多目的性 때문에 많은 國際機構, 國家機構 및 國家들이 正式會員 또는 「옵서버」로 동참하였을 뿐아니라, 各界의 「멤버」가 참여했다. 예를 들면 民間「레벨」에 있어서는 電算과 關聯한 問題는 IBM專門家, 鐵鋼業界的 「리더」格인 日本鐵鋼聯盟, 化學·製紙工業分野에는 美國·카나다의 民間技術者가 참여하였고, 또 關稅協力理事會事務局은 우편에 의하여 각 나라의 大學, 博物館 및 美術館의 專門家로부터도 의견을 수집·참조했다.

2. HS의 基本코드

一. 新商品코드 開發의 指針 HS개발연구단 작성

- ① 코드는 利用者에 있어서 ‘오퍼레이셔널’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伸縮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彈力性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
- ② 分類體系의 基本으로서 이미 상품 그룹별로 對應關係가 되어 있는 BTN/SITC를 채용하는 동시에 기타 기존의 分類 및 統計의 連續性도 배려할 것
- ③ 商品名稱은 기술적 特性만을 이용할 것
- ④ 新分類體系에는 世界的으로 보아 중요한 貿易商品을 전부 特揭할 것
- ⑤ 符號는 일정 단위수의 숫자로서 각 單位마다 그 그룹의 숫

자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도록 조성할 것

- ⑥ 新分類體系의 보완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완전한 알파벳순으로 색인표를 작성할 것
- ⑦ 신규의 商品 그룹을 分類體系 전체의 秩序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追加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 ⑧ 新分類體系는 手作業의 事務處理 및 電算處理 등의 機械作業 등 어느 곳이나 적합하도록 할 것

一 商品分類基準

- 當初 새로운 分類基準에 의한 品目表
- CCCN을 基礎

一 背番의 單位

- 4 單位 : 스위스, 오스트리아
- 6 單位 : EC
- 8 單位 : 美國, 캐나다
- 6.8 單位 : CCC 事務局 (2 개코드 開發推進)

一 觀告施行

- 4 單位 : 協約
- 5.6 單位 : 勸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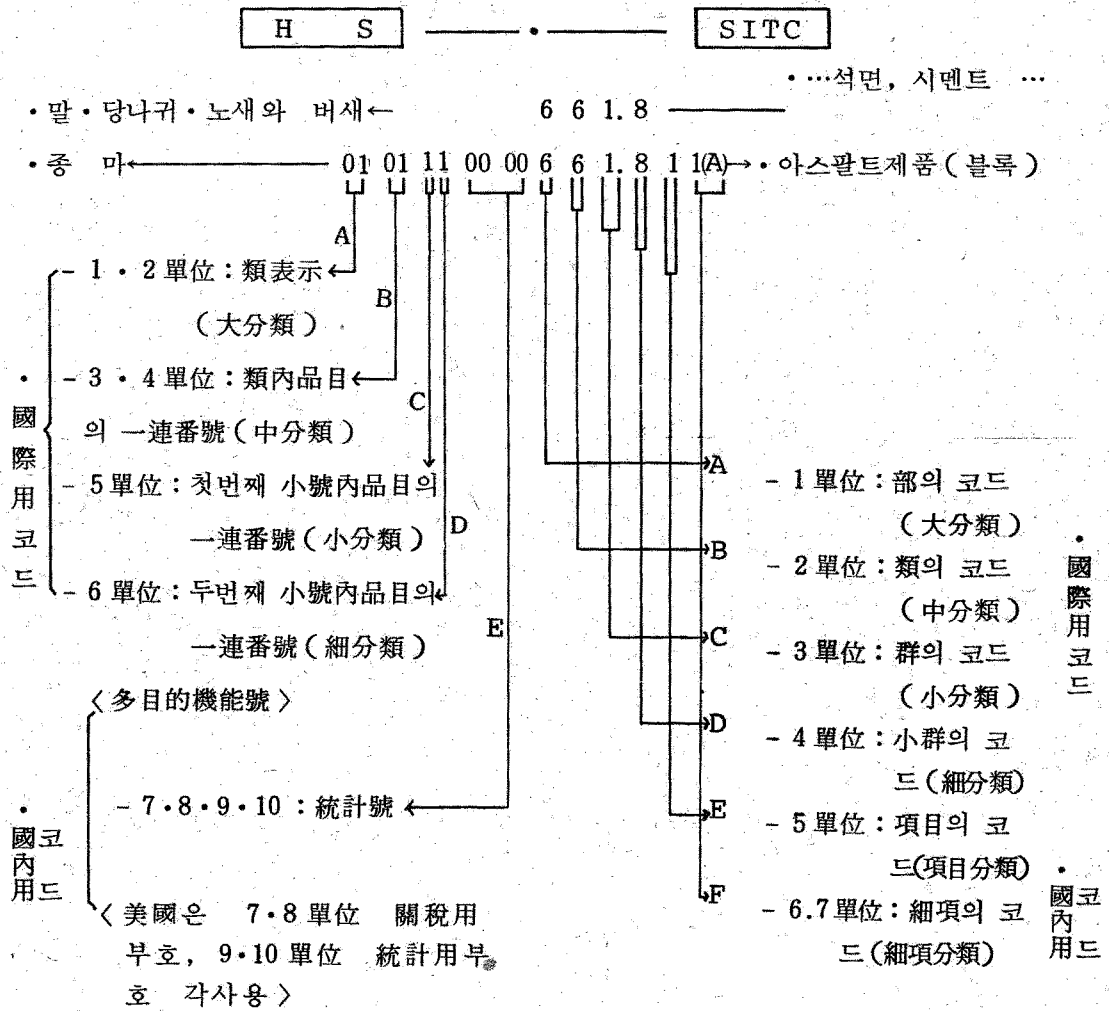
一 特掲品の 特색

- 輸出入額이 700 萬 US \$ 이상인 품목과
- 貿易額이 700 萬 US \$ 이하인 경우라도 國際的 流通에 있어서 重要性이 인정되는 貿易商品

- CCCN의 補助號에 제기된 品目
- 그 이외에 現존하는 他品目表上상품의 分布圖를 참고
- 地域間 상품의 均衡을 고려

一 背番의 意味

背番比較



3. 品目の配列

一 垂直的 배열

部→類(2單位)→號(3・4單位)→小號(5・6單位)

一 水平配列

- 部(1~21部)(例: 15部<卑金屬과 그제품>→16部<기계・차량>)
- 類(1~97類)(例: 1類<산動物>→41類<動物의 가죽>→64類<가죽신발>)
- 節
- 號(例: 5101號<羊毛>→5107號<絲>→5111號<織物>)

第3章 HS制定의 基本原則과 分類基準

1. 基本原則

— CCCN의 3대 기본원칙

- (1) 單純性 : 國際的으로 正當한 절차를 거친 公인된 用語 (Term) 와 言語 (Language) 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國際貿易關係者가 쉽게 內容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精密性 : 모든 物品이 가장 적정한 號 (Heading) 에 分類하도록 한다.
- (3) 適用上의 客觀性 : CCCN 을 基礎로 한 各國의 關稅率表上 品 目的 分類를 국제적으로 통일한다.

HS 또한 CCCN 과 SITC 를 母體로 하여 元활한 국제무역의 진작, 貿易統計의 蒐集·比較·分析을 쉽게 하고, 國際交涉에 필요한 精確하고 比較가능한 '데이터' 의 蒐集을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서 商業目的의 品目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定한다.

— HS의 2대 기본原則

- (1) 簡單·簡明性—用語는 가능한 한 簡單하고 簡明하여야 한다. 따라서 國際的으로 인정되는 技術用語 이외에는 技術用語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特정한 나라에만 통용되는 用語는 모두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6단위 小號의 표현은 그 표현만 보면 利用者의 누구라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2. 分類基準의 例

— 第 84 類의 品目分類體系

X y	0	1	2	3	4	5	6	7	8	9
0		원자로, 동위원소분리기	증기발생 보일러	중앙난방용 보일러	보일러용의 부속기기, 증기원동기 응용속기	가스발생기	증기터빈	대연기관 (피스톤식 부품정화식)	내연기관 (피스톤식 압축정화식)	8407 8408 g의부분품 (E)
10	수차, 수력 터빈 (A)	터보젯트, 터보프로펠라 가스터빈	반동엔진, 공기, 원동기	펌프 액체 PLV	기본펌프, 압축기	에어콘	로용바이나 메이커리온 본	냉장고, 냉동차	가열조리	
20	광택로울러 (금속유리 용은제의)	원심분리기 여과기	병용기, 증진포장기	추광속정기 (50 mg 이내제의)	살포, 분사	원치호이스 포착기	크레인, 스택트래블캐리어	지게차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블도저, 스키프래, 패스카메이터
30	제설기, 말뚝박는기계	8425 8430 의부분품	농원예용 디스크하로 우 비포살포기	탈곡기, 수확기	착육, 낙농기계	포도주, 사과주용, 폐쇄기	영업용기계 가금사육기 기타의 농업용기계	국물분류제	식품공업	필프기계
40	계본기 (B)	지의가공기	식자용기기	인쇄기	인조섬유 방사기	방진준비 기계, 방적기, 편사기 등	직조기	편물레이스 제조기	8444 8447 의 제조기	벨트제조기
50	세탁기	적물처리장	제분기	가죽·유연 처리기, 가죽제품제조기	편로, 태이틀양꽃용 주형과 주조기	금속압연기	가공공작기계 (전자빔 및 초음파 이용)	머시닝센터	신반	드림링반, 불링반등
60	연삭기, 호닝	기어절삭기 절단기	금속가공기계 (단조기 행버링등)	가공기계 (도로우벤 치, 나사전조기 등)	석, 도자기 가공기계, 유리의 냉간가공기	가공기계 (목재, 플라스틱, 고무)	8456 8466 의 부분품 (E)	주지식공구 (비천기식 압축공기식)	용접기기, 납땀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70	계산기, 금전등록기	컴퓨터	기타사무기기 (주화분류기, 등사기)	8469-8472 의 부분품 (E)	광물성 재료의 신질 파괴 혼합기	전구, 진지판, 유리열가공기	자동판매기	가공제조기 고부, 프라스터	연조제조기	열케어의 기계 (케이틀링조기등) (E)
80	주행틀, 주행형	관펄, 벨브	베어링	진동속 크랭크, 변속기	가스켓트린 결과	기계류의 부품 (기타 ...) (E)				

讀圖法: 座標式 [先(Y), 後(X)]
 例: 인체기 → 제 8443 호
 解: 8400 + 40 (Y) + 3 (X)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등별 • C: 범용성
 • B: 용도 (산업) 별 • D: 기타
 • E: 부분품

하였다.

- (2) 正確性—용어의 定義와 單位가 명확한 것이 國際的 혹은 貿易關係者 상호간의 분류의 不統一을 막는데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 解説

機械類를 포함하는 제 16 부 제 84 류는 다른 2개 이상의 분류 기준을 혼합하고 있는데 前段(8401, 8424 호)은 機能(圖 A 그룹)을 中(上)段(8425 ~ 8478 및 8480 호)은 用途(表 B 그룹)를 中(下)段(8481 ~ 8484 호)은 범용성(圖 C 그룹)을 각 分類基準으로 정하여 배열하고, 後段(8478 호)은 기타 기계(圖 D 그룹)가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品目分類基準의 복잡한 혼합은 HS의 다른 類에서는 볼 수 없는 特例事項에 해당한다. 한편 부분품은 同類內 5개처(8409·8431·8466·8473·8485)에 분산·배열하고 있다.

「84 類」는 86개의 4單位 號로 구성되었는데 분류체계는 위 圖의 같다.

3. 第 2710 號와 第 77 類

- 基本號만으로 구성된 「第 2710 號」
- 表題없는 「第 77 類」

第 4 章 CCCN의 改編과 HS

1. 概 觀

HS의 구성과 CCCN의 개편내용을 綜合, 검토해 보면 CCCN의 改編方向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壓縮할 수 있다.

(1) CCCN分類體系 再定立의 관점에서 개편하여 新共通品目表를 작성한다.

〈예〉 가. 通則 (GRI) : 현행 通則 4개 項에서 6개 項으로 追加

나. 註 (Note) : 해설서상 규정을 部類의 註로, 類註를 部註로 규정

다. 類 : 號 品目の 통합·분할에 따른 類의 정의와 범주를 수정

라. 號 : 多用途를 위하여 6單位 細分 小號 新設 및 號 品目の 統合·分割

마. SITC와의 相關性 : SITC品目과의 연계를 위한 CCCN의 補助號

(4단위外 알파벳 문자부호)를 主된 小號(5~6단위)에 收用

(2) 分類의 간편화·단순화의 관점에서 개편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多目的 共通品目表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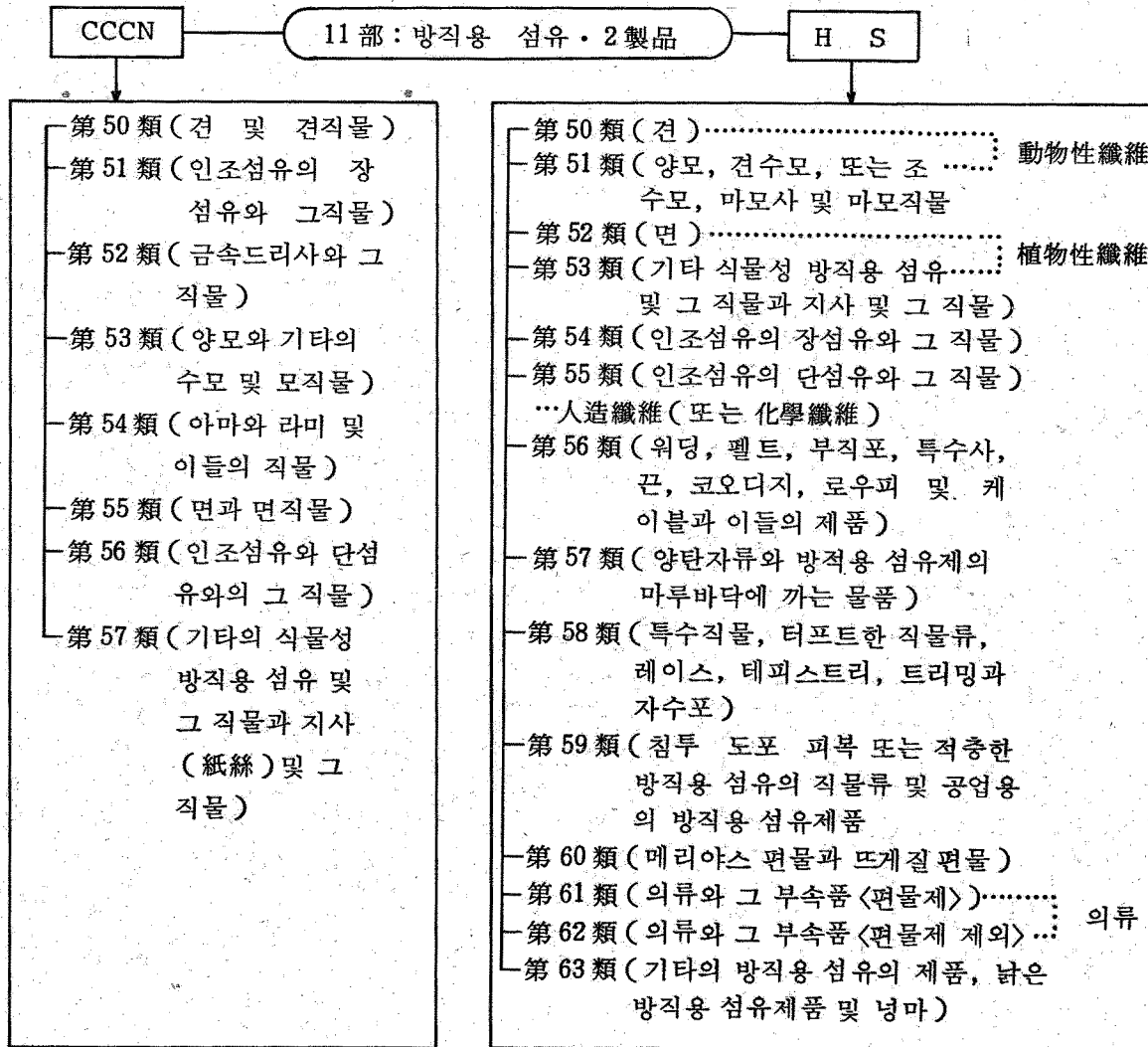
〈예〉 가. 解說書 내용의 號에의 移記 등으로 號 內容의 速見

나. 신규 개발상품등 主要貿易商品의 특개
다. 分類의 容易度 提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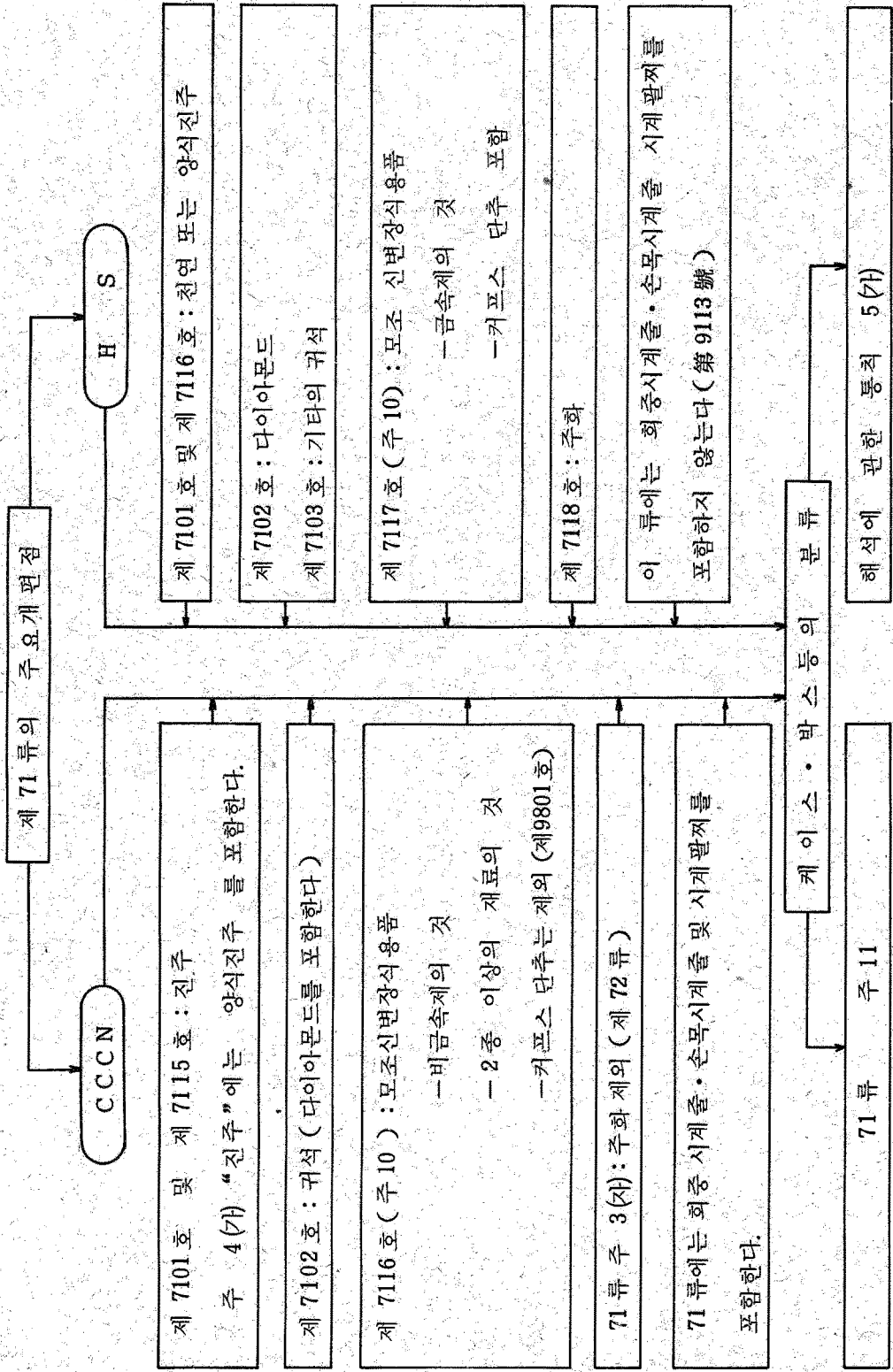
CCCN과 HS分類體系 (1)

C C C N		H S			
大 分 類	中 分 類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細 分 類
21個 Section <部> Section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99個 Chapter <類> Chapter 1 (산동물) Chapter 2 (육과 식용 설육) Chapter 5 (따로 계기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21個 Section <部> Section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97個 Chapter <類> Chapter 1 (산동물) Chapter 2 (육과 식용 설육) Chapter 5 (따로 계기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1011個 Heading <號> 4單位 0101 (산) ⑥ 0106 (기타의 산동물) 0201 (육과 식용설육) ⑥ 0206 (따로 계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0501 (인발과 그 웨 이스트) ⑫ 0515 (따로 계기한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5,019個 Subheading <小號> 6單位 0101.11 (종마) 0101.19 (기타) 당나귀 노새와 머세 0101.20 0201.10 도체와 이분 도체 0201.20 기타뼈체로 절단한것 0201.30 뼈없는 것 0210 (육과 식용설육) 0501 인발과 그 웨이스트 [0501.00] ⑬ 0511 (따로 계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⑭
Section 21	Chapter 99	Section 21	Chapter 97	Heading 9706	Sub-Heading 9706.00
			<77 類 空號>		

纖維品目體系의 變更 (2)



第 71 類의 개 편 (3)



2. 多目的 品目表 定立觀點에서의 改編

가. 통칙 (GRI) 규정의 追加新設

— 新設 (2 개 항)

- ① 제 5 항 「 케이스 · 포장容器類의 分類規定 」
- ② 제 6 항 「 小號의 分類規定 」

— 단서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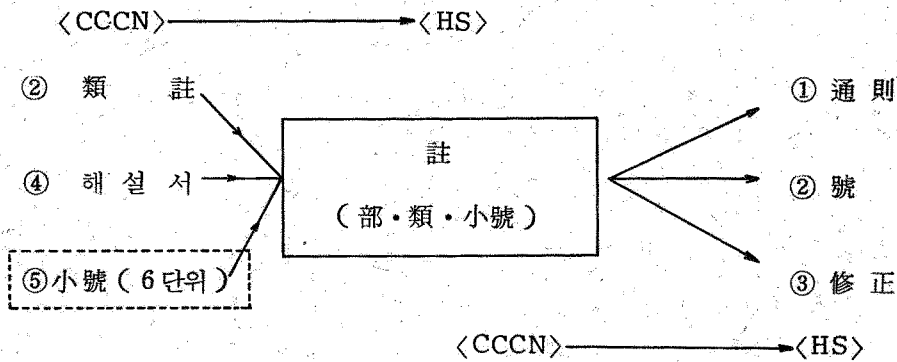
- ① 第 3 項 가 단서 「 狹義品名表現의 同一看做 」

— 용어변경

- ① Imported → Presented 등

나. 註 (Notes) 규정의 調整新設

CCCN의 註 변경



<예>

CCCN의 解説書 → HS의 註

C C C N		H S	
所 屬	해 설 서 내 용	所 屬	註 內 容
84類 (8453號)	이 號에는 자동자료처리 리기계와 결합되었거나	84類주 5-나-	제 8471 호에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되었거나 연결

C C C N		H S	
所 屬	해 설 서 내 용	所 屬	註 內 容
	(이하 右의 HS 註와 同一)	(2)	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계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거나 만약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여타 호에 분류한다.

다. 號(Heading)의 再編

— 기본코드 4單位에서 6單位 擴大

HS와 CCCN의 比較

CCCN	HS	品 名	CCCN	HS	品 名
0101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0104	0104	면양과 산양
		—말		0104.10	—면양
		—종마		0104.20	—산양
	0101.11	—기타	0105	0105	가금류(닭<갈루스 도메터커스종의 것> 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1.19	—당나귀·노새와 버새			
	0101.20	소(물소를 포함한 다)			
0102	0102	소(물소를 포함한 다)			
	0102.10	—종우			
	0102.90				—1마리의 중량이

CCCN	HS	品名	CCCN	H S	品名	
0103	0102.90	-기타	0106		185그램 이하의	
	0103	돼지			것	
	0103.10	-종돈			0105.11	--닭(갈루스도
		-기타				메스커스종의것)
	0103.91	--1마리의중량이			0105.19	--기타
	50킬로그램미만		-기타			
	의것	0105.91	--닭(갈루스도			
0103.92	--1마리의중량이		메스커스종의것)			
	50킬로그램이상		99	--기타		
	의것		0106.00	기타의산동물		

- CCCN補助號에 背番(6단위)부여

CCCN 과 SITC 의 品目간 連繫 및 小號賦與

CCCN	품명	SITC	HS
0102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2]
	A. 종우	001.11	0102.10
	B. 기타	001.19	0102.90
0104	면양과 산양		[0104]
	A. 면양	001.21	0104.10
	B. 산양	001.22	0104.20

－ 號 (Heading) 의 調整

- ① 號의 追加
- ② 號의 分割
- ③ 號의 統合
- ④ 號의 移轉
- ⑤ 號의 削除 또는 留保
- ⑥ 類 (Chapter) 內에서 號 再編

3. 分類의 簡便化·單純化 觀點에서의 改編

가. 解說書上 內容→通則·註·號에의 移記

< 例 > 解説書 內容-號의 本文에 反映

C C C N		H S	
所 屬	解 說 書	所 屬	本 文
13 부 69 류 6907 號	6907 : 포장용과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포함한다. (1) (2) (3) 모자이크 큐브	6907 號 6908 號	舖裝用, 爐用·벽用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 // (유약을 시공한 것...)
9203 號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機器, 온도계... (A)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浮秤	9025 號	액체, 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Floating) 측정기 : ...

나. 新規 開發商品 等 主要 貿易商品의 特揭

近年의 技術進步과 貿易構造의 變化에 對應한 商品分類의 改善例

○ 技術의 進步에 對應한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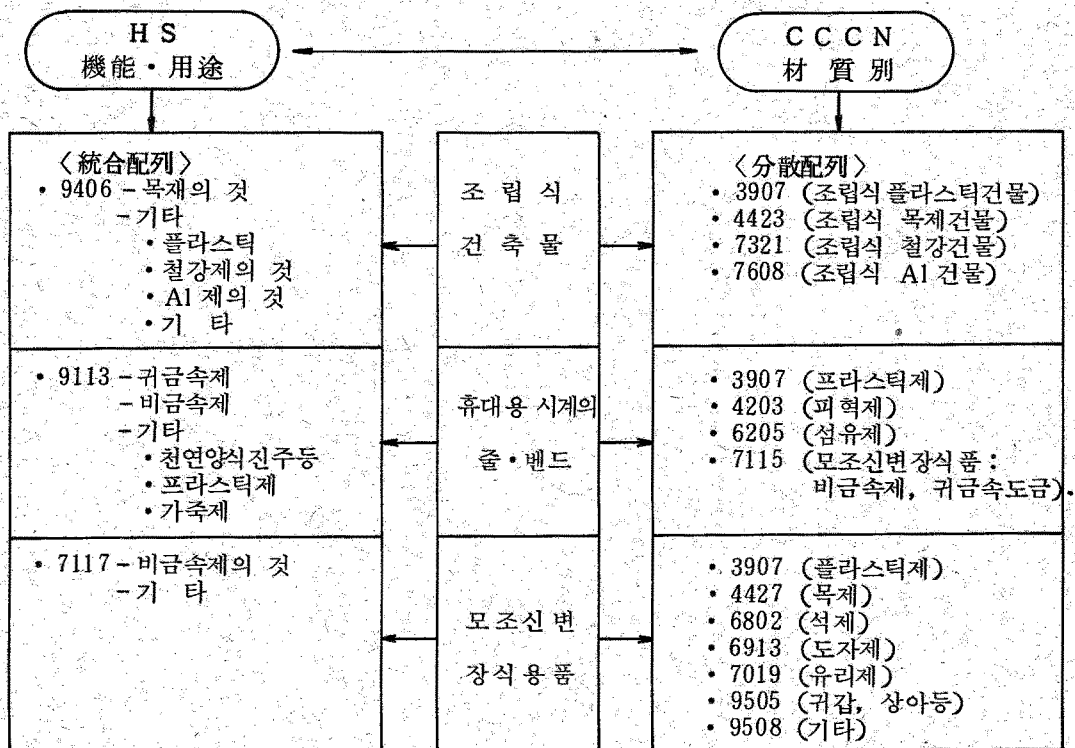
品目例	CCCN 分類	HS 分類
光화이버 等	品目이 特揭되어 있지 않기때문 材質等에 의해 分類하고 있다. 유 리 類 : <u>70.18</u> (光學유리等) 프라스틱類 : <u>90.01</u> (光學用品等)	品目を 特揭하고, 分類의 明確化 를 도모하고 있다. <u>8544.70</u> (光화이버케이블) <u>9001.10</u> (光화이버等)
人工衛星, 로켓 等	品目이 特揭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가장 類似한 物品에 該當하는 號에 類하고 있다. <u>88.02</u> (飛行機, 滑空機, 연 및 비로트슈트)	品目を 特揭하고, 分類의 明確化 을 도모하고 있다. <u>8802.50</u> (우주비행체 및 그 발 사용 로켓)
同位元素 分離用機 器	品目이 特揭되어있지 않기 때문 에, 機能別로 分類하고 있다. <u>84.17</u> (溫度變化에 따라 材料을 처리하는 機械) <u>84.18</u> (遠心分離機等) <u>85.22</u> (電氣機器)	品目を 特揭하고 一括分類하기로 한다. <u>8401.20</u> (同位元素 分離用機器)

○ 貿易構造의 變化에 對應한 改善

品目例	CCCN 分類	HS 分類
플라스틱 : 素材 (塊, 粒等) 半製品 (板, 管等)	39.01~39.06 (플라스틱) →	{ 39.01~39.14 (素材-化學構造別) 6 桁品目數 : 55 39.15~39.21 (설及 및 半製品-形狀別) 6 桁品目數 : 47
製品 (食卓用品等)	39.07 (플라스틱製品) →	

다. 分類容易度 提高

<例> 機能同一商品群의 統合



4. HS의 主要 變更部分

〈 整 理 〉

品目表의 主要改正・變更部分

區 分	所 屬	內 容
① 定義明確을 위하여 신설 한 註 - 科學技術의 進歩副應 - 무역구조變 化에 따른 재편성	1 類 註 2	냉동건조의 정의
	30 類 註 3	피임약 화학조제품
	33 類 註 3	콘택트렌즈 또는 義眼用的 夜
	39 類 註 4	共重合物の 정의
	39 類 註 5	화학적으로 변성한 重合物の 정의
	11 部 小號 註 1	彈性絲의 정의
	11 部 註 12 11 部 註 1(사)	폴리아미드에 아라미드를 포함 탄소섬유 및 그 제품은 6815 號에 분류
② 類編屬 號 의 擴大 - 무역구조의 變化 반영	7 類	신선·냉장한 채소 (0701 호에서 9 개호로)
	15 類	식물성유지 (1507 호 1 개호에서 9 개호로)
	26 類	金屬鑛 (2601 호 1 개호에서 17 개호로)
	39 類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은 6815 號에 분류
	50 ~ 63 類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類의 배열변경 - 動物性→植物性→인조섬유 등)
	72.73 類	철강 및 그 제품 (72 류 - 素材 半제품 → 73 류 - 製品으로 區分

區 分	所 屬	內 容
	< 註 >	
③ 新規商品의	4類 註2	「밀크」의 범위 축소
特掲 및 定	22類 註3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분류에
義의 明確化		관한 定義 (0.5% 기준)
— 科學의 發達	56類 註1	섬유탄성 加工劑
出現新規商品	28類 註6	방사선원소 및 동위원소의 범위 명확화
의 반영	30類 註2	血液응고저지제
	42類 註2	손잡이가 있는 가방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號 · 小號 >	
	1515.10	호호버油
	2403	제조담배 代用物
	2933	핵산과 그 염
	2936	비타민 B ₃ , B ₅ , E 및 그 유도체
	3006.60	피임용 화학조제품
	3307	부직포 등에 침투 도포하거나 피부한 것 < 香水 등 >
	3701 및 3702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807	섬유완성 加工劑
	4906	肉筆冊字 (hand written Text) (……CCCN 에서 사용된 手製文書 (manuscript) 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므로 대체)

區 分	所 屬	內 容
	8401	원자로, 동위원소 분리기용 기기
	8417	소각로
	8457	머시닝센터 등
	8802	우주비행체 (인공위성 등) 로켓
	8544.70	광섬유케이블
	9001.10	光섬유
	8515	초음파 용접기 (CCCN 8459)
	9001.30	콘택트렌즈
	9010.9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자동현상기
	3918	바닥 깔개, 벽피복材 (주요 특제품)
	3924	식탁·주방용품 및 기타 家庭用品 (//)
	3925	창문 등 건축용품 (//)
	4002.70	에틸렌, 프로필렌, EPOM
④ 商品概念의 變化에 따른 再編	8403	증양난방보일러 (CCCN 7337 → 8403)
	8426	크레인트럭, 스트레들캐리어 (CCCN 8707 → 8426)
	8427	포크리프트 트럭 (CCCN 8707 → 8427)
— 類所屬移轉	8427	권양하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 (CCCN 8714 → 8427)
⑤ 併列掲記品 目を單獨號 로 분리 特掲	7008	絶録用 복층유지 (유리의 복층절연유니트) (위 물품은 CCCN 7007의 경우「가공을 한것, 레드드 라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區 分	所 屬	內 容
	7102	<p>유리」등과 併列 계기되어 있음)</p> <p>다이아몬드</p> <p>(위 물품은 1개 CCCN 7102의 모든 貴石과 半貴石에 포함·분류되었던 것을 HS 7102는 다이아몬드, 7103은 귀석·반귀석으로 분리했음)</p>
	9203	<p>건 반식 오르간 (9208의 오르간과의 구분을 위하여 明示)</p>

第 5 章 HS 의 協約

1. 協約의 構成

- CCCN : 前文, 本文 (20 個條), 附屬書 및 改正議定書
- HHS : 前文, 本文 (16 個條), 附屬書 및 개정의정서

HS 協約의 構成

構 成	內 容
前(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의 目的
	<p>제 1 조 : 용어의 정의 (DEFINITION)</p> <p>제 2 조 : 부속서 (THE ANNEX)</p> <p>제 3 조 : 계약국의 의무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p> <p>제 4 조 : 개도국에 대한 부분적 적용 (PARTIAL APPLICATION BY DEVELOPING COUNTRIES)</p> <p>제 5 조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p> <p>제 6 조 : HS 위원회 : H.S.C(HARMONIZED SYSTEM COMMITTEE)</p> <p>제 7 조 : 위원회의 기능 (FUNCTIONS OF THE COMMITTEE)</p> <p>제 8 조 : 이사회 의 역할 (ROLE OF THE COUNCIL)</p> <p>제 9 조 : 관세율 (RATES OF CUSTOMS DUTY)</p> <p>제 10 조 : 분쟁의 해결 (SETTLEMENT OF DISPUTES)</p>

構 成	內 容
	<p>제 11 조 : 체약국의 자격 (ELIGIBILITY TO BECOME A CONTRACTING PARTY)</p> <p>제 12 조 : 체약국 가입절차 (PROCEDURE FOR BECOMING A CONTRACTING PARTY)</p> <p>제 13 조 : 효력의 발생시기 (ENTRY INTO FORCE)</p> <p>제 14 조 : 속령에 대한 적용 (APPLICATION BY DEPENDENT TERRITORIES)</p> <p>제 15 조 : 탈퇴 (DENUNCIATION)</p> <p>제 16 조 : 수정절차 (AMENDMENT PROCEDURE)</p> <p>제 17 조 : HS에 대한 체약국의 권리 (RIGHTS OF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THE HARMONIZED SYSTEM)</p> <p>제 18 조 : 유보 (RESERVATIONS)</p> <p>제 19 조 : 사무총장의 통지 (NOTIFICATIONS BY THE SECRETARY GENERAL)</p> <p>제 20 조 : UN에 등록 (REGIST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p>
附屬書	품목표 (HS Nomenclature)

2. 締約國의 義務

- HS 코드의 확대 금지
- HS 코드의 축소 금지

3. HS委員會와 잠정 HS委員會

- 2 個의 HS委員會
- 잠정 HS委員會

4. HS의 發効

- 施行計劃

- 1985. 1
- 1987. 1
- 1988. 1

- 1988. 1 實施確保 (1986.6. CCC 총회) ... 협약상 發効규정 수정

- 당 초 : 「 3개월을 초과하는 1월 1일 (즉, 1988년 1월 1일부터) 」
- 수 정 : 「 12개월을 초과하고 24개월 이내에 속하는 1월 1일 」

- 發効

- 要件 : 17 個國 이상 1988. 9월까지 署名, 批進書 기탁
- 加入현황

年 月 別 加 入 國 家 (經 濟 同 盟 포 함)

구분 연도	국 가 (일 자)	국 가 (일 자)	국 가 (일 자)	국 가 (일 자)	계
1985	Jordan (6/10)	Mauritius (6/10)	SWaziland (11/26)	Lesotho (6/10)	4
1986	India (6/23)	Zimbabwe (11/5)	Czechoslovakia(12/9)	Zambia (12/22)	4
1-9	Botswana (2/13)	Japan (6/22)	Israel (8/5)	Norway (8/23)	21
	Yugoslavia(9/10)	Australia (9/22)	Austria (9/22)	Bangladesh (9/22)	
	Belgium (9/22)	EEC (")	Netherlands (")	New Zealand (")	
	Pakistan (")	Sweden (")	Switzerland (")	United Kingdom(")	
	Denmark (")	Finland (")	France (")	Germany(F.R) (")	
	Spain (9/28)				
	Iceland (10/28)	Tunisia (10/28)	Portugal (11/4)	Zaire (11/10)	
	S.Africa (11/25)	Korea (11/29)	Canada (12/14)	Malasia (12/15)	
	IRELAND (12/22)	Madagascar(12/22)	Saudi Arabia (3/10)	Nigeria (3/15)	
1988	Srilanka (5/3)	Cameroon (5/16)			4

※ 資 料 : CCC Doc. 34.831E(1988.7.25)

第4部

HS의 品目分類

第1章 HS의 3大構成要素

1. 3大構成要素
2. 通則(GRI)
3. 註(Note)
4. 號(Heading)

第2章 HS상 通則

1. 通則의 骨格
2. 通則의 適用要領

第3章 註(Note)

1. 註의 形態
2. 定義 規定의 類型 例
3. 競合品目の 附屬明示
4. 品目分類原則

第1章 HS의 3大構成要素

1. 3大構成要素

- 해석에 관한 通則 (GRI)
- 註 (Note)
- 號 (Heading)

2. 通則 (GRI)

- 定 義

品目表 解釋에 관한 通則 (GRI: 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Nomenclature: 이하 GRI 라 한다) 은 HS 品目表의 머리에 게재, 品目表의 전체에 통용되는 分類指針을 규정한 것으로 어떠한 品目 (商品) 도 品目表上 오직 하나의 號에 分類 적용되어야 하고 分類 가능한 다른 號에 중복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機能이다.

하나의 物品은 品目表上 하나의 號 (1개 處) 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一意性的 原則이라 한다. HS (CCCN도 마찬가지) 의 경우, 一意性的 原則을 보장하기 위하여 GRI 를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法的拘束力이 있다.

- 特 色

- 一意성을 위한 分類指針
- 通則의 可變性

- 非論理的 分類原則 채택

3. 註 (Note)

一 定 義

이들 註는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號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一意性分類의 原則에 따라 (CCCN도 마찬가지) 品目表上 用語의 定義와 部·類·節·號(小號포함)의 精確한 범위와 限界를 규정하고 있는것을 말한다(어떤 註는 註 관련 用語의 定義와 限界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이 註는 HS協約에 가입한 모든 締約 當事國들에게 法的拘束力을 가지므로 法力이 없는 HS解說書 및 HS品目分類意見書와 구별하여 특히 註의 경우「法註」(Legal Note)라 부른다.

4. 號 (Heading)

一 定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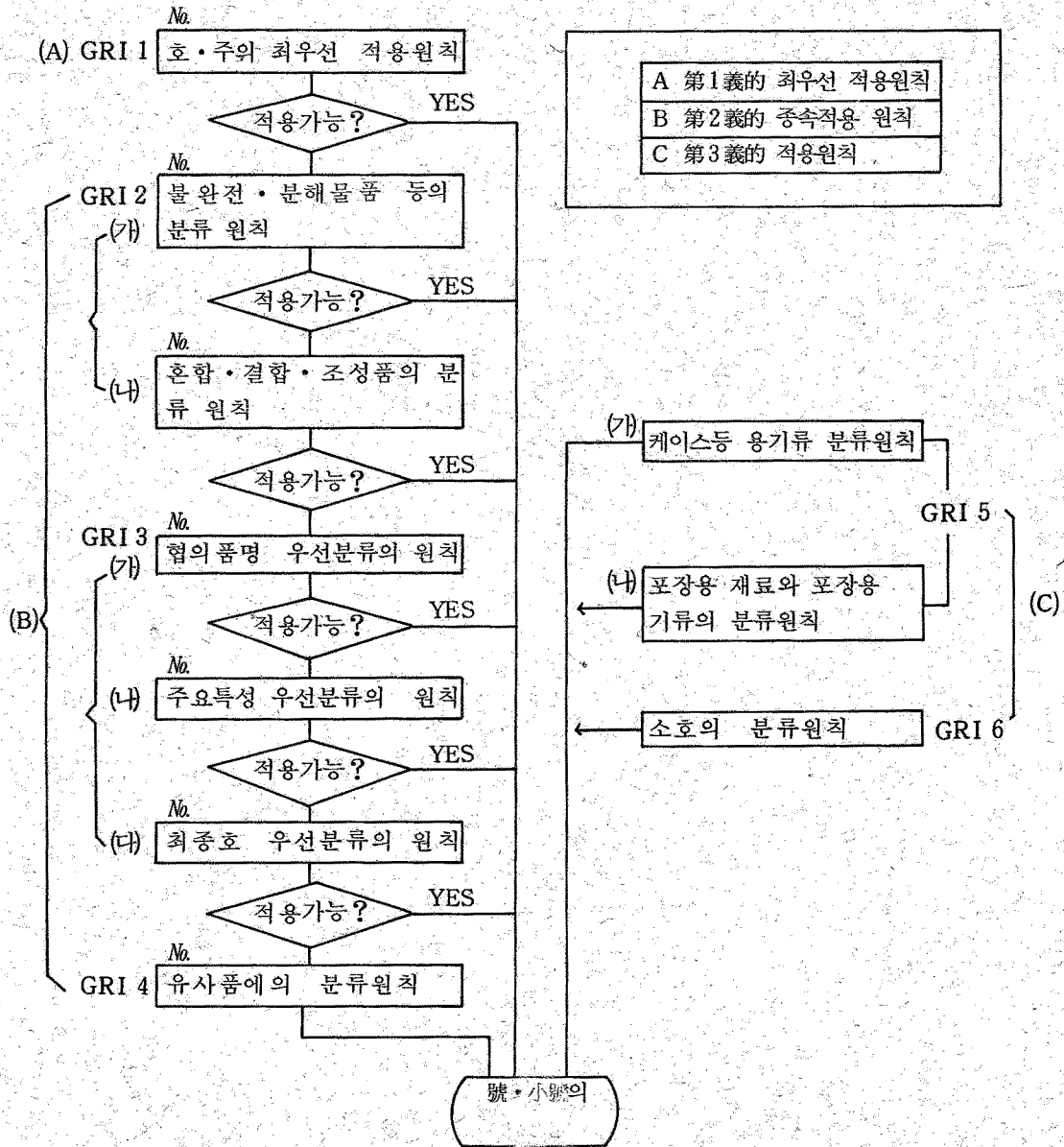
號·小號 (Sub - Heading) 背番이란

HS는 CCCN의 分類基準에 따라 同種·類似商品끼리 체계적으로 배열한 品目の 리스트에 4單位 (例: 0101), 또는 6單位 (例: 0101.11)의 數字符號를 부여하고 있다. 品目に 붙여진 숫자부호를 ‘背番’이라 일컫는다. 이 경우, 4單位의 背番을 號 (Heading)라 부르고, 6單位의 背番을 小號 (Sub - Heading)라 호칭한다. 그러나 號, 小號는 4單位 또는 6單位 背番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背番과 品目名(品名)의 結合(4 or 6 digit descriptors or heading) 形態를 뜻한다(例: 4單位수준에서의 號란 「텔레비전 수상기」, 6單位 수준에서의 小號란 「8528.10 :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 「8528.20 : 흑백텔레비전 수상기」, 즉 背番 8528 과 品目名 TV의 結合體 등)

第 2 章 HS 상 通則

1. 通則의 骨格



2. 通則의 適用要領

〈通則 1〉 通則 1은 다음과 같다.

이 表의 部·類 및 節의 表題는 오로지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法的인 目的上의 品目分類는 各部 各類 各番號 (이하 “號”라 한다)의 用語 및 關聯部 또는 類의 主에 의하여 決定하되 이러한 各號 또는 註에서 따로 規定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通則 第2號 내지 第6號에서 規定하는 바에 따라 決定한다.

通則 1의 첫째귀절은 部, 類, 節의 表題는 단지 參照를 위한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表題는 品目分類에 있어서 法的 拘束力이 없다.

예를 들면

第15部の 表題는 “卑金屬 및 卑金屬製”品이지만 卑金屬 製品中에는 다른 部에 分類되는 것이 아주 많다. 즉 第16部에 屬하는 第84類의 각종 機械類나 第85類의 전기 기기들은 거의가 卑金屬 製品인 것이며 第17部에 屬하는 各種 車輛이나 航空機·船舶 또한 마찬가지다.

第62類의 表題는 “衣類와 그 附屬品(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편물의 것을 除外한다)”이지만 사실상 第62.12號에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편물한 特定物品이 分類된다.

그러나, 品目分類上 法的拘束力을 갖지 않은 것은 오직 表題인 것

이며 部, 類와 節 그 自體는 法的地位를 가진 다는 事失을 注意해야 한다.

類註에서 흔히 部나 類에 屬하는 品目全體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第15 部の 註1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1. 이 部에서는 다음의 것을 除外한다.

마. 第71 類의 物品……………

바. 第16 部の 物品……………

차. 第94 類의 物品……………

通則1은 이에 계속하여 品目分類를 決定하는 基準을 適用할 順序를 規定하고 있다.

즉 通則1의 두번째 部分에 의하면 品目分類는 우선 各號의 用語 및 이에 關聯되는 部나 類의 註에 따른다.

여기서 號라 함은 4單位 號뿐 아니라 2以下 單位로 特揭된 號를 包含한다.

이는 自명한 原則으로서 이에 따라 많은 物品을 分類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말 (live horse)은 第0101 號에 掲載되어 있다.

또한 냉장살구는 第0808 號로 分類되는데 왜냐하면 이 號의 用語는 “신선한 살구”로 되어 있고 第8 類 註2에는 “냉장한 果實과 견과類는 신선한 것이 該當하는 號에 分類한다.”고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通則 2 (前文)〉이 通則 前文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이 通則 第 1 號에 의하여 品目分類를 決定할 수 없는 것
에 대하여는 다음에 定하는 바에 따른다.

〈通則 2. 가〉

各 號에 掲기된 物品에는 不完全 또는 未完成의 物品이 제
시된 상태에서 完全 또는 完成된 物品의 本質적인 特性을 지
니고 있으면 그 不完全 또는 未完成의 物品이 包含되는 것
으로 보며 이 경우 未組立 또는 分解된 狀態로 제시된 物
品이 있는 때에는 完全 또는 完成된 物品 (이 通則에 의하
여 完全 또는 完成된 것으로 分類되는 物品을 包含한다) 에
包含되는 것으로 본다.

通則 2. 가는 號의 用語의 範圍를 擴大시킨다.

即 未完成, 不完全한 物品 또는 未組立 分解된 상태로 提示된 物
品の 경우에도 그것을 完成品 完全品이나 組立品 : 未분해품으로 看
做하여 그 完成品 등이 분류되는 號에 이들 未完成品 등을 分類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通則은 다음 두가지 部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部分은 不完全 또는 未完成 物品도 完成物品으로 取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原則은 未完成, 不完全한 狀態에 있는 物品이 完全 또는 完
成品의 主要 特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條件을 갖추었을 境遇

에만 適用할 수 있다.

이 “本質的인 特性”의 概念은 後述하는 通則 3 나에서도 問題가 되는 重要的 論點인데 이를 一意的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그 基準을 定議해 본다.

즉 어떤 不完全·未完成物品이 完全·完成品の 本質的인 特性을 갖추었는지를 判別할 때에는

- ① 이를 구성하는 材料·要素의 부피·量·重量·價格과
- ② 完全·完成品の 機能 용도와 關聯한 그 구성하는 材料·要素의 役割을 考慮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實務的으로 從來에는 Frame 이나 重要機能部分의 存在여부를 基準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價格構成比率을 重要的 參考資料로 하기도 하였다.

HS 해설서에 例示된 事例들을 보면 이중 價格構成比가 매우 重要的 考慮要素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關稅率素上 品目分類가 規定된다.

이 規定은 商品들이 包裝, 取扱, 輸送의 必要에 의하여 未組立 또는 分解된 狀態로 去來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考慮한 것이다.

이 通則에서 “未組立 또는 分解된 狀態로 提示된 物品”이라 함은 單純히 固定시키는 裝置 (나사, 너트 및 볼트등) 에 의하거나 또는 리벳팅·용접에 의하여 해당 完成品の 構成要素가 組立되는 것을 말하며 다만 該當組立은 간단한 組立으로서 조작만을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그리고 輸入後 즉시 組立되는 것이어야 한다.

부피가 크거나 깨지기 쉬운 物品 (예를 들면 bridges, lamps, 照

明器具, 組立式 建物 等)은 종종 未組立 또는 分解된 狀態로 提示되는데 이러한 物品을 組立된 物品과 달리 取扱할 수는 없을 것이다.

〈 通 則 2 나 〉

各號에 제기된 特정한 材料 또는 物質에는 該當 材料 또는 物質에 다른재료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物品을 포함하고, 特정한 材料 또는 物質로 조성된 物品에는 該當 材料 또는 物質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성된 物品을 포함하며, 2종 이상의 材料 또는 物質로 조성된 物品은 이 通則 第 3號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現實적으로 去來되는 物品은 製品의 경우는 물론 原材料의 경우에도 純粹·單一한 物質·材料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다.

通則 2 나 는 材料나 物質의 混合物, 複合物 및 2種 以上の 材料 또는 物質로 構成된 物品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어떤 號가 하나의 材料나 物質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物質이나 材料가 다른 物質 또는 材料와 混合되거나 結合된 境遇를 包含한다. 예를 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添加된 우유도 우유로 分類한다.

또한 特定材料 또는 物質로 構成된 物品을 包含하는 號는 全體가 特定材料나 物質로 構成되지 않은 物品에도 適用한다.

예를 들면 파라핀으로 덮힌 코르크도 45.03號 (天然코르크製品)로 分類한다.

이 通則은 號와 部·類의 註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適用할 수 없다.

예를 들면

第9類 커피, 차, 향신료에 있어서 서로 다른 號나 物品間的 混合物은 第9類 註1의 規定에 따라 第9010號 기타의 향신료에 分類한다.

第15.03號에는 混合한 lard oil 을 分類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號는 混合하지 않은 라아드 오일만을 分類하도록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混合織物材料의 分類는 第11部 註2에서 特別히 規定하는 바에 따라 2 이상의 紡織用纖維로 構成된 物品은 最大重量을 차지하는 物品으로 分類하게 되므로 通則2. 나를 適用될 수 없다.

비금속의 合金에 관한 細部條項은 第15部 註3에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通則2. 나를 適用하기에 앞서 언제나 關聯 號와 部·類의 註가 混合物 또는 複合物에 관해 特別히 規定하고 있는지를 檢討해 보아야 한다.

< 通則 3 (前文) >

이 通則 第2號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同一한 物品이 둘 이상의 號에 分類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品目分類는 다음에 規定하는 바에 따른다.

이 通則에서는 通則2. 나 또는 그밖의 다른 理由로 相異한 號에 分類possible한 物品에 關하여 세가지 分類基準을 設定해 놓고 있

다.

이 基準들은 여기에 規定된 順序대로 適用된다.

따라서 通則 3. 나는 通則 3. 가에 의해 品目分類問題를 해결할 수 없는 境遇에만 適用되고 通則 3. 다는 3. 가 및 3. 나로 해결되지 않는 境遇에 限하여 適用된다.

즉 優先順位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장 協의의 表現
- ② 主要 特性
- ③ 最終 號

通則 2 에서와 마찬가지로 通則 3 은 號와 部·類註가 規定하는 바에 따라 物品을 分類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適用한다.

따라서 언뜻보기에 몇개의 號에 分類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나 通則 3 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分類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通 則 3 가 >

가장 協의로 表現된 號가 一般的으로 表現된 號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이상의 號가 混合物 또는 複合物에 包含된 材料나 物質의 一部 또는 小賣用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物品의 一部에 料하여만 각각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號가 다른 號보다 그 物品에 對하여 더 完全하거나 明確하게 表現하는 때에도 이들 號는 그 物品에 對하여 同等하게 協의로 表現된 것으로 본다.

一見 둘이상의 號에 分類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한 첫번째 分類方法은 가장 협의로 表現하고 있는 號가 보다 一般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號에 優先하여 適用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號가 다른 號보다 협의인가를 決定할 수 있는 分명한 原則을 提示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定議해 볼 수 있다.

1) 品名 (Name) 으로 된 表現이 種類名 (Class) 으로 된 表現보다 협의이다.

物品名과 品種名

분류 상품	물품명 (Name)	품종명 (Class)	협 의 품 명
철제 포크	HS 8215 스푼·포크	HS 7323 식탁용제품	HS 8215 포크
전동기자장 이발기	HS 8510 이발기	HS 8508 수지식 전동공구 HS 8509 가정용 전기기기	HS 8510 이발기
차량용 타이어	HS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HS 4012 고무제의 재생타이어	HS 8708 자동차 부품	HS 4011.4012 타이어
코르셋	CCCN 6109 코르셋	CCCN 6104 여자용 내의	CCCN 6109 코르셋

2) 物品을 分明하고 正確하게 區分하는 表現은 不完全한 表現보

다 협의이다.

表現의 分명도에 따른 品名 表示例

분 류 상 품	표현의 分명도 (높다)	표현의 分명도 (낮다)	협 의 내 용
• 양탄자 (자동차용으로 인정)	HS 5703 양탄자	HS 8708 자동차부분품	HS 5703 양탄자
• 틀에 장착되지 아니한 안전유리 (항공기용)	HS 7007 안전유리	HS 8801.8802 항공기·우주선용 부품들	HS 7007 안전유리

3.) 兩者 同等한 表現으로 看做한다.

하나의 混合物品 또는 復合物品이 두가지 以上の 號에 關聯하던
지 또는 小賣 包裝하여 셋트로 되어 있는 物品의 各 部分이 각
기 다른 號에 해당될 때에는 비록 그중 하나가 보다 完全하거나
正確한 表現이더라도 各 構成品과 關聯되는 各 號는 同等하게 表
現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같은 경우에는 通則 3 나 또는 通則 3 다를 適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面은 플라스틱으로 다른 面은 가황(加黃)한 고무로 된 콘베이어벨트에 關하여 다음 두개의 號가 고려될 수 있다.

즉 第 3926 : 기타 플라스틱 物品

第 4010 號 : 加黃 고무로 만든 콘베이어벨트

이 두 號는 同等하게 表現된 것으로 看做해야 한다.

비록 하나의 號(第 4010 號)가 보다 完全하고 正確한 表現(콘베이어벨트)을 하고 있지만 이 兩號는 벨트의 製造에 使用된 2가지 材料를 각각 規定하고 있으므로 第 39.26 號보다 第 4010 號가 보다 협의라고 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 物品에 對하여는 通則 3 가를 適用시킬 수 없고 通則 3 나 또는 다른 適用하여 分類하여야 한다.

< 通 則 3 나 >

混合物 서로 다른 材料로 構成되거나 서로 다른 構成요소로 製造된 複合物과 小賣用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物品으로서 가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것은 可能的한 한 이들 物品에 本質的인 특성을 부여하는 材料 또는 構成요소로 構成된 것으로 取扱하여 分類한다.

- 通則 3 나는 둘 以上の 號에 分類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한 두번째 分類方法은 規定하고 있는데 이 方法은 다음과 같은 物品에 對하여만 適用된다.

通則 3 (나) 適用對象品

대 상 물 품		예 해
HS 해설서	원 문	
혼합물 (배합물)	• Mixture	- 70%의 밀 (HS1001) 과 30%의 보리 (HS 1003) 로 구성된 양조용 혼합물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상이한 재료로 된 물품)	•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	- 플라스틱 (HS39 류) 과 고무 (HS 40 류) 로 제조된 컨베이어 벨트 - 금속링이 달린 목재 양복걸이 - 'Cat eyes': 철로 덮이고 고무쿠션의 유리반사경을 갖춘 도로표지 Stud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상이한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물품)	•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Components	- 재털이 (착탈 가능한 재 (灰) 용 통과 이를 지지하는 스탠드로 된 것) - 소형의 양념선반 [특수하게 설계된 틀 (보통 나무로 됨) 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된 것]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 製圖용 커트 - 이발용 세트 - 음료 세트

－ 세트 物品의 主要特性

〈例〉 세트물품의 주요 특성여부 구성요소별 분류

세트별	構 成 品		商 品 分 類	
	品 名	CCCN NO	品 名	CCCN NO
식품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기전의 스파게티 다발 • 같은 치즈 향가루 • 소형 토마토 소스깡통 • 카톤 박스 	1902 0406 2103 4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소(物品) - 스파게티 	1902
이발기구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Hair Clipper • 빗 • brush • 직물수건 • 플라스틱의 Case 	8510 9615 8213 9603 3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소(物品) - 전기이발기 	8510
제도기구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尺 (자) • 디스크 계산기(계산반) • 제도용 콤파스 • 연필 • 연필깎기 • Plastic Sheet 제 Case 	9017 9017 9017 9609 8214 4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소 및 數量 - 자 - 계산반 - 제도용 콤파스 	9017
아기용식탁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inless Steel 로 만든 물통과 사발 • 냇킨 링 • 스푼과 포크 • 두꺼운 판지 (Paper Board) 	7323 7323 8215 4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소 및 數量 - 물통사발 - 냇킨링 	7323

< 例 外 >

그러나 세트包裝物品에 관한 規定은 비록 함께 提示되는 때에라도 다음과 같은 物品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즉 「세트」 包裝物品의 概念은 農水産物の 경우에 다른 物品보다 좁게 해석적용한다. 이는 GRI 3 (나)의 適用으로 農産物交易에 특별하게 適用되는「物價平衡關稅」등의 運用이 방해되지 않도록 政策的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商品種類의 선물용 包裝은 세트 로 조합되었더라도 FRI 3(나) 適用對象의 세트 包裝物品으로 볼 수 없다.

- 새우통조림 (HS 1605) · 빠뜨드파 통조림 (HS 1602) · 치즈 통조림 (HS 0406) · 얇게 썰은 베이컨 통조림 (HS 1602) 및 각테일 쏘세이지 통조림 (HS 1601)
- HS 2208 의 병입술 · 동 2204 의 병입포도주

< 通 則 3 다 >

가 또는 나 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物品은 同一하게 分類가 가능한 號中에서 그 順序上 最終號에 分類한다.

通則 3 가, 나 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物品은 해당 號가운데 最終號로 分類한다.

즉 2 以上の 號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物品에 關하여 그 號들中 그 物品에 本質的인 特性을 부여하는 材料 또는 構成要表가 分明치 않을 境愚에는 이 規定이 適用된다.

예컨대, 밀가루(第 1101 號) 50%와 호밀가루(第 1102 號) 50%로 된 混合穀粉은 第 1102 號에 分類되며, 室內 또는 自動車內에 놓아두는 나침반(第 9014 號), 溫度計(第 9025 號) 및 時計(第 9105)가 結合되어 있는 物品은 第 9105 號에 分類된다.

〈 通 則 4 〉

이 通則 第 1 號 내지 第 3 號의 規定에 의하여 分類할 수 없는 物品은 當해 物品과 가장 유사한 物品이 해당하는 號에 分類한다.

이 通則은 通則 1 ~ 3 號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物品에 對하여 適用된다.

이 通則에 따라 分類할 때에는 그 物品과 가장 유사한 物品을 찾아내어 그 類似物品이 分類되는 號에 分類한다.

여기서 類似物品이냐의 여부는 品名(description), 特性 및 用途 등을 基準으로 判定하게 된다.

이 原則은 原則적으로 어떤 特定號에도 該當되지 않는 新商品을 分類하기 위하여 像備적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大部分의 類에서는 나머지 稅番(Residual headings)이 마련되어 있어서 各 號에 明白하게 分類되지 아니하는 物品을 여기에 分類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實際로 이 規定은 適用될 여지가 거의 없다.

< 通則 5 (前文) >

다음에 規定된 物品에 對하여는 이 通則 第 1 號 내지 第 4 號의 規定을 適用하는 外에 다음 事項을 適用한다.

이 通則은 從前의 CCCN 에는 없었던 것으로 HS 에 새로이 導入된 規定이다. Case , 箱子 , 또는 이와 유사한 容器나 包裝材料·包裝 容器 따위는 內容物과 함께 提示되는 경우에는 이 通則에 따라 그 內容物과 同一한 號에 함께 分類한다.

< 通 則 5 가 >

사진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체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類似한 容器는 特정한 物品 또는 物品의 세트를 수용 할 수 있도록 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製造되어 있으며 長時間 使用하기에 적합하고 그 內容物과 함께 提示되는 경우에는 그 內容物과 함께 正當적으로 販賣되는 種類의 物品에 分類한다. 다만, 容器로서의 本質적인 特性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內容物 該當號에의 分類條件

- 特정한 形狀을 가지고 있거나 特정한 物品 내지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容器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物品에 적합하도록 特별히 設計되어 있다. 어떤 容器는 그들이 수용하는 物品의 형태와 같은 형상을 하고있다.

-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容器는 그들이 所用 될 예정인 物品에 대응하여 耐久性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物品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例: 운송 또는 보관등)
-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內容品과 함께 제시되는 것(輸送의 편의상 분리 포장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內容品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 내용물과 용기의 統一體(例: 치약入 튜브 등)로서 容器의 주요한 特性이 없는 것

一 內容物 해당 號 分類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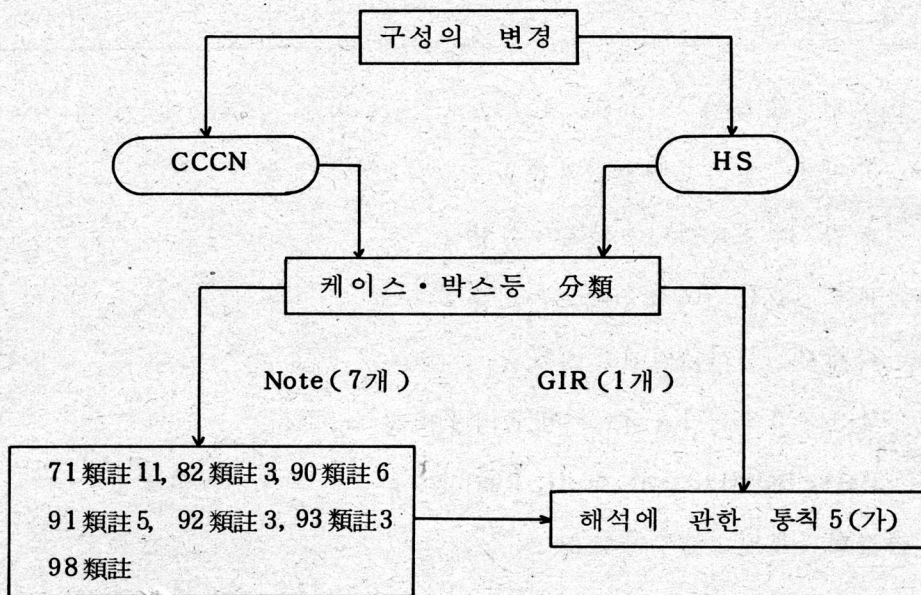
- 비누용 플라스틱 박스(제 340 호)
- 신변장식용품 박스와 케이스(제 7113 호)
- 전기면도기 케이스(제 8510 호)
- 쌍안경·망원경 케이스(제 9095 호)
- 약기의 케이스·박스 및 가방(예: 제 9202 호)
- 엽총 케이스(예 9303 호)

一 容器類 해당 號 分類例

- 내용물에 비해 包裝容器의 價値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든가 하는 이유로 그 내용물과 함께 販賣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거나
- 包裝物이 일반적으로 내용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類型과 상이하 고, 포장 이외에 내구적이고 독립적인 용도를 따로 가질때 또는

- 내용물과 함께 판매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완전한 物品의 본질적인 特性을 갖는 種類의 것이거나
 - 關稅逋脫을 위하여 포장이 사용된 경우
 - 내용물이 없는 空容器 등, 예를 들면 商品의 포장용기인 동시에 장식 또는 換價保存財産으로 이용되는 二重用途包裝 (Dual-use-Packaging) 수단은 내용물의 해당 號가 號가 아닌 容器의 해당號에 分類된다.
 - 茶가 담겨 있는 「銀製 桶」(Silver Caddy)
 - 甘露酒가 담겨 있는 「장식용 도자기」
 - 銀과 보석 등으로 장식된 「술병」등
- 通則 5(가)의 新設
- CCCN → HS

通則 5(가) 新設過程



• CCCN의 註의 內容

「이 類의 物品과 함께 輸入되어 일반적으로 같이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物品(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容器는 각각 케이스 등이 해당되는 號에 분류한다」

〈通 則 5 나〉

가의 規定에 該當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內容物과 함께 提示되는 包裝材料와 包裝容器는 이들이 그러한 物品의 包裝用으로 正常的으로 使用되는 種類의 것에 한하여 그 物品과 함께 分類한다. 다만 그러한 包裝材料 또는 包裝容器가 明白히 반복적으로 使用하기에 適合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內容物 該當號 分類例

- 유리제 술병(個裝·外裝)
- 綿製 신발주머니(個裝·外裝)
- 紙裝 연필 포장(個裝·外裝)
- 緩衝材 플라스틱렌(內裝)
- 생선상자에 사용되는 방습지(內裝)
- Bale, Bundle, Coil, Roll, Reel 등

— 容器類 해당 號 分類例

- 반복 사용하기에 명백히 적합한 철강재 드럼·실린더 등
 - 압축가스용 금속제 실린더 Bomb, Flask
 - 액화가스용 금속제 드럼, Syllinder

〈 通 則 6 〉

法的인 目的上 어느 號中 小號의 品目分類는 同一한 水準의 小號들만을 서로 比較할 수 있다는 點을 條件으로 그 小號의 用語와 關聯 小號의 註에 따라 決定되며 上記 諸通則을 準用하여 決定한다.

또한 이 原則에서 文脈上 달리 規定한 境愚를 途外하고 關聯·部·類의 註도 適用한다.

— 先號 後小號

- HS 體系에서 小號에 의한 品目分類를 하려면 먼저 4單位 號에의 分類가 先行되어야 한다.

— 通則 2 나·通則 3 의 適用

- 木材와 金屬으로 제조된 부엌家具
 - 第 94.03,20 號 : 其他 金屬 家具
 - 第 94.03,40 號 : 부엌用 나무 家具

— 文脈上 다른 規定

- 第 71 類 註 4 (나) : 이리듬이 白金에 포함
- 小號註 : 「 7110.11 」 「 7110.19 」의 白金에 이리듬이 포함
않는다.

第3章 註 (Note)

1. 註의 形態

－ 註規定의 3個類型

이 註를 구성하고 있는 規定의 형태를 살펴보면 ① 定義의 表現, ② 競合品目的 所屬明示, ③ 個別的 品目分類에 관한 原則을 說示한 것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가. 定義表現의 類型

(1) 一般的 定義를 規定

HS 品目表 全體 또는 特定の 部·類·號의 部分에 관련된 用語에 대한 一般적 정의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2) 號의 內容, 簡潔化

定義로서의 共通文型을 註에 규정함으로 號의 長文化와 여러 號에 反復·記述되는 것을 排除하고 있다.

나. 競合品目所屬明示의 類型

(1) 除外·包含品目 明示

(2) 特定號(또는 小號)에 분류되는 品目的 列舉 또는 例示

(3) 特定類·節·號에 限定 分類되는 品目的 明示

(4) 特定部·類·號(또는 小號)에의 分類 指定

다. 品目分類原則 規定의 類型

(1) 一體(本體)에의 分類規定

(2) 分離分類의 規定

- (3) 主用途・主機能에 의한 分類規定
- (4) 歸屬度關數에 의한 分類規定
- (5) 定型規格에 의한 分類規定
- (6) 通則(GRI)의 規定에 의한 分類規定
- (7) 包裝品 세트에 관한 分類規定

－ HS 상 註의 項目

CCCN과 HS의 註 項目 比較

部						類								
CCCN			HS			CCCN			HS					
項 目	項 目	비고 (追加註)	項 目	追加註	小號註 項 目	項 目	項 目	비고 (追加註)	項 目	項 目	追加註 項 目	小號註 項 目		
													28	93

2. 定義 規定의 類型 例

가. 定義만의 規定 例

(1) HS 全分野 適用

- ① 이 表(HS 品目表를 지칭)에서 '아이보리'라 함은 코끼리, 해마, 밀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動物의 이

를 말한다 (5類 註3)

② 이 表에서 '콤파지션 레더'라 함은 제 4111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41類 註2).

③ 이 表에서 '유리'라 함은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70類 註5).

(2) 部分分野 適用

① 이 部에 계기된 動物의 특성의 屬이나 種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屬이나 種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1部 註1)

② 이 類에서 '트랙터'라 함은 주로 다른 車輛, 機器 또는 貨物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87類 註2)

③ 第 9702 號에서 '오리지널 版畫, 印刷畫 및 石版畫'라 함은 한 개 또는 수 개의 原版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製作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이의 製作工程 및 材質 여부는 불문한다 (97類 註2).

나, 用語·文句의 定義와 限界포함 規定例

用語·文句의 意義와 限界規定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表	<p>< 43類 註1 >……定義例 이 表에서 ‘毛皮’라 함은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을 말한다.</p> <p>< 54類 註1 >……限界例 이 表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 공정 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 한다.</p>	號	<p>< 87類 註3 >……定義例 제 8702號에서 ‘대중 수송형 승 용차’라 함은 운전사를 포함하 여 10인승 이상으로 설계 제작 된 차량을 말한다.</p> <p>< 19類 註4 >……限界例 第 1904號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第10類, 第11類의 각호 또는 註에 규정 한 것 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 한 것을 말한다.</p>
部	<p>< 2部 註1 >……定義例 이 部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 착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 분의 3이내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직접 응 결한 물품을 말한다.</p> <p>< 11部 註11 >……限界例 이 部에서 ‘침투’는 침지된 물품을 포함한다.</p>	小號	<p>< 10類 小號註1 >……定義例 ‘듀럼種의 밀’이라 함은 트리 티컴 듀럼種의 소매 및 당해 種 間交雜에 의하여 생긴 雜種 중에 서 염색체 수가 트리티컴 듀럼種 과 同數(23)의 것을 말한다.</p> <p>< 17類 小號註1 >……限界例 제 1701.11 및 1701.12 小號에 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 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p>
類	<p>< 37類 註2 >……定義例 이 類에서 ‘사진用’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의하여 감광선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可視像을 형 성하는 과정을 말한다.</p> <p>< 48類 註5 >……限界例 이 類에서 ‘크라프트紙와 版紙, 라 함은 황산 또는 소다처리 공 정에 의한 펄프의 함유량이 전 섬 유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紙 와 版紙의 것을 말한다.</p>		

다. 共通文型 規定에 의한 號 本文의 간결化

(1) HS 상 號

- 第 5101 號「羊毛……………」
- 第 5103 號「羊毛……………웨 이 스트」
- 第 5105 號「羊毛……………가네 스텝」

(2) 第 51 類 註 1

「羊毛」라 함은 羊 또는 어린 羊의 天然纖維를 말한다.

3. 競合品目の 附屬明示

가. 除外・包含 規定

- (1) 除外品目 明示 (文型: 除外한다, 包含・適用・分類하지 아니한다)

HS 註에서의 除外規定 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類	<p>< 22 類 註 1 > ……文型 1 이 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수 (제 2501 호) 나. 증류수·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다. 생략 라. 생략 마.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제 33 류)</p> <p>< 7 類 註 1 > ……文型 2 이 류에는 제 1214 호의 사료용 식물을 제외한다.</p> <p>< 8 類 註 1 > ……文型 3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견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p>	號	<p>< 13 類 註 1 > 제 1301 호 (락과 천연검·수지· 검수지 및 발삼) 에는 감초엑스· 제충주엑스·흡엑스·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여 다음 것을 제외 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나. 맥아엑스로서…… ∴ 자. ……</p>
		節	<p>< 63 類 註 2 > 제 1 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 기타물품) 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가. 제 56 류 내지 제 62 류의 물품 나. 제 63 류의 中古의류 및 제품</p>

(2) 包含品目 明示 (文型 : 包含・適用・分類한다)

註에서의 包含規定 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表	< 1部 註2 > 이 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部	< 11部 註12 >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는 '애러미드'를 포함한다.
		類	< 60類 註2 > 이 류에서 衣類·室內用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糸製의 직물을 포함한다.

나. 品目的 列舉 또는 例示

註에서의 品目列舉와 例示規定

內容別 區分	列 舉	例 示
例文	< 30類 註3 > 제 3006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해서 적용하며 그러한 물품들은 제 3006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표상의 다른 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의 깃털과 이와 유사한 봉합재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와 치과용 지혈제	< 86類 註2 >..... 文型 1 제 8607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 (주행장치)·윤축·외륜과 윤심 및 기타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언더 프레임·보우기 (대차)와 비셀 보우기 (비셀대차)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 후크 및 기타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마. 차 체

다. 特定號 등에 限定分類되는 品目の 明示

限定分類되는 品目明示 規定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表	< 41類註2 > 이 表에서 “컴퍼지션레더”라 함은 제 4111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다.	號	< 85類註3 > 제 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電氣機器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 바닥광택기, ... 나.
部			
類	< 61類註1 > 이 類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小號	< 84類 小號註1 > 제 8482.40號는 단지 직경이 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롤러를 갖춘 베어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節	< 63類註1 > 第1節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품으로 된 物品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指定 部·類·號·小號에의 分類

指定 部·號·小號에의 分類規定例

區分 部類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部	< 6部註3 > 2종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部에 해당하고 제 6부 또는 제 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혼합한 것은 제 6부 또는 제 7부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號	< 62類註8 >...文型 2 이 류에서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類	< 91類註4 > 시계 및 기타의 물품 (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 및 기타 다른 부분들은 이 류에 분류된다.		< 48類註10 >...文型 3 제 4823호에는 자카드 직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한 紙와 판지제의 카드 및 지제의 레이스를 적용한다.

4. 品目分類原則

가. 本體에의 分類原則(一體의 分類原則)

〈例 文〉

(1) 16 部 註 3 (主機와 補助機)

두 가지 이상의 機械가 함께 結合되어 하나의 完全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補助機能 또는 選擇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解釋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상기 要素들로 구성된 단일의 機械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機械로 분류한다.

(2) 16 部 註 4 (主機+補助機)

하나의 機械(數種의 機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여러 개의 個別器機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따로 分離되어 있거나 配管·電動裝置·電力케이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第 84 類 또는 第 85 類 중의 어느號에 명백하게 규정된 機能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全部를 主機能에 따라 該當號에 분류한다.

나. 個別 分類의 原則

(1) 85 類 註 6 (錄音器와 테이프)

第 8523 號 또는 第 8524 號의 레코드판·테이프 기타의 記錄用 媒體는 이들 物品이 사용되는 機器와 함께 提示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號에 분류한다.

(2) 94類 註3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제 9404 호에 揭記한 物品이 제 9401 ~ 9403 호의 物品의 部分
품에 해당될지라도 단독으로 輸入된 경우에는 제 9401 ~ 9403 호
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3) 93類 註1 (武器와 火當, 雷管...)

이 類(武器 등)에서는 다음의 것을 除外한다.

(가) 36類의 物品(예 : 화관 · 뇌관 · 신호용 조명탄)

(나) 생략

다. 主用途·主機能에 의한 分類原則

(1) 主用途에 의한 分類

① 17部 註3

第86類 내지 第88類(철도...기관차...와 그 部分品 등)의
“部分品” 또는 “附屬品” 규정은 이들 類의 物品에 專用 또
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部分品과 附屬品에는 적용
하지 아니하며, 이들 類 중 둘 이상의 號에서 규정한 내용이
함께 적합할 경우에는 그 部分品이나 附屬品の 主用途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② 84類 註7(前段)

2 가지 이상의 用途에 사용되는 機械類의 分類에 있어서는
그 主用途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2) 專用 또는 主用途機器에의 分類

① 90類 註2

上記 註 1 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類의 機器의 部分品과 附屬品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部分品과 附屬品으로서 특정한 機器 또는 동일한 號에 해당하는 數種의 機器 (第 9010 號・第 9013 號 및 第 9031 號의 機器를 포함한다.) 에 專用 또는 主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機器와 함께 분류한다.

③ 95 類 註 3

上記 註 1 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類의 물품에 전용 또는 主로 사용되는 部分品과 附屬品은 당해 物品과 함께 분류한다.

(3) 共用 (共通使用) 部分品の 分類

① 16 部 註 2 나 (단서)

다만, 主로 第 8517 號와 第 8525 號 내지 第 8528 號의 物品에 共通的으로 사용되는 部分品은 第 8517 號에 분류한다.

(4) 主用途 不明確品の 分類

① 84 類 註 7 (後段)

어느 號에도 主用途가 서술되어 있지 않거나 主用途가 불명확한 機械類는 이 類의 註 2 또는 16 部 註 3 의 규정에 따라 分離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解釋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第 8479 號에 분류한다.

(5) 主機能 (또는 主機) 에 의한 分類

① 16 部 註 3

2 가지 이상의 機械가 함께 結合되어 하나의 完全한 機械를 구성하는 復合機械와 기타 2 가지 이상의 補助機能 또는 選擇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機械는 문맥상 따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上記 要素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主된 機能을 수행하는 機械로 분류한다.

② 16 部 註 4

하나의 機械 (數種의 機械가 結合된 것을 포함한다)가 數種의 個別機器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따로 分離되어 있거나 配管·電動裝置·電力케이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與否를 불문한다.) 이들이 第 84 類 또는 第 85 類 중의 어느 號에 명백하게 규정된 機能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는 그 전부를 主機能에 따라 該當號에 분류한다.

라. 歸屬度 關數에 의한 分類原則

(1) 最大重量 우선 分類

① 11 部 小號 註 2 (가) (섬유의 分類)

둘 이상의 紡織用 纖維로 구성된 第 56 類 내지 第 63 類의 物品은 동일한 紡織用 纖維로 구성된 第 50 類 내지 第 55 類의 物品分類에 관한 이 部의 註 2 의 규정에 의거 최대의 重量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

② 15 部 註 3 (합금의 分類)

합금의 分類 (第 72 類 第 74 類의 註에 규정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가) 卑金屬 合金은 含有重量이 重量比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合金으로 분류한다.

(2) 指定關數値에 의한 分類

- ① 上限關數値 ……… 100 分の 0.5 이하 (22類 註3)
- ② 下限關數値 ……… 100 分の 50 초과, 100 分の 80 이상 (48類 註5)
- ③ 上·下限關數値 ……… 100 分の 70 이상 85 이하

마. 定型規格에 의한 分類原則

(1) 체 (Sieve) 通過 重量比率

- ① 11類 註2

(가) 생략

(나) 前“(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類에 해당하는 物品은 아래 表 제 4 란 또는 제 5 란에 표시한 구멍을 가진 金屬網의 체를 빠져 나가는 重量比率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比率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第 1101 號 또는 第 1102 號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第 1103 號 또는 第 1104 號에 분류한다. (例: 밀·호밀·쌀 등은 315 미크론의 체 通過比率이 80%, 옥수수와 수수는 500 미크론 체 通過比率이 90%).

(2) 發熱量에 의한 分類

- ① 27類 小號 註2

第 2701.12 小號에서 “유연탄”이라 함은 乾燥하고 鑛物質이 없는 狀態에서 揮發性 物質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分の 14 를 초과하고 鑛物質이 없는 含水狀態에서 發熱量이 1 kg 당 5,833 킬로칼로리 이상의 石炭을 말한다.

(3) 1 평방미터당 重量에 의한 分類

① 48類 註3

이 類의 “新聞用紙”라 함은 新聞印刷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機械工程에 의한 펄프의 함유량이 全纖維重量의 100분의 65 이상, 사이즈를 아니하거나 極少量 사이즈한 것으로 양면의 평활도가 200/ 초 백크이하, 1 평방미터의 重量이 40그램 이상 및 57그램 미만으로 灰分の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이하의 것인 塗布하지 아니한 紙의 것에 한한다.

(4) 데시텍스 (decitex) 및 시엔 / 텍스 (CN/TEX)에 의한 分類

① 11部 註3...데시텍스

(가) 이 部에서 다음에 계기한 실 (單絲·複合絲 (연합사) 또는 케이블絲)은 註3의 “나”에 揭記한 物品을 제외하고,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로 취급한다.

①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20,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② 人造纖維의 실 (第54類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0,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11部 註6...시엔 / 텍스

이 部에서 “強力絲”라 함은 強度를 갖고 있는 실을 말하며, 시엔 / 텍스 (센티뉴우튼퍼텍스) 로 표시하고, 다음에 揭記한 것보다 커야 한다.

(가) 나일론·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單絲……60 시엔 / 텍스

나. 나일론·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複合絲 (聯合絲) 또는 케이블絲 …… 53 시엔 / 텍스

(5) 길이에 의한 分類

① 48類 註 8

第 4814 號에서 ‘壁紙 및 이와 유사한 벽 被覆材’는 다음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 cm 이상이고 160 cm 이하인 捲狀의 紙로서 다음에 揭記한 것.

바. 最終號·類似品 分類와 先類, 後號의 分類原則

(1) 最終號 分類의 原則

① 29類 註 3

이 類에서 2 이상의 號에 해당하는 物品은 그 該當號 中 最終의 號에 分類한다.

② 29類 註 5 -

第 1 節 내지 第 10 節 또는 第 2942 號의 有機化合物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이 類의 最終號에 分類할 것이 아니라, 그 鹽이 형성된 염기 또는 酸 (페놀관능화합물 또는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 이 해당하는 號 中 最終號에 分類한다.

(2) 類似品에의 分類原則

① 17部 註 5

空氣緩衝式 車輛은 이 部 내에서 分類하되 다음에서 정한 바에 가장 유사한 車輛으로 보아 이를 分類한다.

(가) 가이드 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第86類 (호버
어 트레인)

(나) 陸上 또는 水陸兩用으로 설계된 것은 第87類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第89類 (해면 또는 발착
장 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走行할 수 있는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② 72類 註3

電解法・壓搾鑄造 또는 燒結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품은
그 形狀・構成・모양에 따라 유사한 열간압연제품에 알맞은 이 類
의 각 號에 분류한다.

(3) 先類, 後號 分類原則

① 11部 註2(나)

該當號의 決定은 우선 類를 결정하고 그 다음 그 類에 속
하는 적절한 號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類에 분류되지 않는 材
料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第5部

品目分類의 演習

第1章 HS의 分類要領

1. 問題點
2. 分類要領

第2章 HS상 紛爭解決

1. 概要
2. HS委員會
3. 行政救濟制度

第3章 演習

1. CCCN 分類상 紛爭例
2. HS 分類상 紛爭例
3. 機械部品の 分類例
4. 實行關稅率表와 HS 補助資料

第 1 章 HS 의 分類要領

1. 問題點

가. HS 등 品目表의 不完全性

- 貿易商品, 地球村의 全物品 列舉困難
 - 300 萬 - 500 萬種
 - 新規商品의 계속 등장
- HS 品目表
 - 約定品目表 (HS 協約)
 - 混合分類 (本質의 分類 + 應用分類)

나. 分類의 相異要素 介在

- 號 (Heading) 用語의 多義
 - 말 (馬)

[말	(0101)
	얼룩말	(0106)
 - 소 (牛)

[소 (물소)	(0102)
	코뿔소	(0106)
 - 도토리

[식 용	(08 류?)
	사료용	(2308.10)
- 註 (Note) 適用의 複雜
 - 汎用部分品의 例

범용성 部分品의 경우 第 16 部 註 1 (사) → 第 15 部 註 2 (다) <8301> → 第 83 類 註 1 → 第 76 類 등 3 個의 註와 1 個의 類 순서로 要件 규정들

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通則 (GRI) 思考的 判斷基準의 相異

< 事 例 >

- △ 「完成品の 認定」
- △ 「主要特性에 의한 分類原則」
- △ 「類似品에의 分類原則」

< 例 解 >

GRI 3(나)의 「主要特性에 의한 分類原則」에서는 얼핏보기에는 2個 이상의 號에 分類된 混合物 및 複合物이 그 製品에 主機能을 부여하고 있는 材料 또는 構成要素만으로 기준하여 思考的 判斷에 따라 號의 소속을 決定하는 것이 쉬운듯하나 定量的 判斷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個人的 思考의 差異에 따라 실제적인 適用은 달라질 수 있다.

2. 分類要領

가. 分類對象 商品의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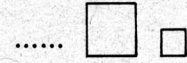
HS·SITC의 品目分類의 대상이 되는 貿易商品은 다음과 같이 7個類型으로 區分되는데 여기서는 部分品을 研究對象으로 選定하였다.

- (1) 同一·同種의 素材와 그 製品<例: 면(100%) 직물>.....
- (2) 2種 이상의 다른 素材로 구성 (또는 合成·組成)된 混合物과 그 製品<例: 밀(50%) 과 호밀(50%)의 混合物, 면(40%) 과 나일론(60%)으로 직조된 나일론 직물>.....

(3) 機械本體와 部分品 및 豫備部分品 <例: 냉장고와
응축기 또는 증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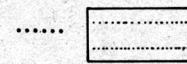
(4) 機械本體와 附屬品 <例: 손목시계와 줄, 소총과
멜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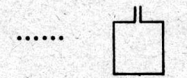
(5) 複合機械 <例: 크레인, 운반기와 양하기 >



(6) 세트로 포장된 物品 <例:洗面道具, 미용기구
세트 >



(7) 포장·容器類에 내장된 物品 <例: 비누와 그
통, 고압가스실린더 >



나. 商品의 分類

— 基礎知識

- HS 品目表의 分類體系
- HS 解說書의 內容
- 商品에 관한 윤곽

— 商品의 確認

- 單一·複數物品 與否
- 特性 (製法, 原料, 成分, 構成, 機能, 用途 등)
- 方法
 - ① 카다로구
 - ② 제품설명서
 - ③ 일반文獻 (商品辭典 등)
 - ④ 질의·상담 (전문가·생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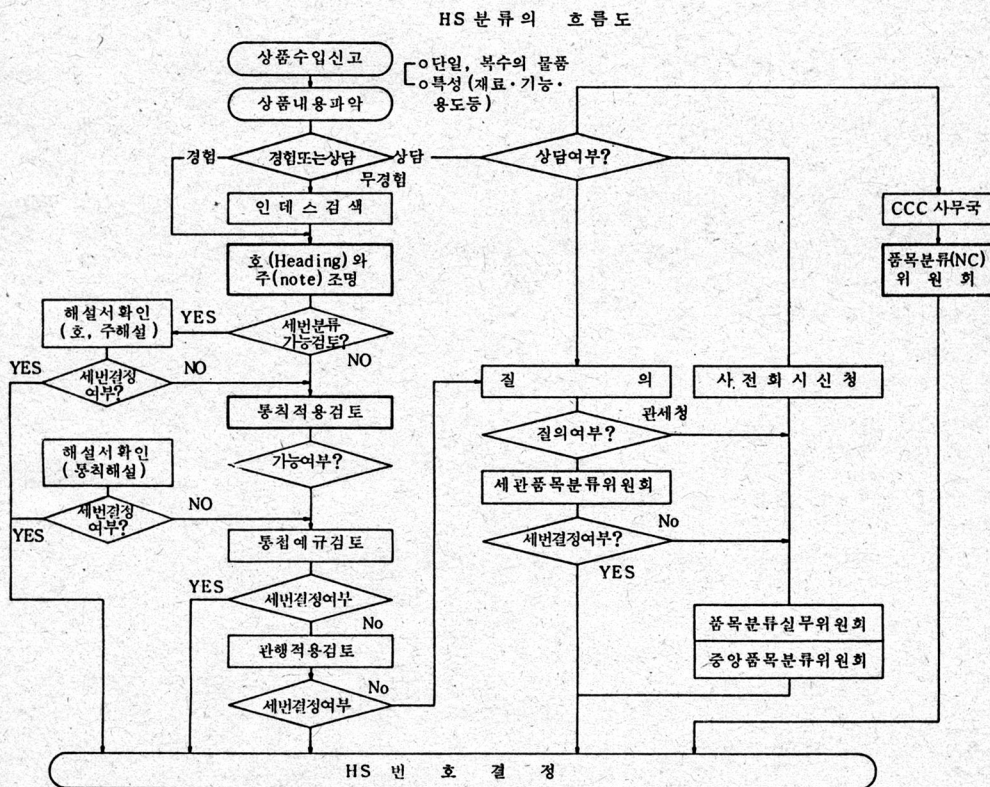
다. HS 분류에의 接近

一 商品·品目

- 商 品 : 商 的 物 品, 交 換 價 値 가 有 는 財 貨
- 品 目 : 品 目 表 상 계 기 된 物 品
- 品 目 分 類 : 商 品 (物 品) 이 品 目 表 상 계 기 된 物 品 과 一 致 하 는 가

一 接 近 方 法

- 概 要



－ Index 掲記品

• Index

① CCC發刊(例, Alphabetical Index to H.S. and its Explanatory Notes)

② KCRI發刊(例, 輸出入商品 HS分類索引書[☆])

(☆ : CCC, Index + 輸出入實績商品)

• 商品名

① 製造會社 固有의 商標名, 商品名

② 一般 貿易商品名, 學名 Index계기

• 接近

Index계기된 관련號 → HS本文對查 → 註 → 通則

－ Index 非掲記品

• 질의·相談에 의한 接近

주요 HS 상담기관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특기사항	전화
서울	관세청	○감정과 ○분석소 ○민원실	- HS전반 - 주로 화공약품 - 사전회시등 안내	(대표) 542-7141
	관세연구소	○HS연구실	- 분야별로 담당자 지정	(대표)544-3032
	무역협회	○상담소	- 특별상담코너	(대표)771-41
지방	각세관	○민원실 또는 수입과	- 세번회시제도운영	
	관세사무소	○각 사무소		

※ SITC, 경제기획원에서 주관

• 自力에 의한 接近

△ 분류하고자 하는 物品이

- ① 部題 : 部題의 商品, 商品群名과 同一・類似한가
- ② 類題 : 類題 " "
- ③ 號 : 號에 계기된 品目과 一致하는가
- ④ 註 : 除外 與否
- ⑤ 通則 : 2 個以上の 號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除外例 :

號除外 < 0307 달팽이 (바다달팽이 除外) >

註除外 < 8 類註 1 (이류에서는 食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

HS 解説書除外 < 8528.10 칼라TV (비디오 기록기 및 재생기 (8521)) >

第 2 章 HS 상 紛爭解決

1. 概 要

－ CCC 主管

△ 個人·組合 → 政府關稅當局(財務部 關稅局) → HSC (NC 는 1 回期間 20-30 件 檢討處理)

△ 個人·組合 → CCC 事務局(品目表·分類局)(事務局은 每年 300-500 件 接受處理)

－ 國內 政府機關 主管

△ 稅關·關稅廳

△ 國稅審判所

△ 法院

2. HS 委員會

－ 紛爭 해결

① 當事者간 解決(協約 §10-1)

2 개국 이상의 締約國 사이에 HS 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相關국 政府들은 가능한 한 자체 내에서의 交渉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協商에 의하여 紛爭을 해결한 政府는 同 決定에 관하여 理事會 事務局에 통지할 수 있으며 理事會 事務局은 HS 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 HSC의 분쟁해결

직접 協商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은 사무국에 위탁되며, 사무국 (品目·分類局: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Directorate)은 이를 검토하여 HS委員會에 상정하며, HSC는 그에 따라 분쟁내용을 심사하여 해결책에 관한 적당한 勸告를 行한다.

③ CCC의 분쟁解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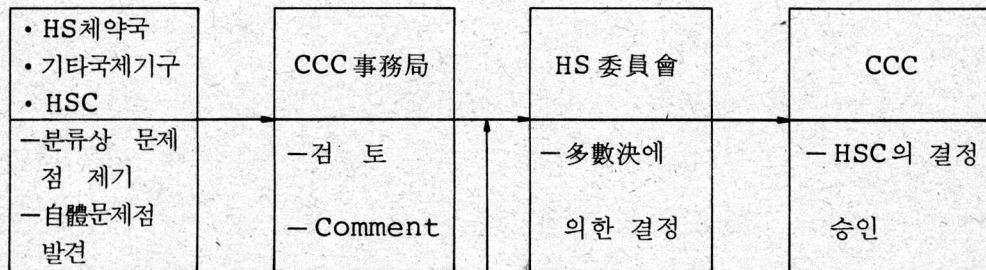
만약 H.S.C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H.S.C는 그 문제를 이사회에 넘기며, 동 이사회는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제 3조에 의거해서 권고를 한다.

④ HSC의 紛爭外 解決 (§7-1)

또한 사무국이 직접 締約國에서의 分類上의 相異點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사무국은 關聯會員國과 협의하여 의견의 차이가 확실한 경우에 正常的인 절차에 따라 HSC (또는 NC)에 議題로 상정한다.

— HS委員會의 品目分類 決定

① 處理節次



{ 의견서
필요자료
건본첨부

② 決定의 樣式

• HS 文脈상 自明

品目分類가 HS (CCCN) 의 文脈 또는 HS 解說書의 內容에 따라 自明한 경우에는 문제를 취급한 委員會 회기의 報告서에 決定事項을 단순히 언급할 뿐이고 더 이상의 措置는 취하지 않는다.

• HS 解說書와 競合

品目分類가 解說書의 現존하는 內容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으나 分類決定이 곤란할 경우에는 品目分類 의견서를 作成한다. 이와같이 작성된 品目分類 의견서는 HS 순에 따라 品目分類意見要約書에 수록된다.

• HS 解說書의 不充

解說書가 特定物品의 분류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訂正 (Corrigendum) 의 형식으로 解說書를 구체화 하거나 修正하는 案을 마련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은 후 출판하여 會員國 또는 一般人에게 配布한다.

• HS 解說書의 不合理

委員會에서의 검토의견이 技術的으로 가장 合理的이라 생각하는 분류가 HS (또는 CCCN) 의 일부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HS 일부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 못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 HSC에서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CCC에 최종적으로 이들 紛爭解決을 위해 勸告를 요청할 수 있고, HS 改正案을 理事會에 제출한다.

〈事例〉 品目分類委員會 檢討決定例

트리니다드 토바고 政府에서 NC事務局에 “Liquid Paper”로 불리우는 訂正液 (Correction Fluid) 에 대하여 品目分類를 의뢰하여

第39次~第40次 品目分類委員會에 上程·決定된 事例를 정리해 본다.

一 商品說明

가. 組 成

25%의 안료, 5%의 합성수지 접착제, 70%의 有機溶媒로 構成된 白色液體 (분홍색, 옅은 갈색 등의 것도 있음)

나. 包 裝

18.5cc 짜리의 조그만 병 속에 包裝販賣하며, 캡에 조그만 브러시가 附着 포함되어 있음.

다. 用 途

타이핑의 誤字 등을 덮어서 지움.

- 誤字 등의 表面에 이 Correction fluid를 도포하면 이 液體는 迅速히 乾燥되어 얇은 皮膜을 形成함.

- 병 속의 Correction fluid가 너무 진할 경우는 用途說明에 따라 Correction fluid用 희석제 (thinner)에 희석하여 使用하는 바, 희석제는 조그만 병에 包裝된 複合有機溶媒임.

一 事務局의 品目分類意見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檢討되었다.

① 조그만 병에 包裝된 Correction fluid

② 조그만 병에 包裝된 thinner

③ 조그만 병에 包裝된 Correction fluid와 조그만 병에 포장된 thinner를 한 개씩 묶어 세트로 포장한 物品

이 경우 조그만 병에 包裝된 thinner는 별도로 수입된다면 이

물품이 여러 가지의 有機溶媒混合物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연히 第 3818 號에 분류될 것인 바, 여기에서는 Correction fluid
자체와 Correction fluid와 thinner가 세트로 포장된 物品의
분류만이 문제가 될 것임.

가. 誤字訂正用 Correction fluid

小賣包裝된 Stencil corrector (등사원지 修正劑)는 第38類 註
2(d)의 規定에 따라 第 3819 號에 분류되도록 되어 있으며, 第3819
號 解說書에서는 Stencil corrector로 小賣包裝되지 않은 바니시
는 第 3819 號에서 제외하도록 規定하고 있음.

Correction fluid에 대하여는 品目分類表나 解說書에 별도로 規
定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第 3819 號 이외의 特定號 예컨대 第 3209
號나 第 39 類의 特定號에 分類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이 物品이 第 3819 號에 分類될 수 있기 위하여는 第 3209 號나 第
39 類에 分類되지 않음이 明白해져야 할 것임.

(1) 第 3819 號

이 號에는 특히 “페인트와 에나멜”을 분류하는 바, CCCN 解說書
에 의하면 “페인트”의 概念을 “非溶解性 着色物質……을 特定の 接
着劑(binder) 및 통상 特定の 溶媒에 分散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物質의 一般的인 用途나 機能에 대하여는 說明이 없음.
이를 證據로 하여 Correction fluid가 안료, 接着劑 및 溶媒로
構成되었음을 이유로 “페인트” 또는 “에나멜”로 간주될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각종의 科學書籍에서는 페인트의 機能
을 着色·장식 및 또는 保護로서 說明하고 있음. 반면에 문제의 Cor-

rection fluid는 타이핑 등의 誤字를 덮어 없애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着色·장식 또는 保護目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 더우기 이 物品은 페인트와는 달리 急速히(數秒內에) 乾燥되어 皮膜을 形成함으로써 타이핑을 다시 하거나 다시 쓸 수 있게 함. 이러한 用途上의 差異에 따라 “페인트 및 에나멜”과는 다르며, 더우기 小賣包裝된 Correction fluid는 用途說明書에 의해 쉽게 그 用途를 識別할 수 있음.

(2) 第 3209 號

이 號에서는 또한 “……페인트 또는 에나멜 媒體에 混合된 顏料”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Correction fluid는 特定用途에 即時使用할 수 있는 最終製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없을 것임.

(3) 第 39 類

第 39 類 註 3(a)에서는 第 3901 號 내지 第 3906 號에 合成樹脂의 溶液 및 分散液이 포함됨을 規定하고 있음. 그러나 事務局의 意見으로는 Correction fluid가 合成樹脂를 단지 少量 接着劑로서 포함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第 39 類 註 3(a)에서 의미하는 합성수지 溶液 또는 分散液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第 39 類에서 除外될 것임.

결국 이 Correction fluid의 分類는 第 3819 號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類似物品인 小賣包裝된 Stencil corrector의 分類와 부합되는 것임.

나. 작은 병의 Correction fluid와 작은 병의 thinner를 세트로 包裝한 物品

1978.1.1, 개정된 關稅率表 解釋에 관한 通則에 따라 이 세트로 포장한 물품은 이 物品에 主特性을 부여하고 있는 要素인 Correction fluid의 해당 호에 分類되어야 할 것임.

一 品目分類委員會의 決定

가. Correction fluid

分類 가능한 號로서 第 3819 號와 第 3209 號의 의견이 있는 바, 즉 第 3209 號를 主張하는 代表들의 見解는 다음과 같았음.

① 통상의 페인트와 같이 Correction fluid는 종이에 色을 칠하고 불필요한 表示 등을 지우는 데 사용되며

② 이 液體의 조성이 解說書 第 3209 號에 설명되어 있는 페인트의 組成과 부합되며 組成과 부합되며

③ 이 液體는 迅速히 乾燥한다 하여 페인트와 다른 特性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페인트類 중 어느 것은 동일하게 迅速히 乾燥하는 特性이 있음.

④ 또한 Stencil corrector로 包裝된 바니시 第 3209 號로부터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法的 規定이 있지만, 問題의 液體와 같이 페인트로 취급될 수 있는 物品을 이 號에서 제외한다는 明白한 規定이 없음.

- 반면에 第 3819 號를 主張하는 見解는 다음과 같았음.

① Correction fluid가 단지 타이핑誤字 등을 지우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임은 레이블을 보면 明白함. 이 物品은 “페인트”로서 去來되지 않으며, 또한 “페인트”로서 使用되지 않음.

② 第 38 類 註 2 에 Correction fluid 에 대하여 言及이 없
다 하여 이 物品을 第 3819 號에 分類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결국 投票에 붙인 結果 委員會는 22 對 6 의 多數로 Correction
fluid를 第 3819 號에 分類하기로 결정함.

나. Thinner

委員會는 滿場一致로 Correction fluid 用의 有機化合物의 混合
體인 thinner가 第 3818 號에 分類되어야 함을 決定함.

다. Correction fluid와 Thinner를 세트로 包裝한 物品
만장일치로 改正解釋에 관한 通則에 따라 이 物品을 第 3819 號로
分類기로 決定함.

一 解說書 插入

第 40 次 品目分類委員會에서는 上記 Correction fluid의 分類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CCCN 解說書を 改正하기로 하였음.

가. 第 3209 號 解說書에 다음과 같이 除外規定을 삽입함.

“ 顔料接着劑 등으로 組成되어 小賣包裝한 物品으로서 타이프文書, 手
製文書, 寫眞複寫物, 오프셋, 프린트마스터, 其他 이와 유사한 것의 誤
謬를 修正하기 위해 사용되는 物品 ”

나. 第 3819 號에 다음 規定을 삽입

小賣包裝한 訂正液 (correction fluid) : 白色 또는 其他 色彩의
불투명한 流體로서 顔料, 合成樹脂接着劑 등으로 組成되어 있으며, 타
이프文書, 手製文書, 寫眞複寫物, 오프셋, 프린트마스터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의 誤謬를 修正하기 위한 物品, 이 物品은 보통 작은 병 또

는 펜의 形狀으로 포장되며, 통상 캡에 조그만 브러시가 附着되어 있음. 그러나 訂正液用의 複合 thinner는 第 3818 號에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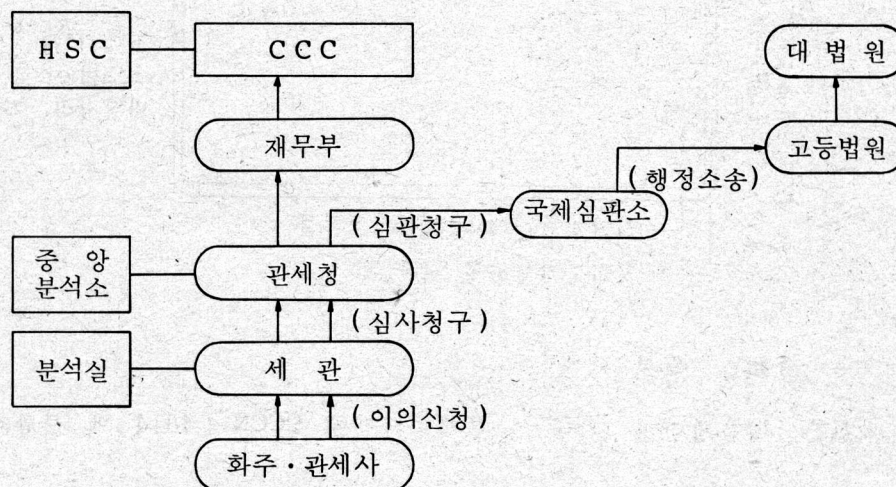
3. 行政救濟制度

一 概 要

수출입통관시에 이루어지는 HS분류에 대한 최종결정은 하나의 세관장의 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상 불복의 대상이 된다. 즉 HS 분류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마련되어 있는 행정구제절차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시에 자신의 지식으로는 충분치 못한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행정상 불복을 진행할 수도 있다.

一 行政救濟節次

행정구제 절차圖



第 3 章 演 習

1. CCCN 分類上 紛爭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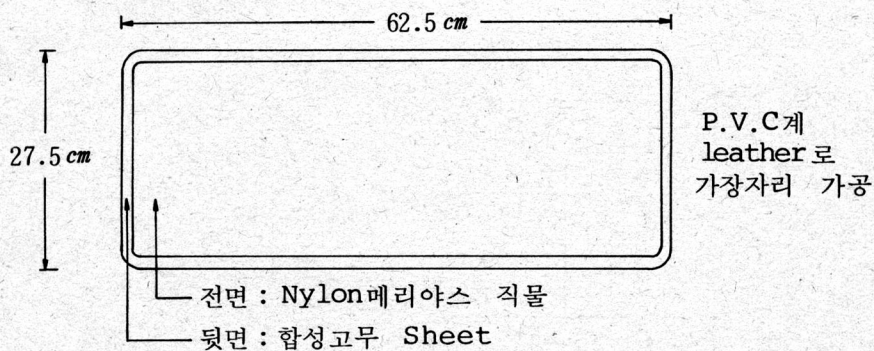
〈事例 1〉 Car-mat[1986. 관세심사청구 (109-11)]

— 註 解

GRI 3 '나'의 「主要特性 優先分類의 原則」은 실제로 當該 物品의 주요특성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입장에 부딪혔을 때 그 의미가 모호하고 適用限界도 불명확하여 어떤 決定을 위한 理論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음에 동 原則과 관련하여 品目分類에 관한 關稅審査請求 등에서 다루었던 事例를 살펴본다.

— 商品說明

本 物品은 승용자동차의 床에 깔 매트류로서 4각형으로 성형한 고무제 시트면에 나일론材質의 메리야스織物을 부착시키고 가장자리를 가공한 것이다.



— 分類上 異見

本品은 납품제질인 기타 고무제품의 號 CCCN 「4014」에 분류하여야

하나, 紡織用 纖維製의 매트인 號 「5802」에 분류하여야 하나, 또는 자동차용의 床매트이므로 자동차 부속품의 該當 號 「8706」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決定號

本品은 사용하는 면이 표면을 조성하는 나일론 섬유제 메리야스(또는 과일)로서, 그 纖維의 特性을 살려 만든 매트류이다. 고무 Sheet는 다만 자동차의 상에 닿는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主要 特性을 결정하는 因子는 사용면에 있는 표면을 형성하는 纖維材質로 본다. 同旨로 關稅率表解説書上 5802에 「紡織材料로 사용면을 구성하는 매트로서 충분한 두께(thick), 경직성(stiff), 강도(strong)의 物品…」이라는 解説이 있다.

58類 註2의 規定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5802」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自動車用 部屬品の 분류에 관해서는 關稅率表解説書上 GRI 3(가)의 해설부분에서 自動車用 카페트(매트류)가 자동차용 부속品이 아니고 紡織用 카페트에 분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同解説書 8706 I 2(b)의 해설에 따르면 同號 「8706」에는 纖維製 매트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本品은 「5802」에 분류한다.

<事例 2> 裁縫세트(1983, 東京稅關 分類事例[83-12-3]).

— 商品說明

本 物品은 케이스(금속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직물제: \$ 173), 가위(1개: \$ 2.23), 裁縫絲(18본 -1~1.5m: \$ 0.28), 단추(4개: \$ 0.28), 안전핀(2개: \$ 0.26), 바늘(3본: \$ 0.26), 종이자

(65 cm : \$ 0.16) 가 들어 있는 여행휴대용의 재봉세트이다. 構成品の 總價格은 C&F US \$ 5.20 이다.

－ 問題點

本品은 주요특성에 의하여 一括 (一體) 分類가 가능한가, 이 경우 어느 物品이 主要特性을 부여하고 있는가.

－ 分類上 異見

本品은 여행할 때 떨어진 단추를 다는 등 간단한 재봉을 위한 용구를 휴대용기에 넣은 것으로서 통칙 3 (나) 의 「세트로 된 物品」에 적용시켜 本品의 중요 特性을 부여하는 物品이 속하는 號에 一括 分類하여야 할 것이다.

本品의 경우 特性判斷의 基準·因子를 수량·중량·가격·부피·역할 등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여야 하는가 고려되어야 한다. 數量·重量은 모두가 적은 량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하고, 本品을 구성하는 物品의 각 역할도 모두가 개개 사용목적에 불가결의 物品들이라 할 것이므로 特定の 物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주요 특성의 결정은 價格에 의하여 定量的 判斷을 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따라서 본품의 경우 최고가격의 가위(\$ 2.23)가 해당하는 CCCN 8212에 분류한다.

< 事例 3 > California Cooler, Wine Spritzer

－ 註解

캘리포니아 콜러는 CCCN의 通例上 어느 항에 적용하여 분류하는가가 NC에서 검토되었다.

－ 商品説明

‘쿨러’란 포도, 플럼 등 各種 과일 原液에 탄산수를 섞은 농도 4%의 저알콜의 음료성 製品으로 ‘켈리포니아 쿨러’란 同地域 포도원액으로 만들어진 음료제품을 일컫는다.

－ 通例 1에 의한 分類

이 物品과 ‘와인 스프릿저’가 CCCN상 어느 號에 분류되느냐가 문제되었다. 즉, CCCN상 「22類」의 어떤 號에도, 예를 들면 맥주, 와인, 발효음료 또는 증류수 등의 어느 號에도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通則 1에 의거 분류할 수 없다.

또한 「20類」(과일주스)에도 본품이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號에 분류될까.

－ 通則 2(가) 및 (나)에 의한 分類

뿐만 아니라 不完全 分解物品도 아니므로 이들 物品에 관한 分類 原則을 규정한 通則 2(가)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품과 같은 混合物의 분류는 通則 3의 분류원칙을 적용한다라는 通則 2(나) 후단 규정에 의한다.

－ GRI 3(가)·(나) 및 (다)에 의한 分類

이 製品은 하나의 混合物로서 각각은 단지 이 混合物의 1개 부분을 가리킬 뿐이며, 이들 각각은 같은 정도로 製品을 대표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通則 3(가)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製品의 주요 특성을 결정하기가 불가능하여 通則 3(나)의 적용도 할 수 없다. 이어 通則 3(다)의 적용에 있어서도 CCCN 「22類」(음료·알코올...)의 어떤 號도 고려할 만한 號가 없기 때문에 최종호 우선분류의 원

최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GRI 4에 의한 分類

이리하여 결국에 通則 4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귀착한다. NC는 이 物品에 대하여 通則 4에 근거하여 CCCN 「2207」 (HS 2206)의 기타 발효음료들이 속하는 物品 (예를 들면 사과酒와 벌꿀술)에 가장 유사한 製品으로 분류하였다.

2. HS 分類上 紛爭例

〈事例 1〉 위스키 源液 木材桶 (OAK BARREL)

[1988, 관세심사청구 (76-7)]

— 爭點

甲論 : 목재통은 內容物 (원액) 과 同一小號 (HS 2208.30)에 분류한다.

乙論 : 목재통은 HS 4416.00, 內容物 HS 2208.30에 各 別個로 분류한다.

관 세 청

수 입 : 1246-1588

1975. 4.25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주류저장용 목준의 세번적용

1. 브랜드 저장용 목준 (LIMOASIN OAK CASKS: 350ℓ)에 브랜드 원액 (BRANDY CONCENTRATED)을 담아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2. 목준이 통상적인 판매용기가 아니고 주류저장용 용기이며,
3. 상거래상 내용물과 일체로 거래된 것이 아니고 각기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었고,
4. 상거래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용기가 아닌 설비자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5. 브랜드 원액과 목준을 각각 분리하여 세번을 적용하기 바람.

— 商品說明

첫째, 수입 위스키원액을 담아 수입신고하는 목제통의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는 크기가 높이 88 cm, 직경 약 66 cm, 두께 약 3 cm 이고 재질이 OAK인 목제술통으로서 내용물인 위스키원액의 숙성·저장기간인 약 5-12년의 표기와 주종, 용량, 제조자 등의 표시가 된 완전히 중고상태의 목제술통이며,

— 목제통의 제조과정

- 수령이 140-200년된 Dia 40 cm 이상인 원목을 1년간 산에서 저장한다.
- 원목을 목제술통에 적합한 부분을 선별 제재하여 약 10일간 천연건조시켜 습도를 10~20%로 내리게 한다.
- 굴곡작업후 목제술통형으로 조여 묶고 내부의 굽음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내면을 가볍게 태우는 조작을 하여 완성시킨다.
- 완제품은 원목 기준하여 10%만이 제품이 되므로 목준값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크다.

※ 資料 : 日本 「양조협회지」 제 60 권, 1965.

둘째, 위스키원액의 숙성·저장용 목재술통인 OAK BARREL의 기능과 용도를 보면 주발효후 또는 증류후의 유액을 OAK BARREL에 넣어 약 5년 내지 12년 또는 최장기 30년간 밀폐시켜 숙성·저장시키면 OAK BARREL의 목재성분, 향과 증류원액과 상호 화학반응 Breathing을 통하여 대기중 산소와 상호결합, 치환반응을 일으켜 위스키 본래의 색깔과 향미를 내고 강한 알콜농도를 순화시키게 되며 (일본 양조협회지 1965년 제 60권 제 8호 및 일본 위스키 박물관지 1979.5.15) 이렇게 숙성이 완료된 후 위스키원액의 본래의 맛과 향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재술통에 담겨진 상태로 한물품으로 거래가 되므로 목재통은 포장용기와 운송용기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다.

－ 기능과 용도

- 목재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향미나 성격이 만들어낼 수 없는 주류-위스키, 브랜디 등 대부분의 증류수와 과실주
- 주발효·종료후 또는 증류후의 유액을 목재술통에 넣어 저장하는데 이들은 단순한 저장과 달리 저장기간중에 목준의 재질의 성분이 용출하여 주류의 성분과 복잡한 반응을 일으켜 숙성이 진행된다.
- 증류액의 향미가 조잡하나 이것을 목재술통에 저장하면 비로서 숙성된 위스키가 되며, 극히 미량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당류나 바니린 등의 방향족화합물이 존재하여 그 향미에 크게 영향을 준다.
- 목재술통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고 직접 그의 향미의 형성

에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갖고있음이 확실해졌다.

※ 資料 : 前揭書 「양조협회지」

— 決定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제통인 OAK BARREL 은 내용물인 위스키원액과 함께 저장, 운송 및 판매되는 성질의 물품이고 통상적으로 내용물과 포장용기가 별개의 물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목제통인 OAK BARREL 은 용기의 기능인 내용물의 포장과 운송을 위한 기능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스키원액의 생산을 위한 주발효후 또는 증류후의 유액의 숙성과 저장을 위한 기능이 주기능이고 수입되는 목제통은 내용물인 위스키원액을 숙성·저장한후 동 위스키원액과 함께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5의 나호의 단서의 “포장용기로 재사용하기에 명백히 적합한 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수입후 국산양주의 숙성·저장용도로의 활용은 중고자재의 재활용에 불과하고 본건 품목분류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本品 목제술통은 甲論과 같이 내용物인 위스키원액 해당의 HS 2208.30 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5 호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제도기케이스, 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

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例 2> 地球儀 (Globe) [관세심사청구 (74-4)]

一 概 說

[地球儀]

지구 표면의 상황을 나타낸 구체. 통상적으로 지축(地軸)을 연직 방향에서 23°27' 경사시키고 지축 둘레를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게 한 자오환(子午環)이 있다. 자오환 이외에 적도환(赤道環)이 달린 것도 있다. 지구의 표면은 다원추도법(多圓錐圖法)에 의하여 만들어진 배모양의 지도들이 구위에 붙여 모아져 있다. 구의 표면에는 경위도(經緯度)·수륙분포·지형, 그 밖의 지구표면의 상태를 나타낸다.

[구조와 제작법]

지구의 주체는 금속·석고·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속이 빈 구(球)이며, 이것이 북극과 남극의 부분에서 자오환이 서로 부착되고 지축 둘레를 자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안전원(安全圓)

인 자오환이 지주(支柱)상의 지평환(地平環)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형태의 것과 반원인 자오환이 직접 지주에 고정된 것이 있다. 자오환에는 적도에서부터 극까지에 90°로 눈금이 되어 있다. 지구의 표면에는 보통 일정한 경도대마다에 작성된 배 모양의 지도편(地圖片)을 붙여 모아서 작성한다.

[지구의 역사]

지구의는 지구구체설(地球球體說)이 제창되었던 고대 그리스와 그 과학을 계승한 중세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구의는 1492년에 M.베하임이 만든 지름 51cm의 금속제 지구의이며, 독일의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지구의는 기본적으로는 마르코폴로의 견문에서 상상된 카타이(中國)와 지팡그(日本)를 아시아의 동단(東端)에 표시하고 B. 디아스의 아프리카 항해결과를 넣어 아프리카를 희망봉에서 끝나는 대륙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와 같이 유라시아의 동서 길이가 과대하게 되어 있다. 이 때부터 신대륙발견시대에 들어가 지구의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 내용도 점차 정확하게 되었다.〈鄭鳳日〉

※ 資料 : 동아원색 世界大百科사전, p.598.

- 商品說明

청구물품은 두께 약 2mm, 직경 약 30cm의 판지제의 반구형 (2개 조립하면 지구의)에다가 지도가 인쇄된 종이를 부쳐서 지표의 높이를 양각으로 부조된 기복의 지구의로서 철강제의 받침대, 경도표시를 하는 철강제 지구의테 및 반구형의 지구를 운송의 편의상 미조립의 분해된 상태대로 수입된 지구의임.

－ 爭點 (CCCN 과 HS 의 配列位置相異)

- CCCN 4905 : 인쇄된 (부조여부불문) 지구의

(다만, 부조된 (인쇄되지 아니한 것) 지구의는 CCCN 9021
에 분류)

- HS 4905 : 인쇄된 (부조되지 아니한 것) 지구의

(다만, 부조된 (인쇄여부불문) 지구의는 HS 9023 에 분류)

－ 決定號

CCCN 해설서 제 4905 호는 인쇄된 지구의는 부조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CCCN 4905-0100 (무세) 호로 분류토록하고 인쇄되지 아니하
고 부조된 지구의는 CCCN 9021-0200 (20 %) 호로 분류되게 되어있어
청구물품은 부조된 지구의이긴 하나, 인쇄된 것이므로 CCCN (87 년도
시행)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4905-0100 (무세) 로 분류되었으나, H.S
해설서 제 4905 호는 부조되지 아니하고 인쇄된 지구의는 H.S 4905-
10-0000 (무세) 호에 분류되고 부조된 지구의는 인쇄된 것인지의 여
부에 관계없이 H.S 9023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
9023 에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관세율표

CCCN「 4905 」		H S 「 4095 」	
번 호	품 명	번 호	품 명
4905	지도·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것·벽걸이용의것과 지형도를 포함한다)와 지구의 및 천구의 (인쇄한 것에 포함한다)	4905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것·벽걸이용의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5.00.00	1. 지구의
		10	
		4905.9	2. 기 타
01:00	* 지구의와 천구의	4905.91	가. 책자로 된 것
		4905.10.00	지도와 해도
		91	
02:00	* 지도와 해도	4905.90.00	기 타
		91	
03:00	*기 타	4905.00.00	나. 기 타
		99	

－ 관세율표 해설서

• CCCN 해설서 (일부발취)

- ① CCCN 4905 - 지도, 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과 지형도를 포함한다)와 지구의 및 천

구의 (인쇄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 (a) 지도 또는 도면을 단순히 부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서적 (제 49.01 호)
 - (b) 수제의 지도, 도면 등과 이들의 사진 복사물 (제 49.06 호)
 - (c) 완성된 지도, 차트 또는 도면으로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항공측량도 또는 지형사진 (지형학상 정확성 여부를 불문한다) (제 49.11 호)
 - (d)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산업, 관광 또는 기타의 활동, 철도망 등을 적당한 도해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략적인 지도 (제 49.11 호).
 - (e) 장식을 목적으로 지도를 인쇄한 스카프, 손수건 등의 직물제품 (제 11 부)
- (f) 인쇄되지 아니하고 부조된 지도, 설계용, 지구의 및 천구의 (제 90.21 호).

② CCCN 9201 - 교육용·전시용 기타의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 (2)
- ⋮
- (9) 기복지도 (지방·도시·산악 등)·기복도시 계획도·기복지구의 및 천구의 (인쇄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에 한한다)

• HS 해설서 (일부발취)

- ① HS 4905 -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 (a) 지도 또는 도면을 단순히 부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서적 (제 49.01 호)
- (b) 수제의 지도, 도면 등과 이들의 카본복사 및 이들의 사진복사물 (제 49.06 호)
- (c) 완성된 지도, 차트 또는 도면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항공측량도 또는 지형사진 (지형학상 정확성 여부를 불문한다) (제 49.11 호)
- (d)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산업, 관광 또는 기타의 활동, 철도망 등을 적당한 도해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략적인 지도 (제 49.11 호).

- (e) 장식을 목적으로 인쇄된 지도가 있는 스카프, 손수건 등의 직물제품 (제 11 부).

- ② HS 9203 - 실물설명용 (예 : 교육용 또는 전시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 (2)
- ⋮

- (10) 기복지도 (지방·도시·산악 등)·기복도시계획도·기복지구의 및 천구의 (인쇄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機械部分品の 分類例

가. 機械部品の 定義

一般的으로 部品이라 하면 完成機械를 構成하는 갖가지 要素를 지칭하고 있으나 完成機械를 構成하는 各 要素는 機能에 따라 또는 加工方法이나 使用形態, 組立段階 등에 따라 그 類型이 多様하기 때문에 部品の 定義를 一律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部品이란 그 自體가 서서비스를 創出할 수 있는 獨立的인 機能을 갖지 못하고 다른 部品 또는 構成品과의 結合을 통하여야만이 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다. 完製品의 各 機種은 무수한 部品の 結合에 의해 構成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完製品을 分解하면 各기 部品과 細部 部分品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部品은 完製品을 生産하는 過程에서 素材부터 最終 加工段階인 組立段階 이전까지의 모든 中間生産物이다.

機械部品은 英語로, Parts, Components, Units 등으로 表記되어 있다. ① Parts는 機械要素를 최대한으로 分解할 경우의 最小單位이며 이와는 달리, ② Components는 概念上으로는 Parts와 類似하나 機械要素의 最小單位라고만은 볼 수 없고 2個以上の Parts로도 構成될 수 있다. ③ Units는 몇개의 部品이 結合되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機能을 갖는 것이 一般的이다. 통상적으로 ④ 組立部品 (assembly)

이라는 말도 使用되고 있는데 이는 部品の 概念을 떠나 部品들의 結合體로서 獨自的인 機能을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엔진의 피스톤 部分은 피스톤링과 피스톤, 피스톤핀, 커넥팅로드 등으로 구성되어 실린더내의 行程運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機能을 遂行한다. 따라서 피스톤링, 피스톤핀, 커넥팅로드 등은 Parts라 할 수 있고 엔진의 Component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들 Parts들은 여러개가 結合하여 피스톤을 이루고 피스톤 이외의 크랭크샤프트, 실린더헤드, 링기어,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등이 모여 組立部品이라 칭하는 엔진이 構成된다. 이와 같은 部品の 多樣성과 異質性 때문에 部品の 分類를 위해서는 部品の 精確한 定義와 그에 따른 分類基準이 主要한 問題로 대두된다.

나. 部分品の 分類體系

(1) 一般商品學

一般商品學에서는 後述과 같이 部分品の 分類를 ① 構成形態, ② 業種, ③ 製造工程, ④ 機能, ⑤ 組立段階, ⑥ 投入素材, ⑦ 流通過程을 基準으로 分類하거나 機器(機械 器具)를 기능에 따라 本機와 그 部分品을 大別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① 機械要素

A. 축받이(베어링) B. 체인 C. 기어(톱니바퀴) D. 벨트·변속기 E. 潤滑장치 F. 밸브 파이프조인트(管接手)
G. 스프링 H. 나사·헬리서어트

② 動力 利用機械 및 이들 部分品

A. 內燃機關 B. 가스터어빈·過給器 C. 제트엔진 D. 로켓 엔진 E. 보일러 F. 증기원동기 G. 水力機械 H. 空氣機械 I. 油壓機器

③ 工作機械 및 이들 部分品

A. 금속 공작기계 B. 塑性加工機械 C. 熔接機 D. 工具·다이스·로울

④ 産業機械 및 이들 部分品

A. 광산·選鑛機械 B. 건설토목기계 C. 荷役·運搬機械 D. 화학공업용 장치 E. 冷凍機, 空氣調和機器 F. 재봉틀 G. 섬유기계 H. 농업용기기 I. 수산기계 J. 기타산업기계

⑤ 精密器機, 計測器機 및 이들 部分品

A. 광학기기 B. 시계 C. 계측기기 D. 시험기 E. 分析用器機 F. 측량용기기 G. 과학기기

⑥ 사무용기계·기구 및 이들 部分品

A. 데이터처리기계 B. 계산기, 회계기 C. 등사기, 복사기, 사무용 인쇄기, 마이크로 사진기 D. 시간기록기계 E. 연락기계 F. 타이프라이터 G. 금전등록기 유사기계 H. 파일링 시스템용기구 I. 우편기계 J. 기타의 사무용 기계·기구

⑦ 電機·電子器機 및 이들 部分品

⑧ 운수·운반기기 및 이들 部分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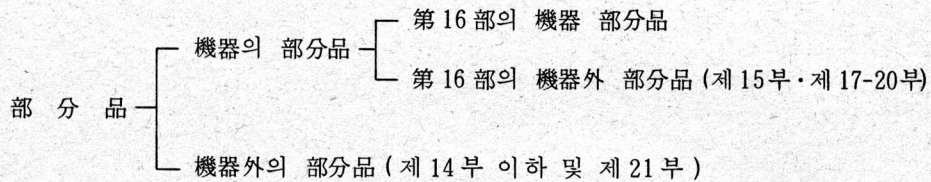
⑨ 兵器 및 이들 部分品

⑩ 宇宙 開發器機 및 이들 部分品 등

※ 資料: 유봉노, 「商品大百科辭典」 同志社, 1972. 3.25.p.523.

(2) HS·CCCN 상품학

HS (CCCN도 거의 같음) 상 부분품의 분류체계는 ① 機器 (제 15 부 ~ 제 20 부) 의 부분품 ② 同機器以外 (제 14 부 이하 및 제 21 부) 의 부분품으로 區分되고 나아가, 機器는 ① 第 16 部の 機器部分品 (협회의 기계부분품) ② 第 16 部以外 (제 15 부 · 제 17 부 ~ 21 부) 機器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부분품은 特掲部分品과 非特掲部分品으로 연구의 편의상 나누어 볼 수 있다.



(3) 機器의 部分品과 同機器外的 部分品

— HS 상 機器의 部分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S 부	品 目
第 15 部	卑金屬과 그 製品 該當機器의 部分品
第 16 部	機械類 · 電氣機器 및 이들의 部分品과 녹음기 등의 部分品
第 17 部	차량 · 항공기 · 船舶과 수송기 關聯品 등과 이들의 部分品
第 18 部	光學機器 · 사진용기기 · 측정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기기 · 시계 · 악기 및 이들의 部分品
第 19 部	무기 · 총포 및 이들의 部分品
第 20 部	雜品 (가구 · 조명기구 · 조립식건축물 등) 該當機器의 部分品
其 他	第 39 類 · 第 40 類 · 第 42 類 · 第 43 類 · 第 59 類 · 第 68-71 類 製品으로서의 部分品 (p- 60 參照)

- HS 상 同機器外의 部分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S Code	
3925.3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部分品
3926.90	기 타
<20.00>	부채·핸드스크린(機械式이 아닌 것에 한한다)과 이들의 살 및 빗자루(살 및 자루의 部分品을 包含한다)
4416	목제의 통·배럴·배트·텝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部分品
4421.90	기 타
<50.00>	부채·핸드스크린(機械式이 아닌 것에 限한다) 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部分品을 包含한다.)
6117	衣類 및 의류부속품의 部分品
6217	其他의 製品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部分品
6406	신발류부분품,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類似한 物品,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部分品
第 65 類	모자류와 그 部分品
6507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包含한다) 및 이들의 部分品(전구·음극선과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限한다)

다. HS 상 기계부품의 分類方法

일반적으로 事案의 問題해결을 위하여 ① 狀況分析→② 原則적용→

③ 特例적용→④ 條理적용 등 論理的 順序를 따르듯이 HS·CCCN상 기계 部分品の 配列·所屬의 확인도 상황분석에 해당하는 ① 物品確認단계 (單一·복수·完成品 與否)→② 5個型的 號 확인단계 (HS상 部分品の 揭註形態검토)→③ 原則的 分類단계 (分類原則적용)→④ 特例的 分類단계 (例外규정적용)→조리적용에 해당하는 ⑤ 通則적용단계 등 5 段階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기계 部分品の 分類方法은 다음 圖表와 같이 要約된다. 이와같은 총론적 체계적인 分類方法의 提示는 HS상 部分品の 構成型態, 分類原則, 分類指針을 쉽게 理解케 함으로 각자 부분品の 分類시마다 필요한 규정들을 原初的으로 검토하여야하는 행정적 비능률은 除去될 것이다.

4. 實行關稅率表와 HS의 補助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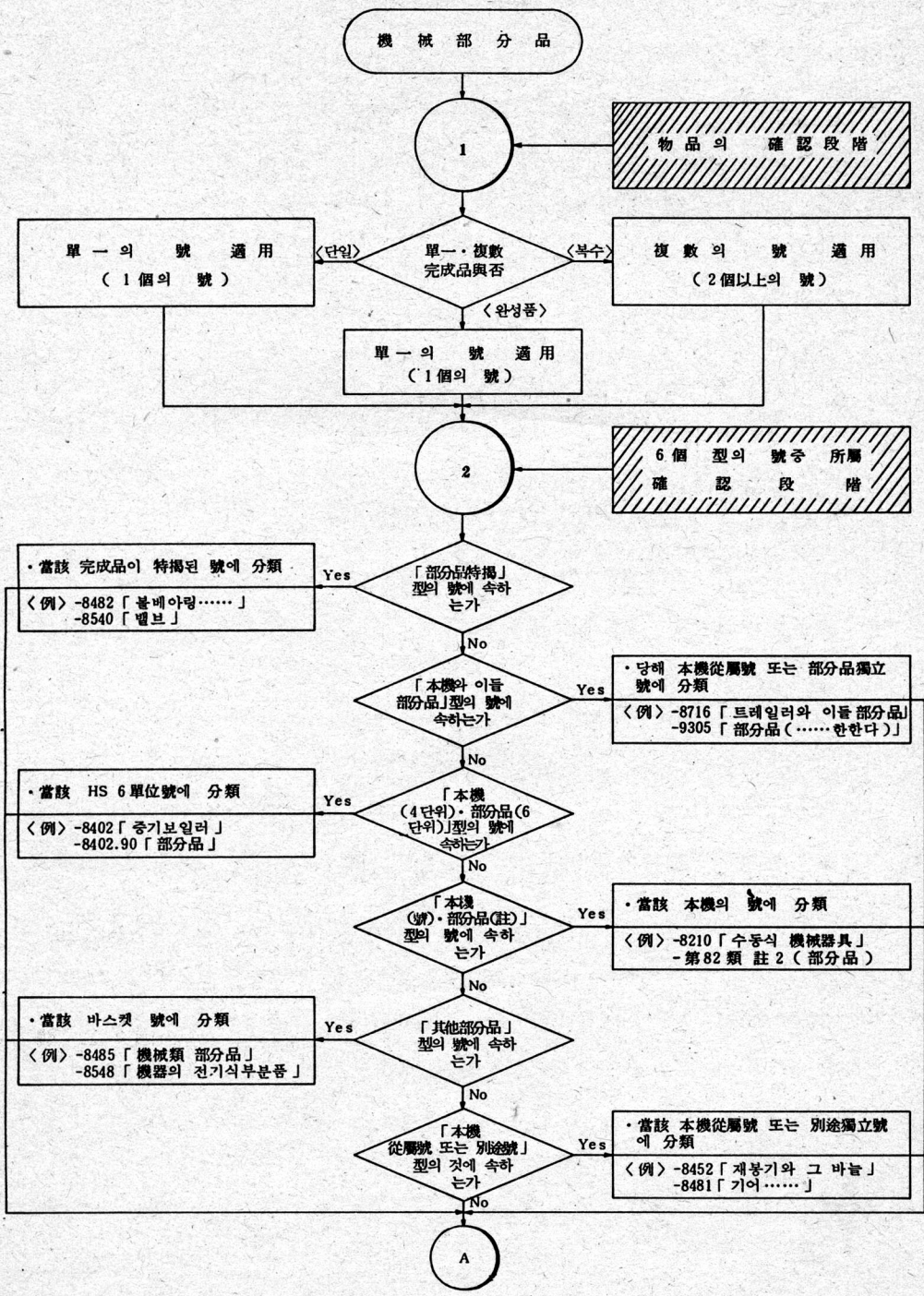
가. 統合關稅·統計品目表 (CT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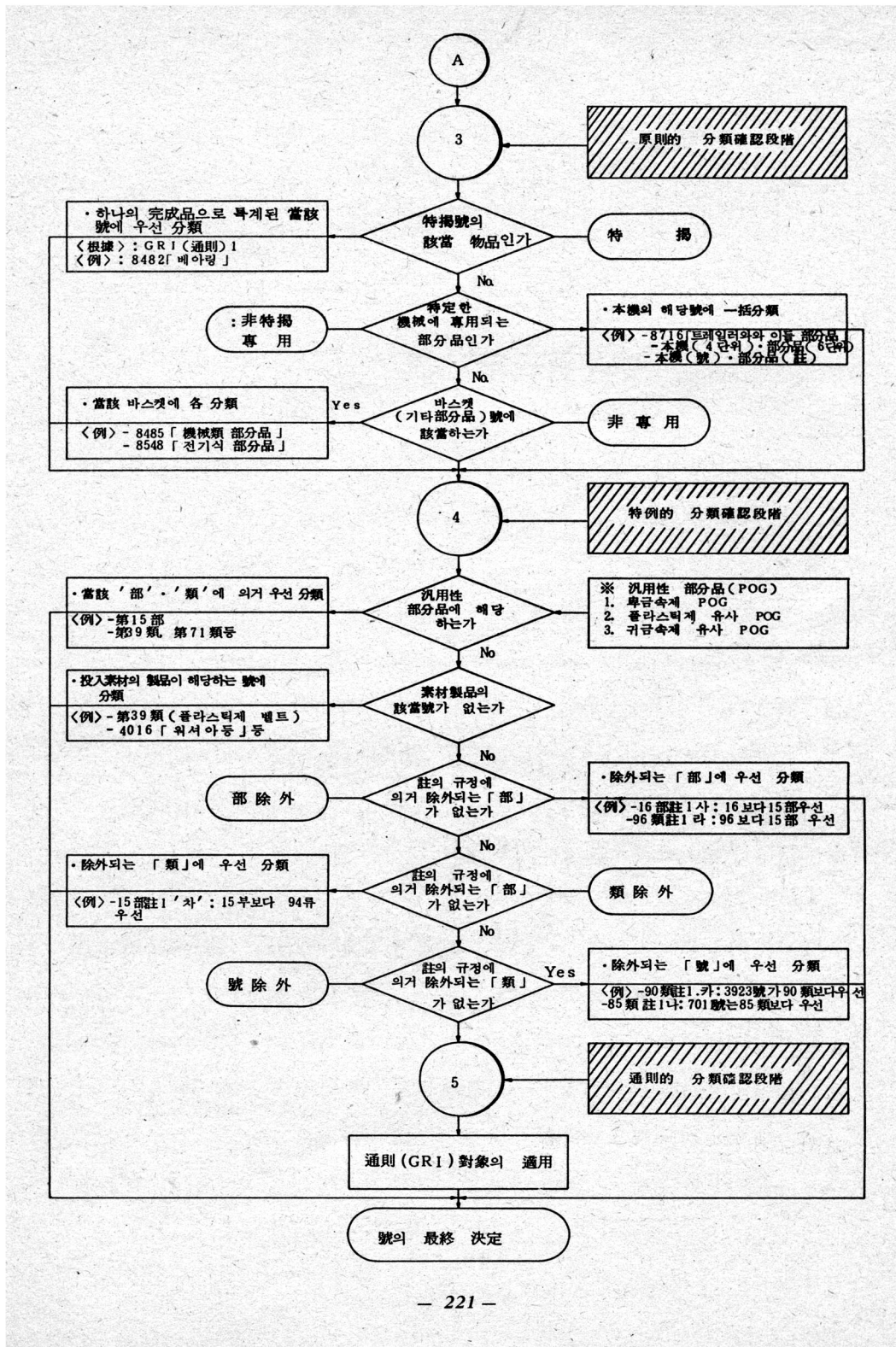
－ 概 念

CTSN(Comh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이라 함은 輸入物品의 稅關通關을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하는 關稅品目分類表 (Custom Tariff Nomenclature)와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輸出入統計資料의 蒐集을 目的으로 制定한 統計品目分類表 (Statistical Nomenclature)를 統合 (Integrating)한 品目分類表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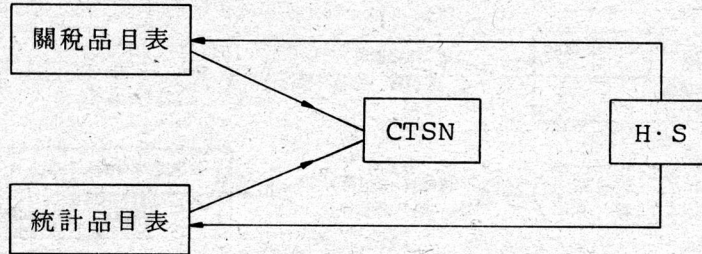
CTSN이 HS協約 § 3-a의 (i) 내지 (iii)에 일치하면 締約國은 그 關稅品目分類表上 HS小號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HS 상 機械部分品の 分類接近圖





CTSN 構造



－ 우리나라의 CTSN

우리 나라의 HS體系의 關稅·統計統合品目表 (CTSNK)는 韓國統一商品分類 (HSK, 財務部 告示 87-12)와 關稅法上 別表關稅率表 [TSK, 法律 第 3981 號 (1987.12.4)]를 組編한 것이다.

HS協約上 締約國은 關稅率表의 制定時 원칙적으로 6단위 기준코드 (5,019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4단위 (補助號 追加) 型의 關稅率表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同協約 第 3 條 第 1 項 規定에서 HS 6단위 이상의 CTSN型 品目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各 國事情에 따라 4단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別表關稅率表와 實行關稅率表

우리는 輸入通關實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작성된 實行關稅率表를 사용하고 있다. 實行關稅率表가 없더라도 各 國의 關稅法上 別表關稅率表 暫定稅率表·讓許稅率表 (The Schedule of Tariff Concession) 및 統計品目表에서 해당 물품의 配列位置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稅番 (號, 小號, 細分號)과 統計番號는 알 수 있으나, 그 作業은 번잡하다. 또한 이와 같은 各 國 品目表의 多元化는 그 適用·確認過程에

착오발생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實行關稅率表는 실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HS 코드 番號別로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必要事項을 연결·수록함으로써 實務遂行의 正確과 便宜를 도모하고 있는 品目表라 할 수 있다.

－ 稅番과 統番

關稅率과 點線으로 연결되어 있는 품목은 稅目(關稅項目: Triff Item)으로 본다. 稅目에 부여된 코드番號를 稅番이라 한다. 統番은 關稅率表上 5單位 이하의 번호로서 稅率과 연결되지 아니한 번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關稅法 別表上 關稅率表는 원칙적으로 關稅率과 New CCCN 體系의 코드番號(4단위) 및 品目を 점선없이 연결시킨 形態를 가졌으며, 예외적으로 4次元의 補助號(例: 1次元: 1, 2..., 2次元: 가, 나, ..., 3次元: (1), (2)..., 4次元: (가), (나)...) 및 細分 品目과 關稅率을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同 別表關稅率表上 稅番은 HS의 4單位, 同 4單位와 1次元, 2次元, 3次元 및 4次元의 補助號 등으로 조합된 5種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實行關稅率表는 HS 體系의 코드 4...10單位의 品目과 關稅率을 연결시킨 형태이므로 同稅率表上 稅番은 4單位...10單位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兩 關 稅 率 表 間 的 比 較

別 表 關 稅 率 表		實 行 關 稅 率 表			稅 率 表		單 位	
品 目 番 號	品 名	稅 率	品 目 番 號	品 名	Description	稅 率	稅 率	單 位
						基 本 稅 率	協 定 稅 率	
0306	감 각 류 (.....)	20	0101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20		
0307	연체동물 (.....) 과 수생무척추동물 (.....)		0101.1	말	horses			
	1. 굴	20	0101.11	종 마	pure-bred breeding animals			
			0101.19	기 타	other			
					
			0307.10	1. 굴	1. Oysters	20		kg
			0307.10	산것 · 신선 또는 냉장 한 것	Live, fresh or chilled			
			0307.10	굴치패	oyster spat			
					
	2. 가리비과의 조개 (.....)	20	0307.20	2. 가리비과의 조개 (...)	2. Scallops, (.....)	20		kg
	(.....)		0307.21	산것 · 신선 또는 냉장 한 것	Live, Fresh or Chilled			
			0307.30	3. 홍합 (미틸루스종 · 페르나종)	3.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20		kg

T. S. K

HSK

C. T. S. N. K

別表關稅率表		實 行 關 稅 率 表						
品目番號	品名	稅率	品目番號	品名	Description	稅 率		單位
						기본	조정	
	7. 기 타		0307.31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Live, Fresh or Chilled			
	가.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 연체동물	20	0307.9	7. 기 타	7. Other			
			0307.91	가.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 연체동물	가. Live, Fresh or Chilled (1) Molluscs	20		
			0307.91	백 합	Hard Clams			kg
			0307.91	치 패	Hard Clam Spat			kg
			0307.91	기 타	other			kg
			0307.91	전 북	Abalone			kg
	(2) 기 타	30	0307.91	(2) 기 타	(2) other	30		
			0307.91	성 계	Sea-urchins			kg
	나. 기 타		0307.99	나. 기 타	나. other			
	(1) 냉동한 것		0307.99	(1) 냉동한 것	(1) Frozen			
	(가) 연체동물	20	0307.99	(가) 연체동물	(가) Molluscs	20		kg
			0307.99	세조개	cockles			
	(나) 기 타	30	0307.99	(나) 기 타	(나) other	30		
			0307.99	해 삼	Sea-cucumbers			kg

T. S. K

HSK

C. T. S. N. K

나. HS의 補助資料

－ 概 要

HS (CCCN도 마찬가지로)는 모든 貿易商品 (또는 물품)을 어떤 하나의 號 (小號)에 통일적으로 분류하도록 작성되었다 (一意性原則의 確保). 이에 따라 統一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이들 품목표에는 同表의 전체를 커버하는 分類原則을 규정한 「GRI (통칙)」과 부분 또는 전체에 적용되는 분류원칙을 규정한 部·類·小號의 「註」를 설정하여 各號 (小號)의 내용을 가능한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各號의 分類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品目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補充資料를 出刊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떤 論者는 이들 補助資料 가운데 解說書와 品目分類意見要約書を HS 또는 CCCN의 구성요소로 표현하고 있다.

- － HS (또는 CCCN) 解說書 (Explanatory Notes)
- － 品目分類意見要約書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
- － 알파벳 인덱스 (Alphabetical Index)
- － HS·CCCN·SITC 相關表
- － 商品品名目錄 (Commodity Descriptor List)
- － 細目인덱스 (Detailed Index)
- － 各國 品目分類例規 (7차 잠정 HS위원회, 美國제안)
- － HS 解說書

解說書란 品目表 (HS 또는 CCCN) 協約의 일부는 아니지만 CCC (關

稅協力理事會)가 승인한 HS (또는 CCCN)의 品目分類에 관하여 公
 的인 해설을 한 說明서로서 品目分類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分
 類方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HS(CCCN도 마찬가지)의 체계적인 순
 서에 따라 各號(또는 小號)의 對象을 說明하고 關聯品目的 技術的
 인 說明·外樣·特性·製造方法과 用法, 실제적인 區別방법들을 說示하
 고 있다.

<例> HS 解説上 說示 例

區分 內容別	HS 原 典		HS解説書(說明例)	備 考
	해당번호	品 名		
1.號(小號) 의 정의· 범위 說示	2902	환식 탄화수소	-순도 96% 이상의 것	○ 벤젠과 벤졸의 구분은 純度 기 준에 따른다는 說示를 하고 있 음. ○ 미국은 TSUSA 에서 양자 구분 않고 있음.
	2902.20 2707	-벤젠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 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707.10	-벤졸(또는 벤젠으 로 칭함)	-순도 96%미만의 것	
2.號(小號) 의 포함규 정	8528	텔레비전 수상기(영 상모니터와 영상프로 젝트를 포함하며,라디 오 방송수신기음성 또 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동일하우 징내에 결합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포 함> 1) 각종의 가정용텔 레비전수상기 2) 항공기 유도머사 일로켓 등에 설치 하는 텔레비전기기 3) 공업용의 텔레비 전기기 4) 비디오 프로젝트 5) 팩시밀리 무선전 송기기 등	○ TV 분류기준 제시 ○ 8528 포함되는 물품(상품)과 제외품을 열거

區分 內容別	HS 原 典		HS 解說書(說明例)	備 考
	해당번호	品 名		
3.號(小號) 의 제외규 정	10	-칼라텔레비전 수 상기	<제 외 > 1)비디오기록기 및 비디오 재생기 (제 8521 호) 2)제 8528 호의 텔 레비전 수상기등 을 갖춘 특수용 도차량(일반적 으로 8705 호)	
	20	-흑백텔레비전 수 상기 또는 단색 텔레비전 수상기		

- BTN 해설서, 1955, 全 3 券 英佛文 출판
- HS 해설서, 1985. 5. 6 全 4 券 英佛文 출판